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119-01
연구보고	2011-02

# 「자녀돌봄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

2010



연구보고 2011-02

# 「자녀돌봄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2010. 11

연구수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연구책임자 : 차 선 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자 : 서 문 희 (육아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정 민 자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보조연구원 : 허 창 영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임연구원)

## 여성가족부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현대 사회는 의료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한 기대수명의 연장, 전통적 가치관에 의한 양성의 성별분리 역할에 대한 성평등적인 방향으로의 전환, 이혼율의 증가와 그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한정되었던 가사와 돌봄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던지게 되었다. 아동의 돌봄은 가정 내에서 여성이 수행하여야 하는 고유의 역할로 인정되어 왔으나, 인간의 일상적인 노동력 재생산의 장으로서 가정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약 50%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그 역할이 증가됨에 따라 가정 내 아동 돌봄이 여성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은 민간 중심의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료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팽창되어 왔으며 보육시설은 수요 대비 공급이 126.4%에 달하고 있으나 영·유아 부모들은 마땅히 아이 맡길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이러한 현상은 특히 단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만 3세 이하 영아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의 참여는 단지 영유아의 보육 지원 이외에도 아동의 연령대 별로 다양한 양육의 문제를 유발한다. 낮 시간 동안 취학 아동을 돌보는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 부모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주로 함께 지내는 존재는 형제자매, 친조부모, 외조부모, 내지 기관으로 양육주체의 순서가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경우 부모를 제외한 통계 결과를 보면 낮 시간동안 아이들끼리 지내는 경우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같이 지내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도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통계). 그러나 취학아동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스스로 보호능력이나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거나 성인 없이 아이들끼리 지내는 경우에 대한 안

1)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전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여성에게 있어서 여성의 경험을 일회적 개인의 체험에 국한하지 않고 경력으로 전환하여 취업여성에게는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에게는 전문적이고 체험에 의하여 습득한 양육 기술을 일자리로 만들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가정 내 양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해외이주 가족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가족과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가 요구되기도 한다.

## 2. 연구의 목적

양육환경의 변화는 향후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이 언급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영아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초등학교에 재학생까지도 포함시키되,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영아기에서부터 학령기 시기까지 가정 내에서 아동이 방임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언급한 아동양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육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정책 수행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영유아 단계부터 초등학교 단계까지의 개별양육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방임을 막고 아동의 인권과 복지에 부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는지 검토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정 내 개별 양육지원의 유형으로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 민간 비영리 단체인 YMCA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아가야’ 사업 및 민간 영리 단체에서 중개되고 있는 베이비시터 사업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 양육 제도는 이를 지원할 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문제로부터 명확한 책임의 정도 및 책임의 주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개별 양육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법적 지위도 불안정하여 이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의 범

위에서 서비스에 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이 없었으며 이들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가 가능한 것이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삼면관계, 즉 서비스 제공과 대상의 주체인 아이돌보미와 아동의 관계, 서비스 제공 기관과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관계,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 부모의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인 문제를 규정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와 이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그리고 그 수혜자인 아동 삼자 모두에게 분쟁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정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의 법률관계를 법제화하는 입법(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 II. 연구 방법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양육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므로, 개별적인 양육서비스 제공 방식인 아이돌보미 사업, YMCA ‘아가야’ 사업 및 민간 베이비시터 각각의 현황에 대하여 현재 연구되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는 아이돌보미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족정책의 틀 속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연구는 가족학 전문 연구가의 연구가 요구되며, 육아정책과의 관계는 육아정책연구자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학 전공자, 육아정책 연구 전문가 및 법학자 3인이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수행하여 최종 법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 가정 내 개별적인 양육에 대해 우리나라는 관련 근거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는 것은 입법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 내 개별적 양육에 관한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호주 및 일본의 입법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국내 아동 양육의 현황을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을 구분하여 모취업여부별, 가구소

특별로 낮 시간동안 돌보는 사람을 살펴보았다. 모취업여부별 차이를 보면, 미취업모의 경우 3.8%만이 기관에 맡기는 반면, 취업모와 모가 부재한 경우에는 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각각 33.0%, 36.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맞벌이하는 가구가 많아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낮고 조부모나 비혈연,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은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학교가 끝난 후에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있다는 비율이 16.4%로 높고, 주로 형제자매가 돌본다는 비율도 22.2%에 달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어머니나 아버지 직접 돌본다는 비율이 높다.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와 기관, 비공식 부문 등 모든 양육서비스 제공 주체 중 각 연령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양육제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발달 각 단계별로 부모 이외의 가장 바람직한 양육자에 대한 의견은 영영아기 및 영유아기에는 조부모, 유아기에는 보육시설, 그리고 취학 전에는 유치원이 가장 바람직한 양육기관이며, 초등학생은 학원으로, 아동 발달단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실제 기관 이용을 보면 취학 전에도 53.8%만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39.5%는 보육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3세도 유치원을 23.6% 정도가 이용하는데 4.4%만이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즉, 부모들은 접근성이나 비용부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생각과는 다소 다르게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개인양육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19.7%에 해당한다. 영아의 경우 27.7%, 유아는 23.6%, 초등학교 저학년은 18.0%, 초등학교 고학년은 12.2%로, 영유아는 25.8%, 초등학생은 14.8%가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영아는 보육시설, 비동거 조부모, 비혈연의 이용률이 가구소득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 99만 원 이하 가구는 동거조부모의 이용비율이 각각 40.3%, 11.1%로 높아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거조부모는 소득수준이 500만원이 넘으면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비동거 조부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 비율이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서 소득수준 400만 원 이상이 25~29%로 150만원 미만 5.6% 및 3.8%와 비교된다. 유아는 소득수준 500

만원이 넘을 경우 이용 비혈연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비공식 보육으로는 동거조부모에 의한 비율은 가구소득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으며, 비동거조부모는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된 비율을 보인다.

모 취업여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에 따르면 혈연 및 비혈연에 의한 개별적 서비스 이용도 취업모 자녀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취업모 아동은 동거 및 비동거 조부모가 각각 17.0%, 25.7%인데 비하여 미취업모는 각각 4.0%, 5.9%에 머문다. 초등학생 모의 취업상태별로 개인서비스는 취업모 및 모부재 아동의 이용비율이 미취업모의 이용 비율보다 높다.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서비스 이용 이유를 조사한 것인데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아이가 어려 기관 적응에 힘들기 때문에 우선 이유로 지적하고, 그 외 취업모는 비용부담 비율이 미취업모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개인 양육 서비스 이용 중에서 비혈연인에 의한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자격은 사설 업체 시터 이외에 7.6% 정도가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이고 5.4%가 아이돌보미 자격자이다. 비혈연인이 아동을 돌봐주는 장소는 아이 집 70.0%, 돌보는 사람의 집 30.0%이다. 아동의 연령구분별로는 돌보는 사람의 집인 경우는 영아 29.3%, 유아 37.9%이고, 취학아동은 저학년과 고학년이 각각 18.2%, 22.2%로 유아가 가장 높은 비율이다. 비혈연인에게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82.6%로, 대부분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아동은 정기적으로 지불하거나 지불하지 않기도 하지만, 미취학아동 중 영아는 대부분인 97.6%가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유아는 79.3%가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그 외 부정기적으로 지불하거나 현물을 지급하며 10.3%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비혈연인에 의한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만족도는 성실성 88.9%, 이용시간 87.0%, 양육환경 74.2%로 매우 높고, 비용 만족도는 62.0%이며 양육방식 만족도는 58.1%,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42.9%로 만족도가 떨어진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아동단위로 보육 및 유아교육 등 각종 서비스 이용비율을 중심으로 이용실태와 자녀의 주 양육자 및 관련 의견 조사 자료를 제시한 결과에 의하면 보육·교육 서비스로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이상 학원, 일반학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기



관, 문화센터 등의 사설기관 등 9개 기관과 동거 및 비동거 조부모, 동거 및 비동거 친인척 등 4가지 유형의 혈연과 탁아모, 베이비시터와 같은 육아전문파견 인력과 파출부와 같은 기타 비혈연 인력 등 아동이 이용가능한 모든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을 제시하였다.

미취학아동이 이용하는 기관과 개인서비스 중복이용 여부를 나타내는데, 미취학 아동의 49.9%는 기관만 다니고 16.3%는 기관과 개인을 모두 이용하며, 9.5%는 개인서비스만 이용하며 24.3%는 아무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다. 초등학생은 75.9%는 기관만 이용하고, 13.6%는 기관과 개인을 모두 이용하고, 1.3%는 개인서비스만 이용하며 9.3%는 아무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가정 내 양육지원에 대한 외국의 법제 및 사례

#### 1. 프랑스

프랑스의 보육은 연령에 따라 3세 이상 교육체제와 3세 미만 복지체제로 분리되어 이원화되어 보육시설(Crèches)은 3개월부터 만 3세까지, 모성학교(Ecole Maternelle)는 2년 3개월부터 6세 이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1994년 가족법 개정 이후 보육정책은 보육의 개별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전되었다. 3개월 이상 2세 이하 아동은 약 36% 정도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들 영아의 8%는 보육시설(Crèches)을 이용하고 4% 정도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돌보며, 6%는 기타 인력, 나머지 64%는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 영아는 다수는 부모가 돌보지만 그 이외 대리양육이 필요한 아동 중 약 1/2은 가정보육이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가정보육을 제도화하고 있다. 가족·사회부조법전(le code de la famille et de l'aide sociale) 제123-1조에서는 보수를 목적으로(moyennant rémunération) 특정 사인(des particuliers) 또는 사법상의 법인(d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으로부터 위탁된 아동(des mineurs)을 자신의 주거에서 통상적으로 맡아 돌보는 사람인 가정보육모(assistantes maternelles)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노동법전 제7권 제 7편 공동주택의 수위·고용원, 가사사용인, 가정보육모(Concierges

et employés d'immeubles à usage d'habitation, employés de maison, assistantes maternelles) 에서 가정 내 보육 제공자를 근로자로 보호하고 있다. 특정 私人에 의해 고용되어 가사(travaux domestiques)에 종사하는 자는 가사사용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을 두고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데크레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개별보육에 대한 지원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자녀출산 이후 3년간 부모 중 한 사람이 취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경우 그 조건에 따라서 양육수당(APE)을 차등지급하고, 등록된 자격인증 보육사가 운영하거나 혹은 등록보육모가 고용되어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제도(AFEAMA)가 있으며, 아동의 가정에서 보육사를 직접 고용하여 개별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일정액의 현금지원과 세제혜택(tax credit)을 제공하는 가정 내 보육수당(AGED)이 있다.

## 2. 호주

호주 보육정책은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 민간 중심의 공급, 파견 보육서비스의 제도화, 부모보조금 지원 등의 특성을 갖는다. 보육서비스는 인가보육과 등록보육이 있다. 인가보육은 종일제보육, 가정보육, 방과 후 보육, 가정 내 방문보육 등에서 제공되고, 등록보육은 친인척, 이웃모 등에 의한 개별적 보육이다. 종일제 보육시설(Long Day Care Centers)은 0세~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시설로서 하루에 8시간 이상, 주5일, 연간 48주 운영한다. 73% 정도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공급되며, 영리목적의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보육(Family Day Care)은 가정보육모가 통상 자기 집에서 5~6명의 아동을 돌보는 것으로서 종일제를 원칙으로 하며 많게는 100명으로 구성된 가정보육센터(Scheme)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가정보육센터(Scheme)는 가정보육모의 채용, 훈련, 지원 및 활동 평가를 하고 보호자에게는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며, 보호자들이 적절한 보육모를 정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한다. 가정보육모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방 FDC조정국(coordination units)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외 방과 후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 OSHC), 일시보육센터(Occasional Care Centers), 탄력적 서비스(flexible services), 이동보육(mobile services) 등이 있다.

본 연구 주제와 유사한 서비스인 가정 내 방문보육(In-Home Care)은 0세~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제공자가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보육하는 것이다. 주로 농촌·산간지역에 살거나, 아동이 쌍둥이거나, 또는 경찰, 소방관, 간호사, 의사 등 부모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할 때에 한정하여 활용된다. 부모나 아동이 불치병을 갖고 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가정 내 보육센터(Scheme)의 관리를 받으며 방문교사는 응급처치 자격이 있어야 한다.

호주의 가정보육모는 가정보육(Family Child Care)과 가정 내 보육(In-Home Child Care)을 담당하는 보육모를 의미한다. 가정보육은 등록된 보육모의 집에서 이들 아동에게 양육을 제공하는 형태로, 주로 지역 위원회나 비영리 지역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가정보육조정기구(Family Care Coordination Unit)를 통하여 관리된다. 가정보육 제공자는 가정보육의 중앙 조정단위가 제공하는 지원, 자료, 모니터링을 받는 인가된 보육모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조정 단위를 종전에는 정부나 비영리단체로 제한하였으나 2001년부터 민간 영리 단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보육모는 대부분의 주나 테리토리아에서 개별 고용된 것으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보상은 없고 호주 서비스 조합(The Australian Services Union; ASU)에서 보상을 받는다.

### 3. 일본

보육시설은 국가에서 운영비 전액을 보조하는 인가보육소와 인가 외 보육소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미인가보육시설로는 가정보육, 베이비호텔, 사업장보육소 등이 있다. 인가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은 아동복지법에 기반을 두고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도 국가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가정보육은 보육자의 집 등에서 소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 형태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으로써 요강, 규칙, 조례 등에 기초하는 제도화된 상태의 것을 의미한다. 지역에 따라서 가정복지원, 가정보육복지원, 주간위탁모, 아기홈 등으로 불린다. 가정보육제도는 1950년부터 인가보육소의 저연령아 보육을 보완하는 제도로써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실제로 가정보육 이용 아

등을 보면 출산휴가 종료 후인 생후 6~8주간 동안이 가장 많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보육의 약 3/4이 '3세 미만'까지 받고 있으며, '3세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는 약 10%이다. 가정에서 소수의 아동을 돌보는 보육형태를 말하며, 보육하는 사람을 가정 보육모라고 부른다.

일본의 가정 내 재택보육은 패밀리 서포트 센터 보육, 베이비시터, 에스쿠(エスク) 및 노동청에서 지원하는 지역네트워크인 가정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를 통한 보육 등이 있다. 가정 내 보육은 주로 보육소나 유치원 등이 시작되기 전이나 종료 후 자녀를 돌보거나, 보육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등, 하원을 도와주거나 방과 후 아동건강육성 활동의 종료이후 아동을 돌보아 준다.

#### 4. 독일

독일은 전통적으로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개별양육을 가정에서 모가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유아 보육을 시설 보다는 개별 양육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 정서적인 공감대가 모에 의한 개별양육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조정하고 부모휴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와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의 증가는 독일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국가적 차원의 양육지원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개별양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독일은 최근 일련의 입법을 통하여 청소년국이 중심이 되어 개별양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IV. 가정 내 개별 양육서비스 제도의 현황

#### 1. 자녀양육환경의 변화와 양육지원의 다양화의 필요성

근대 핵가족의 고립화로 인하여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중되게

되었으며, 여성이 점차 고학력과 되고 양성평등 의식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여성은 점차 취업의 가치를 선호하게 되었으므로 여성의 취업에 따른 자녀양육 부담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의 양육지원 정책은 시설중심, 저소득층 지원 중심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적 지원정책만으로는 일반가정의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시설 중심의 보육정책의 경우 시설이용이 어려운 다양한 가정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시설중심 보육이 포괄하지 못하는 자녀양육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 휴직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분위기와 기업문화로 인하여 사실상 이용률은 높지 않다.

부모들의 양육의 욕구를 보면 0세아의 경우 부모들이 자녀양육 선호로서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보육시설, 가정보육, 가정양육, 소규모, 일인 보육 선택 제도 등을 다양화 하여 보육의 다양화를 구현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본다.

## 2. 가정 내 개별 양육서비스 제공 현황

### 1) 아이돌보미

현재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진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시설중심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하여 육아지원 체감도를 높이는 것과 맞춤형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로서 다양한 가정의 욕구를 반영한 자녀양육서비스로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이돌보미 사업대상은 크게 국가지원형과 전혀 혜택이 없는 일반가정으로 나눈다. 맞벌이 가정 등 일정소득이상인 경우에는 전적으로 자부담으로 국가가 양성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어떠한 지원이 없다. 다만 그 아이돌보미를 신뢰하고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업대상자란 일정기준의 지원을 받는 가정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소득수준이나, 아이의 연령에 따라 일정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한 가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

며 이용가정의 유형으로는 맞벌이 가정(40%)의 연계건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일반가정(35.8%)%, 한부모가정(15.7%) 순이다. 서비스이용연령 현황을 살펴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6-8세)>1세>2세>12개월 미만>3세>4세>5세>9세-12세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은 92.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경기도 보육교사 운영 실태 분석

2008년1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맞벌이 가정 및 취업여성의 보육문제 해소를 사회/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정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인이 출산, 육아 경험이 있거나 어린이집 현장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 자격을 이 주 어지며, 지역보육센터에서 면접과 함께 40시간 이상의 직무연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경기도민이면서 36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이나, 만5세까지 연장 보육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가정보육교사의 역할은 가정을 방문하여 1:1 맞춤형으로 영아를 돌보아 주는 것으로 국가에서 개발한 영아표준 보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발달단계에 맞게 보육을 실시한다. 자녀의 교육과 함께, 영아의 주 활동 공간의 청소와 장난감 세척, 젖병 소독, 목욕시키기 등의 활동, 이유식과 식사제공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보육계획안과 하루일과 등의 내용을 부모에게 매일 전달하는 등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현재 아이돌보미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8시간 보육기준으로 했을 때 보육교사는 1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 비용구성은 부모부담금 579,000원, 활동지원금 179,000원, 보육료지원금 251,000원이 된다. 보육료지원금은 여성이 취업했을 때와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되는데 아래와 같이 취업여성의 경우는 421,000원을 지원받는데, 12개월 미만 첫째아의 경우 취업지원금 76,000원, 이용지원금 175,000원, 보육교사활동 지원금170,000원으로 구성된다. 12개월 미만이면서 둘째아의 경우는 취업여성 지원금 191,000원이 되어 총 536,000원의 지원이 경기도에서 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은 464,000원이 된다.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기도의 가구는 261가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서, 이용자가정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등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고

소득 가정도 이용하는 점에 대한 면을 지적하고 있다.(서울경제신문,2009,10,14일) 특히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하여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등을 시도하였으나, 보육시설 연합회 등의 반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가정보육교사와 시설에 있는 보육교사의 업무상의 형평성이 되지 않은 점과 중상층대상의 지원이란 점 등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여성취업이란 현실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자녀 지원, 3세미만의 영아기 자녀발달지원이란 측면의 세 마리토끼를 잡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근거법 없이 진행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

### 3) 사회적 일자리로 'YMCA 아가야' 사업

'YMCA 아가야'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업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출산과 양육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차원에서 양육의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동시에 여성에게 경제적 독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한 'YMCA 아가야'에서는 지역사회실업 여성들을 모집하여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전문 가정육아교사를 양성하고, 교육 후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과 가정을 연계하여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 4) 민간 베이비시터 현황 분석

민간 베이비시터 파견회사가 설립된 것은 1996년부터다. 1996년은 정부가 보육3개년확충계획에 의하여 보육의 양적 확충이 한참 추진되던 시기로 보육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되던 시기이었다. 그 후 보육시설 확충으로 공급이 확대되어 베이비시터 회사 설립이 주춤하다가 2000년대 초에 인터넷의 확산으로 일종의 벤처사업으로 다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는 그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베이비시터와 같이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소개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을 대상으로 홈 아웃소싱 성격의 포괄적인 인력 파견을 하는 업체이다. 따라서 회사의 유형에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가 난다. 전자의 경우 베이비시터 소개 전문업체라고 하겠는데 제공하는 서비스는 업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매우 다양하며 일반 탁아 이외에도 가사도우미, 산후조리도우미, 실버도우미, 학습시터, 놀이시터, 현장학습시터 등 부모가 해야 하는 모든 관련 업무를 시터업무로 개발하여 제공한다. 이 이외에도 영어시터 파견이 있는데, 최근

에는 영어권 외국인을 가정에 일정기간 동안 입주시켜 아동을 돌보면서 영어교육을 하도록 오피어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V. 가정 내 개별양육 서비스 제도화**

### **1. 서비스 대상 아동과 종사자의 자격**

서비스 대상 아동은 출생이후 만12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 아동의 경우는 현재 장애아동가족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2010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에서는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단체에서 인증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돌봄 대상 자녀로 하는 범위는 0세아에서 부터 만 12세 미만의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까지 포함하고, 또한 아이돌보미는 반드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의 지휘를 받아 아동에게 개별화된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제도, 사회적 기업인 YMCA 아가야 사업 및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에서도 각각 아동에게 개별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자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 제도의 법제화에서도 이들에게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필수적인 자격조건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아이돌보미에게 일정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들 자격증에 수여와 조건이 문제될 것이다.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격증을 수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자격인증을 위한 교과과정**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교육 과정은 시·도에서 지정한 별도 교육기관 또는 소권역별로 통합하여 교육을 받도록 구성되어 있다. 반면 사회적 일자리인



YMCA아가야 사업은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두고 있으며, 방송통신대학교 연계 하여 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의 경우에도 베이비시터 교육을 자체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90%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인사를 초빙하거나 외부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각각5.4%, 3.2%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민간 베이비시터 연계기관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에 충실함 등이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이면 교육기관으로 선정 받기 희망하는 기관에 일정한 요건을 제시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고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기관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최근 교육서비스 제공 내용, 교육 서비스 제공 실적 및 교육 커리큘럼, 교육 강사진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육, 아동 및 유아교육 관련 학과가 있거나 아동 및 가족, 사회복지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서 이러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육기관을 외부 전문 기관에 선정 의뢰하는 경우 보수 교육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 즉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은 월 1회 집단 보수교육을 실시하되 보수교육은 1) 보육, 아동 및 유아교육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2) 아동양육 및 가족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을 것이다.

### 3. 서비스 공급 기관

가정 내에서 개별적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기관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과 같이 공공적 성격을 지닌 단체, 사회적 기업의 유형의 YMCA아가야 사업 및 민간 영리 기관이 있다.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도화 할 경우 이 세 종류의 기관을 모두 서비스 공급 기관으로 포함시킬지의 문제가 있다. 민간 영리 시장이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수용하면 장점은 서비스 연계 기관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규모의 확대가 질적인 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또한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므로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가가 이루고자 하는 양육의 공공성이라는 목적에 비교하여 부합하는 이념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공공 서비스적 특성의 아이돌보미 사업과 영리 사업이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을 하나의 관리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양자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도리어 양자

의 이질적 속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관리의 기준을 도입하는 어려움이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

사회적 기업의 유형으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연계하는 YMCA와 같은 공익적 성격의 민간 비영리 단체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이들 기관이 사회적 기업의 유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도 아동에 대한 양육 서비스 제공의 특성상 요구되는 아동인권보장 차원의 기준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서비스 연계를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연계 기관은 상근자를 두어야 하며 아이돌보미 관리와 가정 내 양육을 필요로 하는 가정과 아이돌보미를 연결해 주고, 아이돌보미의 활동을 관리하며, 사업 주체가 자녀양육 지원 기능으로 on-line, off-line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돌보미 파견 가정 부모에게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off-line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료 수납 및 돌보미 급여를 지급한다. 안전사고 관련 및 기타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지원하며, 돌보미의 질병, 응급사태, 휴가 시 대체인력지원 등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아이돌보미 위탁 사업체의 최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아이돌보미 상해보험, 아동배상보험 등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과 운영자 인건비가 포함될 것이다. 또한 아이돌보미에게 근로자로서의 처우와 중장기적으로는 최소 단시간 근로자 형태로라도 고용하여 일정한 고정급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로서의 보호가 가능하고 4대 보험가입을 해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4.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 **1) 아동에 대한 안전제도**

현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아이에 대한 배상·상해 보험 및 돌보미에 대한 상해 보험 가입하고 있다. YMCA 아가야 사업에서는 단순히 배상 보험 가입이외에 아동안전 관리의 책임

소재를 귀속시키고 있다. 즉 베이비시터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나 상해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베이비시터는 업무 중에 강도, 절도, 사기, 폭력행위 등을 행함으로써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과 당사에게 입힌 재산상, 신체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고, 베이비시터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시터가 책임을 진다고 약관으로 정하고 있다.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결과 가입한 보험의 종류를 보면 아동, 시터,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험 등인데, 이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험이 전체의 78.5%로 가장 많았으나, 단독업체의 경우는 절반가량인 55.6%만이 아동 대상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문제는 아이돌보미가 활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명확하지 않다. 이는 가정에 개별적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와 소재가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본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계약에 따라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자에게 그 급부가 되는 돌봄노동과 이에 따른 부수적 주의 의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적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 시장을 통하여 아동에 대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현재 민간 베이비시터를 소개하는 서비스 연계 기관들이 이들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인력 소개 정도에 그치는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는 법적으로 부모에 의하여 고용되는 고용계약의 형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계약에서 부가되는 급부제공의 기준에 따라서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간 베이비시터는 그 책임의 한계를 정하게 된다. 고용계약에 따라 베이비시터가 제공해야 하는 급부는 아동을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급부제공의무 이외에 부가되는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베이비시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정도에 해당하는 주의의무를 가지고 아동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추상적·평균인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정도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특히 아동에 대한 가정 내 안전사고의 상당 부분이 식품 등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아동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민간 베이비시터이든 사회적 기업의 형태인 YMCA아가야 사업이든 아동에게 개별적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음식을 조리하도록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며 아동의 부모가 마련한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 메뉴얼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모가 제공한 간식이 직접 조리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완료된 가공식품인 경우 이들의 유통일자를 확인하는 작업은 아동에 대한 개별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책임의 범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모의 책임 영역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부모와 아이돌보미가 공동의 책임 영역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유통일자를 확인하는 것은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일반적으로 구매 단계에서부터 평균적 소비자들에게 일차적으로 검증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아동안전사고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추락, 넘어짐 또는 미끄러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예상되는 부분은 욕실에서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가정의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사고는 아동에 대한 일정 시간동안의 양육을 아이돌보미에게 맡기고 있는 부모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목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아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아이돌보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많은 경우 이에 대비하여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보험으로 손해를 보장해 주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배상액이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는 현행 상해보험제도에서 보상액의 범위를 월등하게 초월하는 손해의 발생의 경우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는 사법적 책임을 여전히 부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이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사고의 발생과 관련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의 하나는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들의 활동 공간을 어디까지로 확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가정 내 개별 양육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란 아동의 주거지에서 부모 등의 지휘·명령을 받아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이 경우 주거지의 범위를 아동의 생활공간

이 집안으로만 국한하는 것인지 또는 광범위하게 아동의 생활이 영위되는 곳, 즉 아동의 주택과 아동의 놀이공간으로서 놀이터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과의 놀이를 함께 하는 것이 아이돌보미의 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때, 안전장비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아이돌보미의 책임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가 아동과 자전거를 타거나, 인라인 스케이트 등 또래 아이들이 하는 놀이에 동행할 경우, 아동이 헬멧, 손목, 발목 및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아이돌보미가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낙상의 위험이 높은 놀이터의 시설물, 예컨대, 미끄럼틀 같은 것을 탈 경우 아이돌보미는 반드시 근접거리에서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놀이터에 동행하는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아이돌보미 사업이 영리가 아닌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한 복지서비스 계약의 속성을 위임 또는 도급 어느 측면의 계약으로서의 성격으로 규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현행 법체계에서는 서비스 제공은 중등의 품질 서비스(민법 제375조 유추)를 제공할 의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되며 서비스의 질과 관련해서는 선관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급부 자체가 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서비스 그 자체의 품질과 그 제공 상태라는 것을 구별할 의미가 없는 것이 많고 서비스의 질은 동시에 위 양자의 규정(즉 민법 제375조와 681조)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 즉 아이돌보미가 아동에게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책임져야 하는 서비스 질의 한 유형으로서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는 현행 법 체계에서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정도가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안전 배려의 의무는 위에서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의 베이비시터가 부담하는 경우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 2) 개별양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배려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안전배려에 대한 의무는 단지 아동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가칭 아이돌보미)에 대한 안전문제 또한 배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내 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

지고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아이돌보미도 가정 내에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서 예외는 아니다. 특히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화재나 기타 낙상의 위험 등은 아이돌보미에게도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의 경우 상해보험 가입이 아동을 대상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며 근무하는 아이돌보미는 상해보험으로부터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일하게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YMCA아가야 사업에 약관이다. 이 약관에 의하면 센터 소속 베이비시터가 접수된 이용 시간 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가입한 보험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약관의 회원의 권리 및 의무와 이용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베이비시터의 고의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베이비시터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YMCA아가야 베이비시터 이용약관, 제9조 사고 도난에 대한 책임).

이와 같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배려는 사실상 서비스 제공은 연계하는 센터에게 일정한 책임을 귀속시키기 전에는 사실상 이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고려하기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민간 영리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베이비시터의 경우 현재의 서비스 연계 기관의 역할을 볼 때, 베이비시터가 서비스 연계 기관에 소속되어 서비스 연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별양육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모와의 고용계약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며, 고용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실 책임의 법리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용자인 부모에게 과실이 없다면 베이비시터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베이비시터의 개인책임으로 귀속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베이비시터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기준이다. 사실상 아동에게 가정 내에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의미가 단지 아동의 복지라는 측면 이외에 상당 부분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 단순히 고용계약의 법리에 의하여 과실 책임만을 귀속시키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관은 아이돌보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이 가입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 5. 가정 내 양육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전달체계와 사회적일자리로서 아가야 사업, 민간 베이비시터 등의 사업은 복지서비스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영리성을 추구해야 하는 민간베이비시터 기관의 융합적 전달체계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되어, 공공재를 바탕으로 하는 전달체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이용과 인터넷을 통한 전산관리, 보호자 체감형과 선택적 서비스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바우처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전달체계 개발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 여성가족부의 업무나 기능은 종전의 기능에다 유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의 기능의 추체로서 활동하도록 하고, 전자정부의 특성을 활용한 전산관리와 전자바우처에 대한 총괄 기획 업무를 추가한다. 특히 유관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보육업무의 중복,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결, 부모의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의 선택권과, 자녀양육수당의 연계, 세제지원, 교육복지우선대상자(초등학교 교육복지 저소득층가구)의 학습돌보미 지원,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확보, 보험 등의 다양한 문제를 우선 협의권을 확보하는 것을 통하여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법령의 근거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VI. 자녀돌봄지원법(안) 제정 이유와 방향

### 1. 자녀돌봄지원법(안) 제정의 이유와 목적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부모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원칙을 인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하

고 있다. 동시에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아동권리협약 제18조 제1항). 이러한 아동 양육과 발전에 대한 책임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당사국이 취업 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아동권리협약 제18조 제2항 내지 3항). 또한 동 협약은 계약국으로 하여금 부모의 권리 및 의무를 고려하면서 자의 복지에 필요한 보호 및 케어(care)를 확보 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사법상, 행정상의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한다(자녀돌봄지원법 (안) 제3조 제2항).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 체계는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시설 중심의 아동 양육체계는 대상 아동이 1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저조하며 부모 스스로가 보육시설에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맡기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여성노동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로 저녁시간부터 밤 시간에 노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국가가 마련하여야 하는 아동양육은 좀 더 이용자 중심으로 세분화 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정 내 개별 양육에 대하여 제공하는 양육 서비스를 표준화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사용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보장하며(아동권리협약 제18조 제2항 내지 3항), 이를 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50%를 기준으로 소폭의 변화만을 거듭할 뿐 그 이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 유희 인력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활용도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일과 가정을 양립이 가능한 구조로 사회를 재구성 하는데 가정 내 개별



양육에 대한 지원과 같은 돌봄노동 시장에 대한 법적 정비는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된다. 가정 내 개별 양육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돌봄 서비스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일정수준 이상의 돌봄 인력과 양육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부모와 가족은 아동의 질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므로, 부모 역할 지원과 자녀를 기르기 좋은 지역 사회를 조성함으로써 현재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양육지원 사업으로는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양육 지원 서비스이다. 현재 이 사업은 법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녀돌봄지원법(안)은 아이돌보미 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2. 자녀돌봄지원법(안) 제정의 방향

본 보고서에서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에 대한 법안 제시는 그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서비스 제공 인력이므로, 보육제공자의 질적 수준이 균등하도록 인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즉, 아이돌보미를 교육하여 자격을 부여하며,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사후관리하는 등의 사항들이 모두 필요하다. 현재는 자격 기준이 없고 공식적인 자격부여 기관도 없다. 영리 회사도 인력의 질 관리에 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육시간이 턱없이 짧고 표준화된 교재도 없다. 또한 가정 내 보육제공자는 양성, 파견 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파견 후 부모와 도우미에 대한 사후관리가 성공의 가장 결정적 요인이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조건들도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아동과 아이돌보미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도우미를 위한 활동지침을 마련하고 아동을 위한 도우미와 부모의 지침을 마련하여 도우미와 부모가 지키도록 하여 도우미와 아동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보육도우미의 근로자로서의 보호는 현재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단기적으로도 최소한의 보호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보육도우미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직업으로서의 장점과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정부 지원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부모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가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과 부모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사업 대상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는 취업모와 미취업모가 혼재되어 있고, 이용 유형도 보육시설과 대체관계와 보완관계를 다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정 내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양육지원연계기관 등록 대상을 비영리 법인 단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사업자에게 자녀양육지원기관 등록을 허용하게 될 경우 아이돌보미 사업자 위탁 선정에서 완전 배제하기 불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정 내 보육 영역에 영리 개인이 포함될 경우에 두 가지가 우려된다. 첫째는 정부의 지원과는 무관하게 보육서비스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어 부모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둘째는 현재 시설보육과 같이 자녀 양육지원 사업의 공공성 유지에 애로가 발생하고 정부의 비용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자녀양육 지원 사업이 민간 영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보육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정부가 아이돌보미 서비스 가격 통제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에 의한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하여 정부의 지도 감독이나 이용자 지원이 없다는 비판은 여전할 것이지만, 비판보다는 우려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 시설보육의 경우 재정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모 부담이 여전한 것은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와 비영리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가정 내 보육제공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위탁체 또

는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서로간의 교류나 협력은 미약하다. 무엇보다도 육아지원서비스 수준의 균질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 및 사업의 민간 기관 위탁관련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Ⅶ. 자녀돌봄지원법 시행의 효과**

### **1. 아이돌보미 사업의 안정적 운영**

자녀돌봄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법령의 근거 없이 단지 여성가족부의 정책 사업으로 이루어지던 아이돌보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자리 잡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를 통하여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으로 통일적 수준의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제한된 접근이 아니라 좀 더 확대된 범위에서 서비스에의 접근가능성이 확장되어 이용이 편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이돌보미와의 관계 설정이 명확히 이루어 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을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본다.

### **2. 보육의 사각지대 극복**

본 연구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시설 중심의 현행 보육은 명백히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 즉 0세아의 경우 시설보육을 희망하지 않는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생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저소득 여성들의 노동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야간에 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과 후에서부터 야간에 이르기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나이를 지난 초등학생의 경우 보육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가정에 개별적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령화함으로써 표준적이고 접근이 용

이한 서비스를 개별 가정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특히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동시에 아동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가지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아동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공유함으로써 전체적인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에게도 이러한 서비스를 접근이 용이하게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3. 복지서비스계약 내용의 구체화로 분쟁의 대비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법령의 근거가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과 돌보미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아동의 상해에 대해서는 아동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해보험이 보장해 주는 범위가 좀 더 명확히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동안전사고의 상당부분이 물리적 사고 이외에도 식품으로 부터도 발생하게 되는데 상해보험이 이를 보상범위로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법제정을 통하여 구체적 사업 추진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의 소재 또한 명확히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이돌보미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이나,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가 민간에 위탁된 복지계약의 유형을 빌어 제공된다는 점에서 계약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법령화하는 작업은 필수적인 것이다. 복지서비스 제공계약은 우리 법제의 틀 속에서 매우 생소한 유형의 계약으로 그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와 한계가 아직도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기존의 계약 이론에 의해서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특히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계약에서 무엇이 급부이며 무엇이 주의의무인지에 대해 법이론적으로 명확한 논의가 전무하며, 확립된 판례나 이론적 틀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별적 양육 서비스를 복지계약을 통하여 제공할 때 안전사고와 관련한 기준을 법령으로 명시화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아동 모두에게 심각한 후유장

애를 유발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을 것이다. 「자녀돌봄지원법」의 제정을 통하여 이러한 예상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4. 돌봄 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장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하여 개별 가정에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면 아동의 복지를 구현하는 측면도 있으며 동시에 양육의 경험을 가진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돌봄노동 시장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들 돌봄노동자들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내근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적지위가 불안정하다.

따라서 이들이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관에서 이들을 어떻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에게 표준계약을 작성하여 표준계약서에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 양육의 국가사회지원을 통한 평등사회 구현

현재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3세 미만의 아동을 둔 근로자에게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1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3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3세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선택할 수는 있으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아동양육을 직접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0세아를 둔 근로자는 대부분 이들에 대한 양육을 시설보육에 의뢰하기 보다는 조부모나 친족 등 비공식보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명확한 것은 0세아에 대한 육아에서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의뢰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비공식 보육지원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0세아에 대한 양육은 근로자, 특히 여성근로자에게 노동시장에서의 퇴직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자녀돌봄지

원법』을 제정하게 됨으로써 이들 개별양육 지원을 위한 안정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영유아에 대한 개별양육 서비스를 보편화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본다. 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지원 서비스가 확립됨에 따라서 근로자들(특히 여성근로자)에게 성별분업의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양성이 공존하는 노동시장과 양성이 함께 책임지는 양육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 목 차

제1장 서론 .....	1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6
II. 연구 방법론 .....	7
1. 질적연구 방식 .....	7
2. 문헌 중심 연구 .....	8
3. 학제 간 융합 연구 .....	8
4. 비교법적 연구 .....	9
제2장 국내 아동양육 및 보육시설 이용현황 .....	11
I. 국내 아동 양육 현황 .....	13
1. 낮 시간 돌보는 사람 .....	13
2. 아동 발달단계별 바람직한 주 양육자에 대한 의견 .....	15
3.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욕구 .....	16
II. 국내 보육시설 이용의 현황 .....	28
제3장 가정 내 양육지원에 대한 외국의 법제 및 사례 .....	33
1. 프랑스 .....	35
2. 호주 .....	42
3. 일본 .....	47
4. 독일 .....	53
5. 소결 및 시사점 .....	58

<b>제4장 가정 내 개별양육 서비스 제도의 현황</b> .....	61
I. 다양한 자녀양육 서비스 등장 배경 .....	63
1. 자녀양육환경의 변화와 양육지원의 다양화의 필요성 .....	63
2. 가정 내의 자녀양육 가치의 중요성 인식 .....	65
3. 여성인력개발의 가치 중요성 .....	66
4. 자녀양육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 .....	67
II. 아이돌보미의 현황 분석 .....	68
1. 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로서 아이돌보미 사업의 배경 .....	68
2. 아이돌보미사업의 진행 .....	70
3. 2009년 아이돌보미사업 현황 분석 .....	72
4. 특별 돌보미 파견 .....	80
5. 2009년 아이돌보미 서비스 만족도 분석 .....	84
6. 소결 .....	96
III. 경기도 보육교사 운영 실태 분석 .....	98
1.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소개 .....	98
2.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의 보육료 현황 .....	99
IV. 사회적 일자리로 “YMCA 아가야” 사업 .....	101
1. 사회적 일자리의 의미와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101
2. YMCA아가야 사업의 구성 .....	101
V. 민간 베이비시터 현황 분석 .....	103
1. 민간 베이비시터 현황 .....	103
2. 베이비시터 활동 분석 .....	105
<b>제5장 가정 내 개별양육 서비스 제도화</b> .....	107
I. 서비스 대상 아동과 종사자의 자격 .....	109
1. 서비스 대상 아동 .....	109
2. 개별양육 서비스 수요 측정 .....	109
II. 종사자 자격 .....	111
1. 아이돌보미 자격 .....	111
2. 사회적 일자리 YMCA 아가야 자격 .....	113



3.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기준 .....	114
4. 소결 .....	118
III. 자격인증을 위한 교과과정 .....	120
1.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	120
2. 사회적 일자리 YMCA 아가야 사업 교육과정 .....	124
3.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 .....	125
4. 소결 : 아이돌보미의 교육 기준 .....	128
IV. 서비스 공급 기관 .....	130
1.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 및 운영 .....	130
2. 사회적 기업의 개별양육 서비스 제공 .....	132
3.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에 의한 개별양육서비스 제공 .....	133
4. 아이돌보미의 사업 기관 .....	135
V.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	142
1. 아이돌보미 사업과 안전기준 .....	142
2. YMCA아가야 사업 안전기준 .....	142
3.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의 안전기준 .....	143
4. 아이돌보미 사업의 아동 보호 기준 .....	144
VI. 가정 내 양육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	153
1.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의 전달체계 .....	153
2. 사회적 기업의 가정 내 개별양육서비스 전달체계 .....	158
3. 아이돌보미사업의 전달체계 구성 방안 .....	166
<b>제6장 자녀돌봄지원법(안)과 관련 국내법의 관계 .....</b>	<b>171</b>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173
2. 민법 .....	176
3. 아동복지법 .....	180
4. 건강가정기본법 .....	183
5. 영유아보육법 .....	185
6. 유아교육법 .....	188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91

8. 장애인복지법 .....	194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195
10. 직업안정법 .....	196
11. 사회적기업육성법 .....	197
12. 고용보험법 .....	199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1
14. 국민건강보험법 .....	203
15. 국민연금법 .....	204
<b>제7장 자녀돌봄지원법(안) .....</b>	<b>207</b>
I. 자녀돌봄지원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 .....	209
II. 자녀돌봄지원법(안) 제정의 방향 .....	211
III. 자녀돌봄지원법(안)의 내용 .....	212
1. 돌봄의 영역 규정 .....	212
2. 돌봄 인력 자격 인증 .....	213
3. 교과과정 체계화 및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214
4. 사업 주체 관리체계 구축 .....	215
5. 돌봄 인력 처우 개선(4대 보험 가입 등) .....	216
6. 아동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	217
7. 활동 점검 등 지도·감독 및 벌칙 조항 .....	218
8. 비용 부담 및 정부 재정지원 범위, 세제지원 .....	218
9. 지도 및 감독 .....	219
IV. 자녀돌봄지원법 시행의 효과 .....	219
1. 아이돌보미 사업의 안정적 운영 .....	219
2. 보육의 사각지대 극복 .....	220
3. 복지서비스계약 내용의 구체화로 분쟁의 대비 .....	220
4. 돌봄 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장 .....	221
5. 양육의 국가사회지원을 통한 평등사회 구현 .....	222
<b>■ 참고문헌 .....</b>	<b>223</b>

■ 부 록 .....	229
<부록 1> 자녀돌봄지원법(안) .....	231
<부록 2> 자녀돌봄지원법 시행령 .....	243
<부록 3> 자녀돌봄지원법 시행규칙 .....	245

## 표 목 차

<표 2-1> 낮 시간동안 돌보는 사람: 미취학 아동 .....	13
<표 2-2> 낮 시간동안 돌보는 사람: 취학아동 .....	14
<표 2-3> 최연소 아동 연령별 부모 이외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견 .....	15
<표 2-4> 영아 소득수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1월 1일 연령 기준) .....	18
<표 2-5> 유아 소득수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	18
<표 2-6> 초등학생 소득수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	19
<표 2-7>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	19
<표 2-8> 모취업상태별 취업모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률 .....	20
<표 2-9> 아동 연령별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	21
<표 2-10> 지역 및 모 취업별 영유아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이유 .....	21
<표 2-11> 소개 경로 .....	22
<표 2-12> 아이를 돌봐 주는 사람의 결혼 상태 및 자녀양육경험 .....	22
<표 2-13> 기관이나 다른 개인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	23
<표 2-14> 아동의 연령별 일주일 동안 아이를 맡기는 형태 및 평균 돌보는 시간 .....	24
<표 2-15> 아동연령별 주로 돌보는 장소 .....	24
<표 2-16>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 지불 여부 .....	25
<표 2-17> (지불하는 경우) 지불금액 평균 액수 .....	26
<표 2-18> 아동 연령별 지불하는 경우, 평균 액수 .....	26
<표 2-19> 영유아를 돌보는 비혈연인의 양육지원 항목별 서비스 만족도 .....	27
<표 2-20> 영유아 연령별 양육지원 기관 및 개인서비스 중복 이용 .....	29
<표 2-21> 초등학생 학년별 양육지원 기관 및 개인서비스 중복 이용 .....	29
<표 2-22>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	30
<표 2-23> 초등학생 아동구분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	31
<표 3-1> 프랑스의 가정 내 보육서비스 지원 .....	40

<표 3-2> 호주의 CCB 자격요건 .....	44
<표 4-1>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71
<표 4-2> 지원 기준 및 이용 요금 .....	72
<표 4-3> 지역별 신청가정 및 연계가정 현황 .....	73
<표 4-4> 지역별 신청건수 및 연계건수 현황 .....	74
<표 4-5> 평일·주말 연계현황 .....	75
<표 4-6> 시간대별 이용신청 및 연계현황 .....	76
<표 4-7> 1회 서비스 이용시간 현황 .....	76
<표 4-8> 1달 이용시간 현황 .....	77
<표 4-9> 이용사유별 현황 .....	77
<표 4-10> 이용아동연령현황 .....	78
<표 4-11> 돌봄 아동 수에 따른 이용가정 현황 .....	79
<표 4-12> 연계사업현황 .....	79
<표 4-13>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 지원 .....	80
<표 4-14> 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	81
<표 4-15> 기관파견돌보미 연계기관수 및 연계건수 .....	81
<표 4-16> 연계가정 및 연계건수 .....	82
<표 4-17> 서비스 이용한 질병유형 .....	82
<표 4-18> 긴급돌보미 연계가정 및 연계건수 .....	83
<표 4-19> 긴급돌보미 활동현황 .....	83
<표 4-20> 이용자가정 월평균 소득 .....	84
<표 4-21> 서비스유형에 따른 소득수준 .....	85
<표 4-22> 이용자 가족형태 .....	85
<표 4-23>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기간 .....	85
<표 4-24>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	86
<표 4-25>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	86
<표 4-26> 아이돌보미 서비스 중 주로 제공받는 서비스 .....	87
<표 4-27> 아이돌보미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	87
<표 4-28>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점 .....	88
<표 4-29> 아이돌보미 희망 연간 이용시간 .....	88

<표 4-30> 한 달 평균 이용요금 : 127천원 .....	89
<표 4-31>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	89
<표 4-32> 주 돌봄 제공자 .....	90
<표 4-33> 추가되기를 희망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	90
<표 4-34> 아이돌보미 연령 .....	91
<표 4-35> 아이돌보미 학력 수준 .....	91
<표 4-36> 자녀양육 경험 .....	92
<표 4-37> 아이돌보미 활동과 유사한 직업에 종사한 경력 .....	92
<표 4-38> 아이돌보미 가정 월 평균 소득 .....	92
<표 4-39>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 동기 .....	93
<표 4-40> 아이돌보미 월평균 소득 .....	94
<표 4-41> 일주일 평균 활동시간 .....	94
<표 4-42> 원하는 시간만큼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 .....	95
<표 4-43>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며 어려웠던 점 .....	95
<표 4-44> 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 .....	96
<표 4-45> 교육 시 강화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 .....	96
<표 4-46> 이용시간별 보육료 지원 금액 및 부모부담금 .....	100
<표 4-47> 자녀연령별 지원비 .....	100
<표 4-48> 베이비시터의 서비스 내용분석 .....	105
<표 4-49> 베이비시터 활동 경력 .....	106
<표 4-50> 베이비시터 이전 직업 .....	106
<표 5-1> 베이비시터 모집 시 연령 제한 여부 .....	115
<표 5-2> 베이비시터 모집 시 학력 및 경력 제한 여부 .....	115
<표 5-3> 베이비시터 모집 시 학력 및 경력 제한 여부 .....	116
<표 5-4> 베이비시터 모집 시 선호 자격 .....	116
<표 5-5> 베이비시터 모집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	117
<표 5-6>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의 자격 .....	117
<표 5-7> 등록된 베이비시터 중 공공기관 베이비시터 교육 경험자 수 .....	118
<표 5-8> 조사된 베이비시터의 보육관련 자격 .....	118
<표 5-9> YMCA아가야 베이비시터 양성과정교육 내용 .....	125

<표 5-10> 베이비시터 기본 과정 교육내용 .....	126
<표 5-11> 베이비시터 교육내용 .....	127
<표 5-12> 재교육 실시 여부 및 그 주기와 시간 .....	128
<표 5-13> 베이비시터 회사 설립연도 .....	134
<표 5-14> 베이비시터 회사 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	134
<표 5-15> 베이비시터 회사 소재지 .....	135
<표 5-16> 베이비시터 회사가 가입한 보험과 그 대상 .....	143
<표 5-17> LIG 손해보험 플러스메디칼 단체보험 내용 .....	144
<표 5-18> 회사 업무 중 시간제 및 종일제 단순 베이비시터 업무 비율 .....	160
<표 5-19> 단순탁아 이외 제공하는 서비스(복수응답) .....	161
<표 5-20> 단순탁아 이외 제공하는 서비스 사례 .....	161
<표 5-21> 프랜차이즈 회사 개점시 본사 지원 현황 .....	163
<표 5-22> 프랜차이즈 회사 개점 후 본사 지원 현황 .....	164
<표 5-23> 베이비시터 회사 상근인력 평균 .....	165
<표 5-24> 베이비시터 회사 상근인력 분포 .....	165
<표 5-25> 베이비시터 회사에서 활동한 시터 수(한 달 기준) .....	166

## 그림 목 차

[그림 2-1] 이용형태별 개인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율 .....	17
[그림 2-2] 영유아 비혈연인 서비스 만족도 .....	27
[그림 5-1] 아이돌보미 사업전달체계와 업무 분장(안) .....	169



제 1 장

서 론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II. 연구 방법론	7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1) 돌봄수요의 증가와 가정 내 돌봄노동의 한계

현대 사회는 의료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한 기대수명의 연장, 전통적 가치관에 의한 양성의 성별분리 역할에 대한 성평등적 방향으로의 전환, 이혼율의 증가와 그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한정되었던 가사와 돌봄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던지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 분야로 인식되어온 돌봄은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노동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구조의 변화와 양성의 성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돌봄을 더 이상 가정에서 여성에 의하여 수행되는 행위로만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 2)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아동양육의 현실

전통적으로 아동의 돌봄은 가정 내에서 여성이 수행하여야 하는 고유의 역할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일상적인 노동력 재생산의 장으로서 가정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약 50%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그 역할이 증가됨에 따라 가정 내 아동 돌봄이 여성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800,991명, 2004년 891,028명, 2006년 957,237명으로 양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총 영유아 수 대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취원 아동 숫자를 포함하여 취원율을 살펴보면 2000년 약 30%에서 2006년도 약 50%로 약 20%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아동에 대한 보육정책의 발전과 한계

이와 같이 보육 시설의 이용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은 민간 중심의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료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팽창되어 왔다. 정부는 1990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면서 그간 가정의 몫이었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기로 하며, 절대 부족했던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설립을 장려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보육시설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보육시설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춘 결과 95년 9,085곳이던 어린이집은 2008년 3만3499곳으로 늘었다. 서울시의 경우 보육 수요는 18만2606명인데 어린이집 정원은 23만888명이다. 수요 대비 공급이 126.4%에 달한다. 여기에 유치원·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 대도시에서 발달한 각종 사설 기관까지 집계한다면 공급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설이 넘쳐나고 있으나 영·유아 부모들은 마땅히 아이 맡길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이러한 현상은 특히 단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만 3세 이하 영아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직장여성의 영아보육현황은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70.7%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시설이 15.3%, 가사대리인 9.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세아의 경우 혈연에 의한 이용 비율이 매우 높고 보육시설보다 비공식 부분의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어린이집이 아니라 조부모, 베이비시터 등에게 아이를 맡기는 영아 부모 335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너무 어려서 기관 적응이 힘들까봐'(72.8%)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이 일대일 보육지원의 형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반면에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의 참여는 단지 영유아의 보육 지원 이외에도 아동의 연령대 별로 다양한 양육의 문제를 유발한다. 낮 시간 동안 취학 아동을 돌보는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 부모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주로 함께 지내는 존재는 형제자매, 친조부모, 외조부모, 내지 기관으로 양육주체의 순서가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경우 부모를 제외

2)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한 통계 결과를 보면 낮 시간동안 아이들끼리 지내는 경우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같이 지내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2009년도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통계). 그러나 취학아동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스스로 보호능력이나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거나 성인 없이 아이들끼리 지내는 경우에 대한 안전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설보육이 끝나고 초등교육이 시작되는 경우 모의 취업 시 아동은 방과 후 돌봐줄 어른이 없이 혼자서 학원 등을 다니며 부모의 퇴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방임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여진다. 방임아동의 심리적 장애는 이미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방과 후 혼자 방치되는 아동은 각종 사회적 범죄의 위험 등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양육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4) 여성인력의 취업역량 강화

아동에 대한 양육을 한 여성들의 경험을 단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과학화함으로써 돌봄 노동의 영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돌봄 노동의 영역이 이제까지는 주로 노인에 대한 간병 등의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 졌으나 저출산 시대 아동 양육에 대한 다양화된 욕구를 반영하고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다양하고 입체적인 양육지원이 요구되게 됨에 따라 아동양육의 영역에서 새로운 돌봄노동 시장이 구축될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분야의 시장은 향후 일면 여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노동의 시각에서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5) 다문화 가족의 증가와 아동양육의 지원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의 증가는 이미 하나의 사실이다. 국제결혼 뿐 아니라 해외이주 가족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가족과 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지역 사회 및 정부의 지원서비스, 육아부담을 느끼는 가정들의 육아지원을 위한 다양

## 6 「자녀돌봄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경감되고 국제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와 가족 적응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육환경의 변화는 향후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이 언급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영아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초등학교에 재학생까지도 포함시키되,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영아기에서 부터 학령기 시기까지 가정 내에서 아동이 방임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언급한 아동양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육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정책 수행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영유아 단계부터 초등학교 단계까지의 개별양육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방임을 막고 아동의 인권과 복지에 부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는지 검토하는 것을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정 내 개별 양육지원의 유형으로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 민간 비영리 단체인 YMCA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아가야’ 사업 및 민간 영리 단체에서 중개되고 있는 베이비시터 사업이 있다. 이들은 가정 내에서 아동의 부모의 지휘아래에 개별적인 일대일 양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전제가 되는 개별양육 제공자와 부모 그리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관의 성격이 각각 차이가 있다. 즉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은 국가의 복지서비스 사업의 일종의 성격을 가지며, YMCA ‘아가야’ 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민간 베이비시터의 경우 베이비시터를 알선하는 기관이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중개를 할 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수요자인 부모와 베이비시터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그 관계가 형성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 양육 제도는 이를 지원할 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문제로부터 명확한 책임의 정도 및 책임의 주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개별 양육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법적 지위도 불안정하여 이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의 범위에서 서비스에 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이 없었으며 이들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가 가능한 것이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삼면관계, 즉 서비스 제공과 대상의 주체인 아이돌보미와 아동의 관계, 서비스 제공 기관과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관계,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 부모의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인 문제를 규정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와 이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그리고 그 수혜자인 아동 삼자 모두에게 분쟁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정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의 법률관계를 법제화하는 입법(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 II. 연구 방법론

### 1. 질적연구 방식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양육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먼저 개별적인 양육서비스 제공 방식인 아이돌보미 사업, YMCA ‘아가야’ 사업 및 민간 베이비시터 각각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인 양적 통계 분석 보다는 현재 연구되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한 이를 법제화 하는 과정에 요구되는 관련법과의 검토를 통하여 제

## 8 「자녀돌봄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안될 법(안)과 충돌되는 지점이 없는지 검토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황에 대한 양적 분석 보다는 기존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법(안)을 마련하는 질적 연구 방식을 사용한다.

### 2. 문헌 중심 연구

이 연구는 아이돌보미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가정 내 개별 양육에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할 수는 없으나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 제공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연구는 유관분야를 중심으로 기존의 선행연구 등이 축적되어 있다. 법제화 관련해서는 기존의 보육제도에 관한 연구와 개별양육지원에 대한 현황 및 정책 그리고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가내 노동자의 문제를 문헌을 통한 접근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이 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실태조사를 직접 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간 베이비시터와 관련된 통계 등은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 3. 학제 간 융합 연구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법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 속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현행 육아정책과의 관계 정립이 정확히 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틀 속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연구는 가족학 전문 연구가의 연구가 요구되며, 육아정책관의 관계는 육아정책연구자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학 전공자, 육아정책 연구 전문가 및 법학자 3인이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수행하여 최종 법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 4. 비교법적 연구

가정에서 수행되는 개별적 양육을 민간 차원에 일임하지 않고 국가가 일정한 개입을 통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일정한 수준의 법적 보장을 주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가정 내 개별적인 양육에 대해 우리나라는 관련 근거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는 것은 입법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 내 개별적 양육에 관한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호주 및 일본의 입법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제2장

## 국내 아동양육 및 보육시설 이용현황

I. 국내 아동 양육 현황	13
II. 국내 보육시설 이용의 현황	28

## I. 국내 아동 양육 현황

### 1. 낮 시간 돌보는 사람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을 구분하여 모취업여부별, 가구소득별로 낮 시간동안 돌보는 사람을 살펴보았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모취업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모두 차이가 나타났다.

〈표 2-1〉 낮 시간동안 돌보는 사람: 미취학 아동

(단위: %(가구))

구분	부	모	아이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친조 부모	외조 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기관	없음	계(수)
전체	1.2	68.4	1.0	0.5	6.7	6.3	0.2	1.3	14.3	0.1	100.0(3,304)
모취업여부											
취업	2.0	22.9	2.9	1.0	16.1	17.8	0.4	3.7	33.0	0.2	100.0(1,112)
미취업	0.7	94.7	-	-	0.4	0.4	-	0.0	3.8	-	100.0(2,114)
부재	5.3	1.3	2.8	4.0	48.0	1.3	-	1.3	36.0	-	100.0( 7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1	73.6	2.5	-	6.3	1.3	-	0.6	12.6	-	100.0( 159)
100~149만원 이하	2.0	72.0	3.0	0.7	5.5	2.0	-	-	14.5	0.3	100.0( 304)
150~199만원 이하	1.8	79.5	0.9	-	3.0	4.5	-	-	10.3	-	100.0( 561)
200~249만원 이하	1.2	78.4	0.6	0.2	3.1	1.6	-	0.2	14.7	-	100.0( 496)
250~299만원 이하	1.5	73.7	0.5	0.2	6.2	4.1	0.2	0.7	12.9	-	100.0( 411)
300~349만원 이하	0.9	73.8	0.7	0.5	7.4	4.2	-	0.5	12.0	-	100.0( 424)
350~399만원 이하	1.0	69.2	1.0	-	9.1	1.9	0.5	1.0	16.3	-	100.0( 208)
400~499만원 이하	0.3	51.8	1.3	0.6	9.6	11.7	0.3	0.6	23.6	-	100.0( 309)
500~599만원 이하	-	49.0	-	1.0	16.8	14.4	0.5	2.5	15.3	0.5	100.0( 202)
600만원 이상	0.4	29.8	0.4	2.2	11.0	27.2	-	12.3	16.7	-	100.0( 228)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모취업 여부별 차이를 보면, 미취업모의 경우 3.8%만이 기관에 맡기는 반면, 취업모와 모가 부재한 경우에는 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각각 33.0%, 36.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비혈연이 높다(<표 2-1> 참조).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이 400만 원 이상일수록 두

14 「자녀돌봄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맞벌이하는 가구가 많아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낮고 조부모나 비혈연,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은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학교가 끝난 후에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있다는 비율이 16.4%로 높고, 주로 형제자매가 돌본다는 비율도 22.2%에 달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어머니나 아버지 직접 돌본다는 비율이 높다. 특히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의 경우 모가 돌본다는 비율은 39.9%로 다른 소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낮게 나타났다.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돌본다는 비율은 중간 정도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가구소득이 낮거나 높은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이 모의 취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2〉 낮 시간동안 돌보는 사람: 취학아동

(단위: %(가구))

구분	부	모	아이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친조 부모	외조 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기관	없음	계(수)
전체	2.4	53.4	11.6	0.7	9.2	3.7	0.3	0.5	9.7	8.5	100.0(4,152)
모취업여부											
취업	3.8	19.8	22.2	1.2	11.9	6.8	0.5	0.9	16.5	16.4	100.0(2,009)
미취업	0.3	95.5	0.4	-	0.5	0.2	-	-	2.9	0.2	100.0(1,907)
부재	6.3	-	10.5	2.1	55.9	6.3	0.8	1.3	7.6	9.2	100.0( 23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6.7	50.2	9.0	1.2	13.3	3.1	-	-	10.6	5.9	100.0( 255)
100~149만원 이하	2.5	50.6	9.4	0.9	12.8	4.8	0.9	0.3	7.5	10.3	100.0( 320)
150~199만원 이하	4.6	57.3	11.3	1.1	6.1	3.4	0.2	0.2	7.4	8.4	100.0( 524)
200~249만원 이하	3.5	57.8	8.4	0.2	9.5	2.0	0.5	0.5	8.4	9.1	100.0( 548)
250~299만원 이하	0.4	57.5	11.6	0.4	8.1	3.8	0.2	-	9.9	8.1	100.0( 456)
300~349만원 이하	1.4	57.9	14.0	0.5	7.7	3.9	0.3	0.2	8.0	6.1	100.0( 572)
350~399만원 이하	1.0	51.4	16.0	0.3	8.9	0.7	-	-	11.5	10.2	100.0( 313)
400~499만원 이하	0.6	51.5	11.9	0.6	9.3	4.6	-	-	12.9	8.6	100.0( 464)
500~599만원 이하	3.1	52.8	9.4	0.6	9.1	5.0	0.3	0.3	10.6	8.8	100.0( 320)
600만원 이상	0.8	39.9	14.1	1.1	10.8	6.1	0.3	3.2	12.5	11.2	100.0( 376)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 2. 아동 발달단계별 바람직한 주 양육자에 대한 의견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와 기관, 비공식 부문 등 모든 양육서비스 제공 주체 중 각 연령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양육제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sup>3)</sup>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발달 각 단계별로 부모 이외의 가장 바람직한 양육자에 대한 의견은 영영아기 및 영유아기에는 조부모, 유아기에는 보육시설, 그리고 취학 전에는 유치원이 가장 바람직한 양육기관이며, 초등학생은 학원으로, 아동 발달단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표 2-3〉 최연소 아동 연령별 부모 이외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만1세 미만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취학전 (만5세)	초등 1~3학년	초등 4~6학년
조부모	66.8	64.6	52.5	26.6	8.1	2.5	6.5	3.7
친인척	5.7	6.1	5.4	2.9	1.1	0.5	0.8	0.5
탁아모 등 비혈연인	2.7	2.9	2.7	1.5	0.5	0.2	0.5	0.2
어린이집	3.3	5.2	16.3	46.2	55.8	17.4	0.1	-
가정어린이집(놀이방)	5.1	7.2	10.9	9.7	4.8	1.0	0.2	-
유치원	-	-	0.2	4.4	25.1	76.3	0.2	-
선교원	0.2	0.1	0.2	0.6	0.9	0.7	0.2	0.1
(반일제)학원	-	-	-	0.2	0.6	0.8	34.0	57.4
방과후프로그램기관	-	-	-	-	-	-	55.4	36.8
기타	-	-	-	-	-	-	-	-
잘 모름	0.0	0.0	-	-	-	-	0.5	0.6
부모만 가능	16.2	13.9	11.8	7.9	3.1	0.7	1.6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898)	(4,898)	(4,898)	(4,898)	(4,898)	(4,898)	(4,898)	(4,898)

3) 주 양육자가 기관, 혈연, 비혈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관, 비혈연, 혈연의 순서로 우선순위에 따라 한가지만을 응답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실제 기관 이용을 보면 취학 전에도 53.8%만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39.5%는 보육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22> 참조). 또한 3세도 유치원을 23.6% 정도가 이용하는데 4.4%만이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즉, 부모들은 접근성이나 비용부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생각과는 다소 다르게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 3.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욕구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기관 이외에 조부모나 친인척, 탁아모, 베이비시터, 과출부 등 개인에 의한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 1) 이용 아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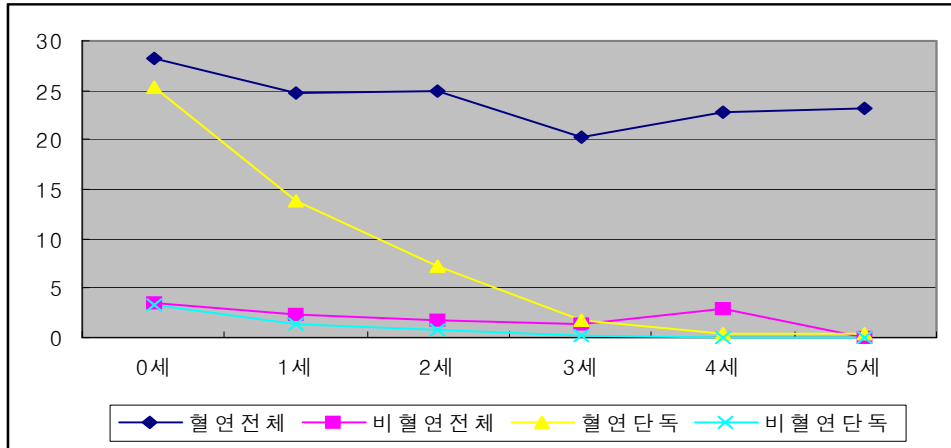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개인양육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19.7%에 해당한다. 영아의 경우 27.7%, 유아는 23.6%, 초등학교 저학년은 18.0%, 초등학교 고학년은 12.2%로, 영유아는 25.8%, 초등학생은 14.8%가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개인양육서비스 이용자 중에는 개인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이 있고 기관과 함께 이용하는 아동이 있다. 영아의 17.1%는 단독이용이고 10.6%는 기관과 병행 이용 아동이다. 유아는 0.8%가 단독이용 아동이고 22.8%는 기관도 다니는 아동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1.6%는 단독, 16.4%는 중복이용이고, 고학년생은 0.9%는 단독 11.2%는 기관에도 다니면서 개인양육지원을 받는다.

단독 이용률을 전체 이용률과 비교해 보면 0세아의 이용 대부분은 단독 이용률이지만 연령이 많아지면서 기관과 중복해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4) 부분적으로는 연령 산출 방식에서도 비율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 있음. 실제로 보육 연령 3세는 36개월부터 47개월 아동인데 비하여 조사 시에 명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응답할 가능성 있음.



[그림 2-1] 이용형태별 개인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율

## 2) 소득수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 (1) 영유아

가구소득별로 보면, 영아는 보육시설, 비동거 조부모, 비혈연의 이용률이 가구소득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 99만 원 이하 가구는 동거조부모의 이용비율이 각각 40.3%, 11.1%로 높아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거조부모는 소득수준이 500만원이 넘으면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비동거 조부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 비율이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서 소득수준 400만 원 이상이 25~29%로 150만원 미만 5.6% 및 3.8%와 비교된다.

〈표 2-4〉 영아 소득수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1월 1일 연령 기준)

(단위: %(명))

구 분	~99	100~149	150~199	200~249	250~299	300~349	350~399	400~499	500~599	600~	전체
개인 양육지원											
동거 조부모	11.1	9.5	3.6	6.9	7.7	10.6	10.3	11.1	19.1	24.4	9.7
비동거 조부모	5.6	3.8	10.0	9.9	11.6	12.4	17.1	29.2	24.5	29.2	13.9
동거 친인척	-	-	-	0.7	-	-	0.9	2.1	2.1	-	0.5
비동거 친인척	2.8	2.5	1.2	1.5	1.0	1.8	0.9	2.1	3.2	4.2	1.8
동거 비혈연	-	-	-	-	-	-	0.9	-	-	3.3	0.3
육아전문파견인력	-	1.3	-	-	0.5	0.4	-	-	1.1	4.2	0.6
기타 비혈연	-	-	0.9	0.4	1.0	1.3	-	2.8	4.3	9.2	1.6
(수)	(72)	(158)	(331)	(274)	(207)	(226)	(117)	(143)	(94)	(119)	(1,741)

〈표 2-5〉 유아 소득수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 분	~99	100~149	150~199	200~249	250~299	300~349	350~399	400~499	500~599	600~	전체
개인 양육지원											
동거 조부모	4.8	4.8	6.6	5.0	5.5	3.5	7.8	14.5	13.8	20.7	8.0
비동거 조부모	10.7	6.2	4.4	8.6	13.9	10.4	14.3	11.4	18.5	27.0	11.4
동거 친인척	-	0.7	-	-	-	1.5	1.1	1.8	1.8	0.9	0.7
비동거 친인척	2.4	2.1	0.9	1.4	3.0	1.0	1.1	2.4	1.9	4.5	1.9
동거 비혈연	-	-	-	-	-	-	-	-	-	1.8	0.1
육아전문파견인력	-	-	-	-	0.5	-	-	-	-	1.8	0.2
기타 비혈연	1.2	-	1.3	-	0.5	0.5	3.3	-	7.3	7.2	1.6
(수)	(84)	(146)	(229)	(222)	(201)	(201)	(90)	(166)	(109)	(111)	(1,559)

유아는 소득수준 500만원이 넘을 경우 이용 비혈연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2)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경우는 비공식 보육으로는 동거조부모에 의한 비율은 가구소득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으며, 비동거조부모는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된 비율을 보인다.

〈표 2-6〉 초등학교 소득수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 분	~99	100~ 149	150~ 199	200~ 249	250~ 299	300~ 349	350~ 399	400~ 499	500~ 599	600~	전체
개인 양육지원											
동거 조부모	5.1	7.8	6.9	6.9	10.3	5.9	4.2	8.2	10.0	10.8	7.6
비동거 조부모	2.7	4.7	3.1	2.6	5.5	5.8	2.2	8.2	5.3	11.9	5.2
동거 친인척	0.4	0.6	0.2	0.2	0.2	0.7	0.3	0.6	-	0.3	0.4
비동거 친인척	-	1.2	1.9	0.9	1.3	1.2	1.0	0.2	1.6	1.9	1.2
동거 비혈연	-	-	-	0.2	-	-	-	-	-	1.1	0.1
육아전문파견인력	-	-	-	-	-	-	-	-	-	-	-
기타 비혈연	-	0.3	-	0.2	-	-	-	-	0.3	3.2	0.4
(수)	(256)	(322)	(525)	(548)	(456)	(572)	(312)	(463)	(321)	(377)	(4,152)

### 3) 모 취업여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 (1) 영유아

혈연 및 비혈연에 의한 개별적 서비스 이용도 취업모 자녀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취업모 아동은 동거 및 비동거 조부모가 각각 17.0%, 25.7%인데 비하여 미취업모는 각각 4.0%, 5.9%에 머문다.

〈표 2-7〉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단위: %(명))

구 분	영아			유아			영유아			전체
	취업	미취업	부재	취업	미취업	부재	취업	미취업	부재	
개인 양육지원										
동거 조부모	19.7	5.2	22.2	14.7	2.4	25.9	17.0	4.0	25.0	9.1
비동거 조부모	29.9	7.3	11.1	22.3	3.9	12.1	25.7	5.9	11.8	12.8
동거 친인척	1.2	0.2	-	1.3	0.1	3.4	1.3	0.1	2.6	0.5
비동거 친인척	4.0	0.9	-	3.0	1.0	1.7	3.4	0.9	1.3	1.8
동거 비혈연	0.6	0.1	-	0.3	-	-	0.4	-	-	0.3
육아전문파견인력	1.6	0.2	-	0.5	-	-	1.0	0.1	-	0.4
기타 비혈연	4.4	0.2	11.1	3.1	0.2	5.2	3.7	0.2	6.6	1.7
(수)	(468)	(1,078)	(17)	(441)	(491)	(48)	(909)	(1,569)	(65)	(3,179)



(2) 초등학생

초등학생 모의 취업상태별로 개인서비스는 취업모 및 모부재 아동의 이용 비율이 미취업모의 이용 비율보다 높다.

〈표 2-8〉 모취업상태별 취업모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 분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전체		
	취업	미취업	부재	취업	미취업	부재	취업	미취업	부재
개인 양육지원									
동거 조부모	12.1	3.5	20.2	10.2	2.8	10.6	11.0	3.2	14.4
비동거 조부모	12.7	2.3	9.5	5.8	0.7	2.8	8.7	1.5	5.5
동거 친인척	0.8	0.1	3.2	0.5	-	-	0.6	0.1	1.3
비동거 친인척	2.3	1.1	2.1	0.9	0.4	0.7	1.5	0.8	1.3
동거 비혈연	0.5	-	-	0.1	-	-	0.2	-	-
기타 비혈연	0.7	0.1	-	0.4	0.3	0.7	0.5	0.2	0.4
(수)	(572)	(525)	(79)	(647)	(437)	(92)	(1,219)	(962)	(171)

(3) 이용 이유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이유로는 너무 어려 기관적응 힘들까봐라는 응답이 30.6%, 비용부담이 14.7%,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이 13.2%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이다. 이는 2004년 조사결과에 비해 너무 어려 기관적응 힘들까봐와 비용부담은 비율이 낮았으나 원하는 시간 이용이 힘들,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은 2004년에 비해 높다.

영아의 경우에는 아이가 어려서 기관 적응에 힘들기 때문이 7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유아의 경우에는 기관 적응에 힘들기 때문 26.7%, 비용부담 때문이 20.0%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다는 비율은 6.7%이다. 환경변화가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13.3%이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저학년이나 고학년 모두 비용부담이 23.5%, 1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도 각각 23.1%, 17.0%로 비율이 높다(표 2-9 참조).

〈표 2-9〉 아동 연령별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전체	2004년 조사
너무 어려 기관적응 힘들까봐	72.8	26.7	0.4	0.5	30.6	53.0
비용부담	6.0	20.0	23.5	17.5	14.7	30.8
원하는 시간 이용 힘들	7.5	13.3	12.2	10.8	9.9	2.0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움	0.9	6.7	0.4	0.5	0.7	-
시설 환경 열악	0.9	-	0.4	0.5	0.6	-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돌봐 불안함	4.2	-	2.4	1.9	2.9	2.5
환경변화로 정서적으로 안 좋을까봐	1.8	13.3	3.1	1.9	2.4	4.0
이용희망 기관대기자가 많아서	1.2	-	0.4	-	0.6	-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	3.6	6.7	23.1	17.0	13.2	3.7
기타	1.2	13.3	34.1	49.5	24.2	4.0
계(수)	100.0 (335)	100.0 ( 15)	100.0 (255)	100.0 (212)	100.0 (817)	100.0 (402)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서비스 이용 이유를 조사한 것인데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아이가 어려 기관 적응에 힘들기 때문에 우선 이유로 지적하고, 그 외 취업모는 비용부담 비율이 미취업모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표 2-10〉 지역 및 모 취업별 영유아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모취업			전체
	취업	미취업	부재	
너무 어려 기관적응 힘들까봐	67.8	76.1	-	70.9
비용부담	8.2	3.5	50.0	6.6
원하는 시간 이용 힘들	7.7	7.7	-	7.7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움	1.9	-	-	1.1
시설 환경 열악	1.4	0.7	-	0.9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돌봐 불안함	3.4	4.9	-	4.0
환경변화로 정서적으로 안 좋을까봐	3.4	0.7	-	2.3
이용희망 기관대기자가 많아서	1.0	-	50.0	1.1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	2.9	5.6	-	3.7
기타	2.4	0.7	-	1.7
계(수)	100.0 (208)	100.0 (142)	100.0 (4)	100.0 (350)

#### 4) 비혈연인에 의한 이용실태

##### (1) 소개 경로

비혈연인을 알게 된 경위를 보면, 주변의 소개로 알게 된 비율이 43.0%로 가장 많고, 평소 알던 사람 30.1%, 지역신문·인터넷 광고가 12.9%이고 인력전문기관 소개도 11.8%이다. 2004년 조사결과에서도 주변의 소개로 알게 된 비율이 56.1%, 평소 알던 사람 26.3% 순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그러나 지역신문·인터넷 광고는 사설 인력전문기관 보다 낮은 비율로 차이를 보였다(<표 2-11> 참조).

〈표 2-11〉 소개 경로

(단위: %(명))

구 분	평소 알던 사람임	주변의 소개	지역신문·인터넷 광고	사설 인력 전문기관	기타	계(수)
2009년 조사	30.1	43.0	12.9	11.8	2.2	100.0(93)
2004년 조사	26.3	56.1	3.5	14.0	-	100.0(56)

##### (2) 자격 및 특성

다음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자격과 특성에 관한 것이다. 먼저 결혼상태는 92.4%가 기혼자로 자녀를 길러본 경험이 있고, 미혼은 5.4%이다. 자격은 사설 업체 시터 이외에 7.6% 정도가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이고 5.4%가 아이돌보미 자격자이다(표 2-12 참조).

〈표 2-12〉 아이를 돌봐 주는 사람의 결혼 상태 및 자녀양육경험

(단위: %(명))

구 분	결혼상태 등			자격						계(수)
	미혼	기혼, 양육경험 유	기혼, 양육경험 무	보육 교사	유치원 교사	아이돌 보미	사설업체 시터	기타	없음	
전체	5.4	92.4	2.2	5.4	2.2	5.4	8.7	2.2	76.1	100.0(92)
영아	4.9	95.1	-	4.9	-	9.5	12.2	-	73.4	100.0(41)
유아	10.3	89.7	-	6.9	-	3.4	10.0	-	79.7	100.0(29)
초등저학년	-	83.3	16.7	8.3	16.7	-	-	9.1	65.9	100.0(12)
초등고학년	-	100.0	-	-	-	-	-	11.1	88.9	100.0(10)

### (3) 중복이용 여부

비혈연에 의한 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다른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는지 아닌지를 조사한 결과 24.7%만이 비혈연을 단독으로 이용하고 38.7%는 기관 이용을 보완하여 이용하며, 31.2%은 부모양육을 지원하고, 5.4%는 조부모 등 친인척 보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연령구분별로는 영아는 비혈연단독 31.0%, 부모 양육 지원 35.7%, 기관 이용 보완 23.8%, 조부모 등 친인척 보육 보완 9.5% 등 이유가 다양한 반면에 유아는 86.2%가 기관 이용 보완이고 그 이외 이유는 소수이다. 초등학생 중 저학년은 부모 양육 지원 33.3%보다 비혈연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58.3%로 높은 반면, 고학년은 비혈연 단독이용 30.0%보다 부모양육 지원 비율 70.0%로 2배 이상 높아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차이가 크다(<표 2-13> 참조).

〈표 2-13〉 기관이나 다른 개인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단위: %(명))

구 분	비혈연 단독	반일제이상 기관이용 보완	조부모·친인척 보육 보완	부모 양육 지원	계(수)
전체	24.7	38.7	5.4	31.2	100.0(93)
영아	31.0	23.8	9.5	35.7	100.0(42)
유아	-	86.2	3.4	10.3	100.0(29)
초등저학년	58.3	8.3	-	33.3	100.0(12)
초등고학년	30.0	-	-	70.0	100.0(10)

### (4) 일수 및 시간

비혈연인이 아동을 돌보는 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주 5일이 51.1%로 가장 많다. 아동연령별로는 영아는 불규칙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 주당 평균 시간은 35.1시간으로 영아 45.9시간으로 가장 길고, 유아는 23.2시간으로 초등학생 약 30시간보다 적다. 2004년 조사결과에서도 주당 평균 시간은 40.6시간으로 유아보다 영아의 주당 평균 시간이 길다. 시간분포로는 최소 1시간부터 최대는 144시간이다(<표 2-14> 참조).

〈표 2-14〉 아동의 연령별 일주일 동안 아이를 맡기는 형태 및 평균 돌보는 시간

(단위: %(명), 시간)

구 분	분포							돌보는 시간			
	월~일	월~토	월~금	주 2~3회	불규칙적	기타	계(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2	28.7	51.1	11.7	5.3	0.3	100.0(94)	35.1	30.0	40.6	17.5
영아	4.7	32.6	51.2	11.6	-	0.2	100.0(43)	45.9	32.8	45.1	16.7
유아	3.4	20.7	51.7	13.8	10.3	0.3	100.0(29)	23.2	22.2	30.5	16.9
초등저학년	-	33.3	50.0	8.3	8.3	0.3	100.0(12)	30.8	29.9	45.3	12.8
초등고학년	-	30.0	50.0	10.0	10.0	0.4	100.0(10)	29.6	25.6	48.0	0.0
F								3.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함.

(5) 장소

비혈연인이 아동을 돌봐주는 장소는 아이 집 70.0%, 돌보는 사람의 집 30.0%이다. 아동의 연령구분별로는 돌보는 사람의 집인 경우는 영아 29.3%, 유아 37.9%이고, 취학아동은 저학년과 고학년이 각각 18.2%, 22.2%로 유아가 가장 높은 비율이다. 혈연과 마찬가지로 2004년 조사결과에 비해 돌보는 사람의 집 비율이 낮아졌다(〈표 2-15〉 참조).

〈표 2-15〉 아동연령별 주로 돌보는 장소

(단위: %(명))

구 분	아이 집	돌보는 사람 집	계(수)
전체	70.0	30.0	100.0(90)
영아	70.7	29.3	100.0(41)
유아	62.1	37.9	100.0(29)
초등저학년	81.8	18.2	100.0(11)
초등고학년	77.8	22.2	100.0( 9)
2004년 조사	44.8	55.2	100.0(58)

(6) 비용 지불여부 및 비용

비혈연인에게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82.6%로, 대부분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아동은 정기적으로 지불하거나 지불하지 않기도 하지만, 미취학아동 중 영아는 대부분인 97.6%가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유아는 79.3%가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그 외 부정기적으로 지불하거나 현물을 지급하며 10.3%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 제공자별로는 아이돌보미와 베이비시터는 모두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지불 안하는 경우는 파출부·가사도우미가 가장 많다(<표 2-16> 참조).

〈표 2-16〉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 지불 여부

(단위: %(명))

구 분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연령구분별	82.6	3.3	1.1	13.0	100.0(92)
영아	97.6	2.4	-	-	100.0(42)
유아	79.3	6.9	3.4	10.3	100.0(29)
초등저학년	63.6	-	-	36.4	100.0(11)
초등고학년	50.0	-	-	50.0	100.0(10)
제공자					
동거 비혈연	84.6	-	-	15.4	100.0(13)
아이돌보미	100.0	-	-	-	100.0( 5)
베이비시터	100.0	-	-	-	100.0( 6)
가정보육교사	75.0	-	-	25.0	100.0( 4)
파출부·가사도우미	65.0	-	-	35.0	100.0(33)
이웃보육모	84.8	6.1	3.0	6.1	100.0(20)
기타	90.0	-	-	10.0	100.0(10)

주: 빈도수 분표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비용 지불시 금액은 전체 평균 449,900원으로 조사되었다. 표준편차는 329,300 원 수준이다.<sup>5)</sup> 분포로 보면 10만원 미만이 22.5%이고 10만 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3.7%,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이 7.4%, 30~39만원 8.8%, 40~49만원이 15.0%이며 50~59만원이 8.8%, 70만 원 이상은 27.6%이다.

5) 최소 2만원이고 최대는 100만원 이상임.

26 「자녀돌봄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서비스 제공자별로 월 평균 비용을 구분해 보면, 동거비혈연 739,100원, 베이비시터 743,700원으로 가장 비싸다. 이 경우 표준편차가 28만~29만원으로 커서 개인 간의 차이는 큼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가정보육교사가 648,900원이고, 파출부 558,400원, 이웃 보육모 387,500원으로 추정되었다. 분포상으로 보면 베이비시터를 쓰는 경우 83.3%가 70만 원 이상으로 조사되었다(<표 2-17> 참조). 이러한 비용의 개인 차이는 이용시간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표 2-17〉 (지불하는 경우) 지불금액 평균 액수

(단위: %(명), 천원)

구 분	동거비혈연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가정보육교사	파출부가사도우미
평균	739.1	130.1	743.7	648.9	558.4
표준편차	289.3	109.8	279.9	192.9	360
최저	400	54	108	550	50
최고	1300	294	1000	882	1300

아동연령구분별로는 영아가 평균 554,600원으로 유아나 초등학생 30만원대보다 20만원 이상이 비싸다(<표 2-18> 참조).

〈표 2-18〉 아동 연령별 지불하는 경우, 평균 액수

(단위: 천원(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449.9	329.3	20	1,300	(79)
영아	554.6	345.6	20	1,300	(42)
유아	336.9	294.2	20	1,000	(26)
초등저학년	339.4	182.1	50	650	( 7)
초등고학년	300.0	278.3	40	800	( 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함.

(7)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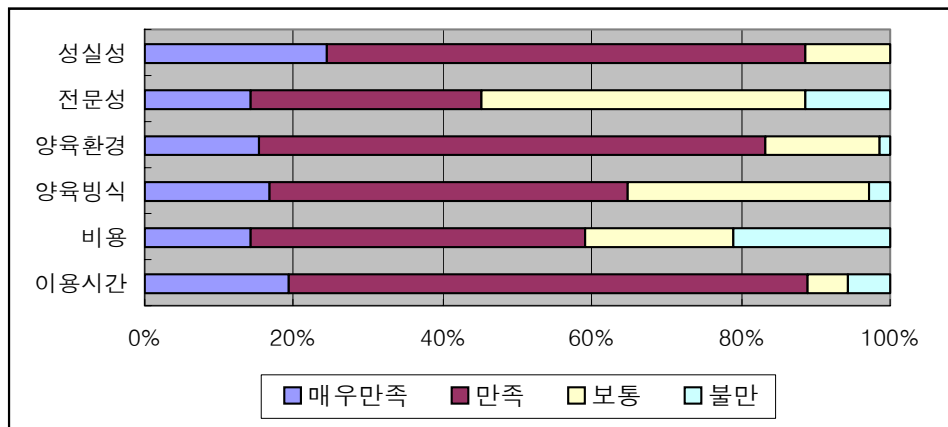
비혈연인에 의한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만족도는 성실성 88.9%, 이용시간 87.0%, 양육환경 74.2%로 매우 높고, 비용 만족도는 62.0%이며 양육방식 만족도

는 58.1%,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42.9%로 만족도가 떨어진다. 5점 척도로도 성실성이 4.2점으로 가장 높고, 이용시간이 4.0점이며, 양육환경과 양육방식이 각각 3.9점, 3.7점이고, 비용과 전문성은 각각 3.5점, 3.4점이다.

〈표 2-19〉 영유아를 돌보는 비혈연인의 양육지원 항목별 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 척도
이용시간	2.8	2.8	5.6	69.4	19.4	100.0(72)	4.1
비용	4.2	16.9	19.7	45.1	14.1	100.0(71)	3.5
양육방식	-	2.8	32.4	47.9	16.9	100.0(71)	3.8
양육환경	-	1.4	15.3	68.1	15.3	100.0(72)	4.0
전문성	-	11.3	43.7	31.0	14.1	100.0(71)	3.5
성실성	-	-	11.4	64.3	24.3	100.0(70)	4.1



[그림 2-2] 영유아 비혈연인 서비스 만족도



## II. 국내 보육시설 이용의 현황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아동단위로 보육 및 유아교육 등 각종 서비스 이용비율을 중심으로 이용실태와 자녀의 주 양육자 및 관련 의견 조사 자료를 제시하였다.

### 1.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보육·교육 서비스로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이상 학원, 일반학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기관, 문화센터 등의 사설기관 등 9개 기관과 동거 및 비동거 조부모, 동거 및 비동거 친인척 등 4가지 유형의 혈연과 탁아모, 베이비시터와 같은 육아전문과건 인력과 파출부와 같은 기타 비혈연 인력 등 아동이 이용가능한 모든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을 제시하였다<sup>6)</sup>.

#### 1) 이용하는 기관 및 개인 서비스

##### (1) 영유아

미취학아동이 이용하는 기관과 개인서비스 중복이용 여부를 나타내는데, 미취학 아동의 49.9%는 기관만 다니고 16.3%는 기관과 개인을 모두 이용하며, 9.5%는 개인서비스만 이용하며 24.3%는 아무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용은 영아와 유아의 큰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개인서비스만 이용한다는 비율이 영아 17.1%, 유아 0.8%이고, 미이용도 영아는 42.9%, 유아 3.6%이다.

---

6) 반일제이상 학원과 일반학원의 차이는 전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이용시간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유사한 학원을 의미하며, 일반학원은 피아노나 미술처럼 특정한 내용을 배우기 위하여 주로 시간제로 이용하는 학원임. 동일한 하나의 학원에서 대상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은 이용자 관점에서의 구분임.

〈표 2-20〉 영유아 연령별 양육지원 기관 및 개인서비스 중복 이용

(단: %(명))

구분	영유아 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기관	29.4	72.8	8.0	32.3	52.5	71.7	72.7	74.2	49.9
기관+개인	10.6	22.8	2.6	12.0	18.8	19.8	23.6	24.6	16.3
개인서비스	17.1	0.8	26.9	14.9	7.5	1.7	0.4	0.4	9.5
미이용	42.9	3.6	62.5	40.8	21.2	6.8	3.3	0.8	2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43)	(1,560)	(640)	(576)	(528)	(515)	(512)	(531)	(3,302)

## (2) 초등학생

초등학생은 75.9%는 기관만 이용하고, 13.6%는 기관과 개인을 모두 이용하고, 1.3%는 개인서비스만 이용하며 9.3%는 아무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다. 개인서비스와 기관서비스 중복 이용 비율에서 학년이 높아지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특기교육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2-21〉 초등학생 학년별 양육지원 기관 및 개인서비스 중복 이용

(단위: %(명))

구분	학년구분		학년						전체
	저학년	고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기관	73.6	77.8	70.0	75.1	75.4	77.2	77.8	78.3	75.9
기관+개인	16.4	11.2	17.4	16.1	15.8	12.2	12.4	9.1	13.6
개인서비스	1.6	0.9	1.5	1.7	1.6	1.2	1.1	0.5	1.3
미이용	8.4	10.1	11.1	7.1	7.2	9.4	8.7	12.0	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929)	(2,223)	(587)	(635)	(707)	(762)	(702)	(758)	(4,151)

## 2) 연령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 (1) 영유아

1월 1일을 기준으로 환산한 연령별 영유아의 기관 이용률을 보면 보육시설 41.3%, 유치원 19.4%, 선교원 0.6%, 반일제이상 학원 2.3%, 일반학원 6.6%로 조

사되었다. 개인서비스는 동거조부모 9.1%, 비동거조부모 12.8%, 비혈연은 2.4%로 조사되었다.<sup>7)</sup>

〈표 2-22〉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단위: %(명))

구 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기관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33.5	49.9	8.2	30.5	61.9	60.6	49.2	39.5	41.3
유치원	0.5	39.4	-	-	1.7	23.6	40.6	53.8	19.4
선교원	0.1	1.0	-	-	0.2	1.4	1.2	0.8	0.6
반일제이상 학원	0.1	4.5	-	0.2	0.2	4.3	5.1	4.2	2.3
특기 및 보습 학원	0.2	13.5	-	0.3	0.4	3.1	9.6	27.1	6.6
지역아동센터 등	0.3	1.2	-	0.2	0.8	0.6	1.0	2.1	0.8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8.5	4.4	4.1	13.3	7.8	3.9	5.1	4.2	6.5
개인 양육지원	27.7	23.6	31.3	26.9	26.4	21.5	24.0	24.9	25.8
동거 조부모	9.8	8.0	10.1	9.8	10.1	7.8	7.8	8.7	9.1
비동거 조부모	13.8	11.4	16.3	13.3	12.1	11.5	12.0	11.7	12.8
동거 친인척	0.5	0.7	0.4	0.5	0.4	0.2	1.0	0.8	0.5
비동거 친인척	2.0	1.8	1.7	1.4	2.7	0.8	2.5	1.9	1.8
동거 비혈연	0.3	0.1	0.7	0.3	-	0.4	0.2	-	0.3
육아전문파견인력	0.5	0.2	0.9	0.2	0.6	0.2	0.2	0.2	0.4
기타 비혈연	1.6	1.5	1.9	2.1	1.1	1.0	1.2	2.9	1.7
(수)	(1,744)	(1,559)	(535)	(576)	(528)	(516)	(512)	(523)	(3,179)

주: 중복응답 결과임. 0세아의 경우 2009년 출생아는 제외함.

영아를 보면 기관서비스는 보육시설 33.5%이고, 비공식 보육이 27.7%로 기관 이용률이 높다. 혈연의 경우 조부모는 동거조부모 9.8%, 비동거 조부모 13.8%로 모두 23.6%로 보육시설보다는 낮다. 그러나 0세아는 여전히 조부모 등 비공식 서비스 이용비율이 31.3%로 보육시설 이용률 8% 수준보다는 훨씬 높다. 친인척

7) 전반적으로 2004년 조사에 비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제도권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선교원이나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은 크게 감소하였음. 이는 과거 선교원이나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비용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비용보다 낮았음에 비추어 볼 때 2004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과 수준 확대<sup>1)</sup>로 인하여 제도권 기관으로 이동한 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음.

은 동거 친인척 0.5%, 비동거 친인척 2.0%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비혈연으로는 육아전문과건인력이 0.5%이고 기타 1.6%로 모두 2.1%이다. 유아는 기관 이용률이 보육시설 49.9%, 유치원 39.4%, 선교원 1.0%, 반일제이상 학원 4.5% 일반학원 13.5%로 조사되었다. 혈연은 동거조부모 8.0% 비동거조부모 11.4%이고 비혈연은 1.8%이다.

## (2) 초등학생

초등학생은 학원 이용률이 72.5%이고, 초등학교 방과후 38.7%이다. 혈연은 동거조부모 7.7%, 비동거 조부모 5.2%로 조사되었다. 동거조부모의 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동거조부모는 비율이 낮아진다(표 2-23 참조). 특히 1학년은 그 이후 학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1.9%,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6.0%라는 점이다.

〈표 2-23〉 초등학생 아동구분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명))

구 분	학년구분		학년						전체
	초저	초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기관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등	1.1	0.3	1.9	1.0	0.6	0.5	0.4	0.1	0.7
특기및 보습학원	72.0	72.9	66.6	72.9	75.7	74.1	73.1	71.4	72.5
초등학교 방과후보육	4.0	0.9	6.0	4.6	2.0	1.3	1.0	0.5	2.4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40.1	37.6	36.2	44.6	39.2	38.6	40.0	34.3	38.7
지역아동센터 등	7.0	6.3	7.7	7.4	6.2	7.5	7.4	4.2	6.7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4.2	3.5	4.3	3.6	4.7	3.0	3.0	4.4	3.8
개인 양육지원									
동거 조부모	8.1	7.2	7.1	8.5	8.6	7.2	8.1	6.5	7.7
비동거 조부모	7.2	3.5	6.8	7.7	7.1	4.2	4.1	2.2	5.2
동거 친인척	0.6	0.3	1.2	0.2	0.4	0.1	0.4	0.1	0.4
비동거 친인척	1.6	0.7	3.2	0.8	1.1	1.3	0.1	0.5	1.1
동거 비혈연	0.2	-	0.2	0.3	0.1	-	0.1	-	0.1
기타 비혈연	0.4	0.4	0.3	0.5	0.3	0.5	0.4	0.1	0.4
(수)	(1,929)	(2,223)	(588)	(635)	(707)	(762)	(703)	(759)	(4,154)

주: 중복응답 결과임. 선교원과 육아전문과건인력은 응답자가 없어서 삭제함.

제3장

---

가정 내 양육지원에 대한  
외국의 법제 및 사례

보육의 유형은 시설보육과 가정보육으로 분류할 수 있고, 가정보육은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소규모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family child care providers)와 보육제공자가 아동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in-home caregivers)로 나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프랑스, 미국, 일본, 호주의 보육정책 개요와 가정 내 보육을 중심으로 가정보육에 대한 정책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프랑스

### 1) 보육정책 개요

교육의 기회평등, 자유존중 이념을 근거로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원칙하에 국가가 그 주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에 임신 초기부터 아동과 가족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과 직·간접지원제도, 정부가 모든 보육과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공교육제도를 운영한다.

행정적으로 연령에 따라 3세 이상 교육체제와 3세 미만 복지체제로 분리되어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육시설(Creches)은 3개월부터 만 3세까지, 모성학교(Ecole Maternelle)는 2년 3개월부터 6세 이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2~3세 아동은 두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모성학교도 대부분 종일제로 운영되며 무상으로 보호와 교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아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제도화된 보편적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만 3세 이상 유아의 모성학교 취원율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 한편 보육정책은 1994년 가족법 개정 이후 보육정책에서는 공보육서비스 제공보다는 보육의 개별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전되었다. 민간보육서비스로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양적으로 증가시킴과 동시에,<sup>8)</sup> 수당제공과 세금감면제도 등 양육비용

8) 1983년 이후 건축재정과 실업률 증가로 집단보육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불규칙한 시간대의 파트타임 노동을 하는 어머니

보상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개별화된 보육(individualised childcare)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시설보육 대상 연령 하향화 추세로 영아 보육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유아는 공교육이 담당하고, 3개월 이상 2세 이하 아동은 약 36% 정도가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들 영아의 8%는 보육시설(Crèches)을 이용하고 4% 정도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돌보며, 6%는 기타 인력, 나머지 64%는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 영아는 다수는 부모가 돌보지만 그 이외 대리양육이 필요한 아동 중 약 1/2은 가정보육이 담당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도 교육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보육은 노동복지부(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é) 관할이며,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제반 업무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지역의 사회보건국(DDASS: Direction Departemental des Affaires Sanitaires Sociales)에서 관장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보육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나 운영 전반에 걸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육시설은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주간에 보육하는 대표적인 보육 유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거나 병원,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집단보육시설(crèche collective)이 있고, 가정보육시설(crèche familiale)은 보육대상은 6세 미만의 영유아이지만 일반적으로 생후 2개월에서 3세를 보육하며 시간제 보육(halte-garderie)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협동보육(crèche parentale)은 영아 약 20명 정도를 보육하는 소규모의 보육 유형으로 부모가 조직·관리한다. 시간제 보육(halte-garderie)은 영유아를 간헐적으로 보육하는 기관으로 관리하는 지역 관할 당국에서 하지만 운영은 협회에서 담당한다.

---

니의 자녀들에 대한 카드제(acceuil a la carte) 도입 및 보육계약(contrat creche), 아동 계약(contrat enfance), 응급보육(acceuil d'urgence) 등 보육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대안들이었음(장혜경 외, 2002).

보육시설 설립은 공립, 사립 모두 지방자치단체인 도의회에서 설립인가를 담당한다. 또한 모자보건국(PMI)에서 지역사회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데 각 시마다 분포되어있는 모자보건국(PMI) 소속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등 보육아동의 연령과 발달단계에 적합한 시설 및 공간정도를 평가한다.

프랑스의 보육교사에는 육아전문가(puéricultrice), 준 육아전문가(auxiliaires de puériculture), 유아교사, 영유아보육교사 등 여러 범주의 교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원 양성 체제도 조금씩 다르다.

프랑스의 보육료 지원 체계는 크게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지원되는 보육료지원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경우 개별화된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만 3세 이상의 유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상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 3세 이상의 취학 전 유아에 대한 100%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 3세 미만의 영아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공공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육비는 부모의 소득원과 아동의 수에 비례하여 가족수당 회계 창구 (CAF)에서 결정되어 나오고 이 금액에서 25%의 세금 감면을 해주고 있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가정의 소득이 적을수록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감소하게 된다.

## 2) 가정보육

### (1) 관련 법규

프랑스는 가정보육을 제도화하고 있다. 가족·사회부조법전(le code de la famille et de l'aide sociale) 제123-1조에서는 보수를 목적으로(moyennant rémunération) 특정 사인(des particuliers) 또는 사법상의 법인(d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으로부터 위탁된 아동(des mineurs)을 자신의 주거에서 통상적으로 맡아 돌보는 사람인 가정보육모(assistantes maternelles)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노동법전 제7권 제 7편 공동주택의 수위·고용원, 가사사용인,



가정보육모(Concierges et employés d'immeubles à usage d'habitation, employés de maison, assistantes maternelles) 에서 가정내 보육 제공자를 근로자로 보호하고 있다. 특정 私人에 의해 고용되어 가사(travaux domestiques)에 종사하는 자는 가사사용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을 두고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데크레로 정하고 있다.

## (2) 가정보육모의 개요

가정보육제도는 가정보육모에 관한 법 제92-642호, 1조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가정보육모가 자신의 집에서 2~3명의 유아들을 개별적으로 돌보는 제도이다. 보육아동의 수는 3명을 넘을 수 없으며, 만일 3명을 넘게 되면 해당 시·도 의회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 가정보육모는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30명의 가정보육모를 두고 운영하는 가정보육원이나 부모에 고용되어 일할 수 있다.

## (3) 가정보육모의 자격 관리

### 가) 가정보육모 자격

가정보육모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département)로부터 가정보육모라는 국가 수준의 인정(agrément)을 받아야 한다. 가정보육모의 자격인정 및 관리는 공중보건법(제L.2111-1)에 의하여 시·도 모자보건국(PMI)에서 담당한다. 모자보건국(PMI)은 시·도 의회장의 권한 아래 가정보육모의 자격인증, 관리 및 감독, 보수교육 등을 담당하고 이외에도 6세 이하의 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가정보육모 자격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에는 가족상황, 물리적·환경적 조건, 이전 직업, 학력, 아동들과 함께 했던 교육적 활동이나 기타 활동, 희망하는 보육 유형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반드시 건강검진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가정보육모의 자격인정기간이 5년이므로 5년마다 자격 갱신지원서와 신체검

사서, 그리고 보수교육증명서를 제출하고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자격 인정 이후에도 보육아동 수나 연령 변경 및 거주지 주소가 바뀌었을 때 모자보건국에 신고해야 한다.

#### 나) 보수교육 및 사후관리

가정보육모 보수교육은 보육모의 유형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된다. 비항시적 보육모의 경우 총 6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고, 항시적 보육모는 총 12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는다. 총 보수교육시간 중 20시간은 자격인증 후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항시적 보육모 중 육아전문가, 유아전문교사, 특수아동대상 육아전문가 자격 증소지자는 120시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비항시적 보육모 자격인증자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약 2년 정도 영유아기 아동 관련 학업 이수자는 60시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시·도 당국은 가정보육모들이 교육받는 동안 이들이 담당하고 있던 아동을 다른 보육제공자가 대신 보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비항시적 가정보육모는 자격인증담당기관인 모자보건국에서 사후관리 및 감독 한다. 독립적으로 고용된 가정보육모의 사후관리는 모자보건국의 주관으로 육아전문가, 소아과 의사, 사회 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매년마다 보육모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감독한다. 항시적 유형의 가정보육은 시·도의 의회에서 결정되는 아동기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임무(aide sociale à l'enfance) 차원에서 사후관리된다.

#### 다) 가정보육모에 대한 처우

가정보육모 중 비항시적 보육모는 월 1회 기준으로, 항시적 보육모는 노동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중심으로 급여를 받는다.

가정보육모는 기본임금 이외에 초과근무 수당 및 몇 가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동결석수당과 한시적 실업수당이다.<sup>9)</sup> 가정보육모는 프랑

9)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이 결석하는 날 가정보육모는 1일 최저임금(6.67유로)의 반을 받음(노동법 제 I.773-5). 이는 최저임금의 1.125배에 해당됨. 한시적으로 보육할 아동이 없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상수당이 마련되어 있음(1992년 7월 12일 법 제13조).

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 중의 한 명으로 기본적으로 의료, 퇴직, 직업병, 실업 등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가정보육모는 유급휴가와 법정공휴일, 가족 필요에 의한 휴가 도 보장받는다.

### 3) 개별 보육 지원

프랑스의 개별보육에 대한 지원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자녀출산 이후 3년간 부모 중 한 사람이 취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경우 그 조건에 따라서 양육수당(APE)을 차등지급하고, 등록된 자격인증 보육사가 운영하거나 혹은 등록보육모가 고용되어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제도(AFEAMA)가 있으며, 아동의 가정에서 보육사를 직접 고용하여 개별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일정액의 현금지원<sup>10)</sup>과 세제혜택(tax credit)을 제공하는 가정 내 보육수당(AGED)이 있다.<sup>11)</sup>

〈표 3-1〉 프랑스의 가정 내 보육서비스 지원

구분	대상 아동연령	사업내용
양육수당(APE)	6세미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징: 아동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감축한 경우</li> <li>• 급여조건: 노동시간 감축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지급</li> </ul>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제도(AFEAMA)	6세미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징: 보육모 자신의 집이나 등록보육모가 고용되어 있는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서비스 이용</li> <li>• 급여조건: 사회보장기여금의 일부를 충당해 줌</li> </ul>
가정보육수당(AGED)	6세미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징: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 제공</li> <li>• 급여조건: 보육비용의 50%를 지급. 보육사의 사회보장기여금 일부 지급</li> </ul>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가 가정 내 보육서비스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고, 특히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파견서비스가 본 연구의 주제와 가장 근접한다.

10)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사회보장기여금 일부를 지원함.

11) 양육수당(APE)은 1985년, 가정내 보육수당(AGED)은 1987년, 등록보육사고용지원제도(AFEAMA)는 1990년에 각각 도입되었음(Martin, et al. 1998).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제도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1990년 도입된 제도로, 제도의 핵심은 등록된 보육모(licensed childminder)로 구성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족수당기금(CNAF)에서 보육교사의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회보장분담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때 보육교사는 6세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교사로서, 가족사회지원법(Family and Social Assistance Code)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Fagnani, 2004).

등록보육모 고용지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 연령이 6세 미만이어야 하며, 등록보육모는 해당 시·도의회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지급액이 일일단위로 환산할 때 일정 기준이하이어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의 5배 정도이다. 조건이 만족될 경우 등록보육모 고용 가정은 가족수당기금(CAF)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회보장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분담금을 보조받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다. 사회복지분담금의 경우는 각 가정을 거치지 않고 가족수당기금에서 징수처(URSSAP)로 직접 지불되고,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수당의 경우는 각 가정으로 입금된다. 액수는 영유아 여부와 가계수입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3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된다.

등록보육모에 대한 고용지원수당 지급제도 도입으로 등록보육모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자격 취득자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보육모라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다는 고용정책 측면이 있고, 한편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일정 부분 개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가정 내 보육수당(allocation de garde d'enfant à domicile, AGED)은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1987년 도입된 것으로 개별가정에서 보육모(personal caregiver)를 고용할 경우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개별가정에 6세미만의 아동이 있어야 하며, 부모가 모두 취업한 맞벌이가정에 적용된다. 수당은 그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했을 때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보육모의 사회보장기여금의 일부를 충당하는

수준이다. 급여지급은 소득수준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또한 1992년부터는 가정에서 보육사를 고용하는 경우 “가족고용” 세금감면제도가 새로 생겨서, 개별가족이 지출하는 보육비용의 5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수당제도의 문제점은 개별적으로 보육모를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며, 또한 세금감면을 받을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소득계층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제도권 내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역진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Letablier, 2003).

## 2. 호주

### 1) 보육 정책 개요

호주 보육정책은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 민간 중심의 공급, 파견 보육서비스의 제도화, 부모보조금 지원 등의 특성을 갖는다.

보육서비스는 인가보육과 등록보육이 있다. 인가보육은 드종일제보육, 가정보육, 방과 후 보육, 가정 내 방문보육 등에서 제공되고, 등록보육은 친인척, 이웃모 등에 의한 개별적 보육이다. 종일제 보육시설(Long Day Care Centers)은 0세~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시설로서 하루에 8시간 이상, 주5일, 연간 48주 운영한다. 73% 정도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공급되며, 영리목적의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보육(Family Day Care)은 가정보육모가 통상 자기 집에서 5~6명의 아동을 돌보는 것으로서 종일제를 원칙으로 하며 많게는 100명으로 구성된 가정보육센터(Scheme)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가정보육센터(Scheme)는 가정보육모의 채용, 훈련, 지원 및 활동 평가를 하고 보호자에게는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하며, 보호자들이 적절한 보육모를 정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한다. 가정보육모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방 FDC조정국(coordination units)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외 방과 후 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 OSHC), 일시보육센터(Occasional Care Centers), 탄력적 서비스(flexible services), 이동보육(mobile services) 등이 있다.

본 연구 주제와 유사한 서비스인 가정 내 방문보육(In-Home Care)은 0세~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제공자가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보육하는 것이다. 주로 농촌·산간지역에 살거나, 아동이 쌍둥이거나, 또는 경찰, 소방관, 간호사, 의사 등 부모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할 때에 한정하여 활용된다. 부모나 아동이 불치병을 갖고 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가정 내 보육센터(Scheme)의 관리를 받으며 방문교사는 응급처치 자격이 있어야 한다.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호주에서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Pre-schools)은 만3세~5세 아동을 대상으로 9:00~15:00까지 운영되며 방학기간 중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종일제 또는 반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유치원 또는 예비초등학교(pre-primary)로 불린다. 학교별로 운영시간, 아동의 연령 등에 있어 차이가 많으며, 조사에 의하면 예비학교는 주로 3세~4세 아동(특히 4세)이 많이 이용한다.

보육료는 학교부설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자율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1년 교육은 무상교육이다. 종일제보육센터, 가정보육, 방과 후 보육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으로 국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 사업주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가 권장되었으며, 이는 ILO협약 156에 따른 의무사항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는 종일제보육센터 또는 가정보육에 위탁하기도 한다.

## 2) 보육비용 지원

보육비용 지원은 시설 지원보다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며, 보호자에 대한 지원은 2000년 7월부터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CCB)로 일원화되었다. 보호자에 대한 지원은 소득, 재산, 취업유무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소득이 많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설에 대한 직접지원은 가정보육 및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설치비, 장비비, 장애아보육 등에 제공되며 그 액수는 미미하다.

CCB의 지원수준은 연간소득, 재산, 보육의 유형 및 시간, 보호자의 취업여부, 보육에 대한 필요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시설보육과 개인에 의한 등록보육에 모

44 「자녀돌봄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두 지원한다. 보육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인가보육(approved care)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CCB를 받을 수 있다. 조부모, 친척, 친구, 이웃, 가정부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등록보육(registered care) 제공자는 가족지원국(Family Assistance Office)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부모가 보육제공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부모는 요건에 따라 아동 당 1주일에 20시간, 50시간, 또는 50시간 이상의 CCB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CB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매월 보육료 감면을 받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일단 보육료를 지불한 후 나중에 한꺼번에 환급을 받는 방법이다. CCB 금액<sup>12)</sup>은 최고액과 최소액을 기준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 및 보육시간, 아동의 취학여부,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등에 따라 정해진다.

〈표 3-2〉 호주의 CCB 자격요건

구 분	요 건
20시간의 C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무조건 20시간의 CCB를 받을 수 있다. 부모 소득, 아동의 연령, 보육시설 이용시간 등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최소 급여.</li> </ul>
50시간의 C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고 다음 요건에 합치할 경우 50시간의 CCB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을 위한 Carer Allowance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지불하는 정부지원)를 받는 경우</li> <li>- 보호자가 일하는 경우 (풀타임, 파트타임, 비정규직, 자영업,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자원 봉사, 직업훈련, 유급휴가, 무급병가, 육아휴직 등)</li> <li>- 보호자가 일하거나 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는 경우 (방학 포함)</li> <li>-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중인 경우</li> <li>- 기타(장애를 갖고 있거나 또는 장애아/인을 돌볼 경우)</li> </ul> </li> <li>•매달 보육료 감면을 받는 경우에만 한정(환급의 경우 제외)하며, 보호자 모두 근로, 공부, 훈련 등으로 아동을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보육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제공</li> </ul>

12) CCB 금액은 일주일 기준이며, \$는 호주달러를 의미함.

### 3) 가정보육제도

#### (1) 개요

현재 호주의 아동보육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이 중에서 가정보육모는 가정보육(Family Child Care)과 가정 내 보육(In-Home Child Care)을 담당하는 보육모를 의미한다. 가정보육은 등록된 보육모의 집에서 이들 아동에게 양육을 제공하는 형태로, 주로 지역 위원회나 비영리 지역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가정보육조정기구(Family Care Coordination Unit)를 통하여 관리된다. 가정보육 제공자는 가정보육의 중앙 조정단위가 제공하는 지원, 자료, 모니터링을 받는 인가된 보육모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조정 단위를 종전에는 정부나 비영리단체로 제한하였으나 2001년부터 민간 영리 단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가정 내 보육은 아동의 가정에서 승인된 보육모가 양육을 제공하는 형태로서, 2001년 1월 1일부터 특정 조건 하에서 제도적으로 보호받는다. 즉, 부모나 또는 자녀가 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 농촌이나 매우 먼 거리에 살고 있는 가족, 부모가 교대 근무를 하거나 정상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일하는 가족,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 있거나 2명 이상의 쌍둥이 자녀가 있는 가족, 집에서 일하면서 모유를 먹이고 있는 어머니가 있는 가족 등 일반 보육서비스로는 보육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가족을 위한 보육 등이다. 가정 내 보육은 종일제 보육센터, 비영리 지역사회단체, 주나 지역정부, 종교나 자선단체, 자선이 목적인 재단, 사립 영리 기관 등이 관리자 역할을 한다.

#### (2) 가정보육모 자격 및 관리

호주의 가정보육모의 자격기준은 각 주마다 다양하지만 모든 지역에서는 ‘응급처치자격증’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가정보육모를 위한 형식적 훈련은 직업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해 받는 자격증은 지역사회서비스에서의 자격증Ⅱ(CertificateⅡ in Community Services, Children’s Services), 자격증Ⅲ(Certificate Ⅲ), 자격증Ⅳ(Certificate Ⅳ), 증서(Diploma), 고급증서(Advanced Diploma) 등 이다. 이러한 자격들은 가정보육 특성에 중점을 두며 고급증서는 전문가 기술에 중점을 둔다.



가정보육의 경우 정규 근무시간에 1일 최대 8시간, 1년 최대 48주의 가정보육을 제공해야 하지만, 위험가능성이 있는 아동이나 부모의 일과 관련하여 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추가되는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분의 주와 지방 정부는 가정보육서비스에 관한 법령과 허가요구사항으로 보육모가 돌보아야 하는 아동 수, 보육모 자격요건, 건강과 안전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허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편으로 1997년에 연방정부와 주·영토 정부는 협력하여 가정보육에 대한 국가기준(National Standard for Family Day Care)을 마련하였는데, 이러한 기준은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하고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서비스에 재정을 지원하고자 할 때 연방이나 주정부 등은 국가기준의 수행을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국가기준은 설비, 건강과 안전, 프로그램 과정, 행정기능, 보육제공자, 조정기구 관리 및 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1 참조).

### (3) 가정보육모 처우 및 지원

가정보육모는 대부분의 주나 테리토리에서 개별 고용된 것으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보상은 없고 호주 서비스 조합(The Australian Services Union; ASU)에서 보상을 받는다.

## 4) 가정보육비용 지원

가정보육을 받고 있는 가정은 기관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가정과 마찬가지로 『가족지원법』(1999) 규정에 의하여 연방정부로부터 아동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를 가구소득별로 차등 지원 받는다. 보육수당제도의 적용은 인가된 보육제공자(approved carer)와 등록된 보육 제공자(registered carer)<sup>13)</sup>로 나누고 있다. 가정보육은 종일보육시설, 학교 밖 보육, 방학기간 보육, 일시적 보육 시설과 마찬가지로 인가된 보육제공자로 보육료 지원을 받는다.

13) 친척이나 친구, 내니, 가정부 등 비형식적 양육의 경우는 보육모가 반드시 가족지원국(the Family Assistance Office, FAO)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함.

### 3. 일본

#### 1) 보육정책 개요

일본의 보육제도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보육 받을 권리를 규명하며, 보육의 내용은 국가가 기준을 세워 보장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3가지 원칙 하에서 발달되었다.<sup>14)</sup>

보육시설은 국가에서 운영비 전액을 보조하는 인가보육소와 인가 외 보육소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미인가보육시설로는 가정보육, 베이비호텔, 사업장보육소 등이 있다. 인가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은 아동복지법에 기반하여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sup>15)</sup>, 설치도 국가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중앙정부 예산의 86.1%가 보육시설 운영비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은 주로 인가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 인가보육시설의 경우 공립과 법인시설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된다. 공립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체제이고, 비영리법인은 위탁을 하는 형태이다. 또한 공립보육시설의 교사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취업모 중심의 선별적 보육정책을 고수하고 있는<sup>16)</sup> 사립시설은 대부분이 법인보육시설이다. 인가시설 이외에 베이비호텔, 보육실 등 인가외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외 사업소 내 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일본의 보육서비스는 저출산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발달되어온 특징을 갖는다<sup>17)</sup>. 일본에서는 저출산의 주요한 대응책으로 “보육의 국가지원”으로 진단하고 1994년 엔젤플랜을 시작으로 하여 1998년 아동복지법의 개정, 1999년 신엔젤플랜, 2003년 차세대육성계획에 이르기까지 보육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

14) 현실적으로는 국가비용부담의 원칙이 무상보육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육비용은 대략 부모 1/2, 중앙정부 1/4, 시정촌 1/8, 도도부현(우리의 시도) 1/8 정도로 분담하고 있음.

15) 시설과 보육환경에 대한 최저기준을 충족하면 인가시설이 됨.

16)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육소 입소 우선순위를 고려하기 위한 기본요인으로 출퇴근근무, 재택근무 등 부모의 취업과 개호가 필요한 가정 등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17) 일례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자녀수에 따라 보육료지원을 차등화하고 있다. 2자녀인 경우는 1/2, 3째부터는 무료로 지원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

왔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보육시설을 확대, 증축하여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고, 보육시간을 연장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시보육, 휴일보육을 확충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모색하였다.

특히 2003년 차세대육성추진법 제정이후 자녀양육에 대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대기아 제로작전, 영아보육, 야간보육, 휴일보육, 일시보육 등 특별보육의 활성화, 인가보육시설의 확대” 등이 주요과제로 추진되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육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별로 다양한 보육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즉 다양한 보육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일반적인 아동양육 기능 외에 양육지원을 위한 특별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연장보육, 장시간 연장보육, 일시보육, 영아보육, 지역양육지원사업, 보육원 지역활동사업, 장애아 보육대책 사업, 가정지원추진 보육사업, 휴일 보육사업 등이 있다.

## 2) 가정보육의 개요

일반적으로 일본의 가정보육은 보육자의 집 등에서 소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형태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으로써 요강, 규칙, 조례 등에 기초하는 제도화된 상태의 것을 의미한다. 지역에 따라서 가정복지원, 가정보육복지원, 주간위탁모, 아기홈 등으로 불린다.

이러한 가정보육제도는 1950년부터 인가보육소의 저연령아 보육을 보완하는 제도로써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실제로 가정보육 이용 아동을 보면 출산휴가 종료 후인 생후 6~8주간 동안이 가장 많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보육의 약 3/4이 ‘3세 미만’까지 받고 있으며, ‘3세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는 약 10%이다.

가정에서 소수의 아동을 돌보는 보육형태를 말하며, 보육하는 사람을 가정보육모라고 부른다. 보육시설에서의 영아보육이 부족하고, 입소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급되어 왔다. 영아를 시설보육이 아니라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르고 싶어하는 보호자들, 특히 영아보육을 위한 선택으로 널리 활용된다.

가정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후생노동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① 자격은 보육사 또는 간호사이며, ② 보육자의 자택에 전용 보육실을 설치할 것, ③ 보육하는 아동은 3명 이하일 것, ④ 보육시간은 9시간으로 연장보육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 ⑤ 보육시설과 연계를 가질 것이다.

또한 가정보육모와 연계되어 있는 보육시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① 가정보육모의 등록을 받고, ② 가정보육모 신청 대행을 실시하고, ③ 시·정·촌이 보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가정보육모를 알선하고, ④ 가정보육모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⑤ 가정보육모가 휴가를 내는 등의 경우에 대신해서 보육을 실시한다.

가정보육모로 인정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후생노동성의「실시요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정보육모의 자격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가정보육모의 수입은 많지 않고<sup>18)</sup> 근로자로서의 입지도 불안정하다. 보육모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 결원 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보육모에게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30% 정도이다.

가정보육제도는 1950년부터 인가보육소의 저연령아보육을 보완하는 제도로써 주로 대도시 및 그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만들어져(上村康子·福川須美, 1998), 보육소 입소를 기다리는 저연령 대기아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1999년에는 소자녀화대책임시특례교부금의 대상사업으로써 국가차원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엔의 보조금을 받았다. 신엔젤플랜(2000~2004년)에 의하여

18) 1998년 가정보육모의 평균월수입은 10~20만엔이 약 30% 이상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20~30만엔 16%, 8~10만엔 12% 등의 순임.

2000년도에는 대기아해소의 응급책으로서 국가에 따른 가정적 보육사업의 육성·조성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당초 보육소입소대기아의 해소책으로서 실시된 가정적 보육제도는 그 실시가 계속됨에 따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아동의 상황에 따른 개별적인 배려가 가능하고, 유연한 보육형태로써 저연령보육에 바람직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단지 시설형보육의 보완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연령보육의 하나의 형태로써 가정형보육의 존속을 표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福川須美, 2000). 후생노동성은 보육소의 보완적 역할로서 「보육마마」제도를 통하여 지역의 보육소와 연계하면서 사업을 행하는 시정촌(지방자치단체)을 지원하고 있다.

### 3) 가정 내 보육

일본의 가정 내 재택보육<sup>19)</sup>은 패밀리 서포트 센터 보육, 베이비시터, 에스쿠(エスク) 및 노동청에서 지원하는 지역네트워크인 가정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를 통한 보육<sup>20)</sup> 등이 있다.

가정 내 보육은 주로 보육소나 유치원 등이 시작되기 전이나 종료 후 자녀를 돌보거나, 보육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등, 하원을 도와주거나 방과 후 아동 건전육성활동의 종료이후 아동을 돌보아 준다. 또한 자녀가 아플 때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경우나 보호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일어난 경우(간호, 질병, 관혼상제 등) 틈새시간에 자녀를 돌본다.

#### (1) 패밀리 서포트 센터(family support center)

가정 내 보육서비스의 일종으로 일본의 패밀리 서포트 센터는 육아에 대해 원

19) 일본은 가정내 보육을 재택보육으로 표기하고 있음.

20) 일본에서는 공공성을 띤 저렴한 비용의 재택 및 방문보육사업이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정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와 에스쿠(エスク)임. 가정지원센터는 노동청에서 1994년에 인구 5만 이상인 시정촌에 설치하여 아동을 맡기고자 하는 가구와 맡는 가정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네트워크로 1997년 12월 현재 전국의 24개 시에 이러한 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에스쿠는 1973년 3월 보육시설 화재사고 이후 뜻있는 여성들이 시작한 비영리 보육자 네트워크로 1997년 현재 에스쿠는 37개 현에 조직되어 있음.

조를 의뢰하고 싶은 사람과 원조를 제공하고 싶은 사람이 회원으로 등록한 후 회원들이 서로의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후생노동성에서는 Family Support Center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센터 이용방법은 육아원조를 필요로 하는 회원과 육아원조 제공회원은 모두 패밀리스포트센터의 구조와 규칙을 이해하기 위한 단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공회원은 당해 지방 내에 거주하는 자로 자택에서 자녀를 맡아 보호할 수 있는 자로서<sup>21)</sup>,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 약 18시간의 강습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 강습내용은 아동의 심리, 아동의 신체와 병, 아동의 안전과 응급처치, 상호원조활동 등에 관한 것이다. 의뢰회원은 당해 지방 내에 거주하는 생후 3개월부터 1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장소는 제공회원의 자택을 원칙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05).

육아지원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원조를 제공해 주는 회원의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른 아침이나 저녁시간대에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숙박은 하지 않는다.

이외에 보육 제도권에서 시설보육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경보육실센터의 차일드시터(child sitter)이다.<sup>22)</sup> 동경보육실센터는 동경도에 소재한 보육 관련 단체들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동경도 보육소를 회원으로 확보하여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sup>23)</sup>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새벽과 저녁 늦게 베이비시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21) 자격이나 경험, 남녀 불문.

22) 차일드시터라는 명칭은 베이비시터 회사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무자격자인 베이비시터들이 영아 및 아동들을 돌보는 것을 우려하여 보육관련 유자격자들만을 대상으로 베이비시터들 양성하면서 차별화하기 위하여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임.

23) 일본에서 보육교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후생성이 인정하는 전문학교를 졸업한 경우, 둘째는 후생성이 인정하는 학교인 단기대학에서 전공한 경우,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시험을 통하여 보육교사가 되도록 하고 있음. 국가시험은 1년에 2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음.

## (2)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베이비시터회사를 통해서 공급된다. 일본 전국베이비시터협회 자료에 의하면 2006년 현재 155개 베이비시터회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약 23,000명의 아동이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비시터 회사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은 없다. 베이비시터 회사는 규모나 환경 및 설립자의 자격요건 등 설립요건을 규정한 법이 없고, 일반 회사나 기업체 처럼 누구나 설립을 희망하는 자가 설립할 수 있다.

베이비시터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규는 없다. 일본의 노동기준법 제89조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시터회사가 회원인 일본 전국베이비시터협회(All-japan Babysitter Association)<sup>24)</sup>에서는 회원의 기본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것이 베이비시터업의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2000년도부터 베이비시터 「인정베이비시터」제도사업을 실시하여 베이비시터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베이비시터 자격인정제도사업을 보면, 베이비시터로 자격을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인 자가 신입연수과정을 수강한 연후에 3개월간 90시간 이상의 실무경험을 쌓고 현업연수과정을 거친 후 인정시험을 치고 인정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대해 인정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험은 5지 선다형 40문항, 400자 이내 기술형으로 90분간 실시된다. 이렇게 등록된 인정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자격을 다시 갱신을 해야 한다.

또한 2005년부터 「인정베이비시터 지정교」제도를 실시하여 2006년 현재 전국에 17개 대학을 인정베이비시터 자격취득 지정교로 지정하고 있다<sup>25)</sup>. 이는 협회가 지정한 대학에서 채택보육 등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보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졸업한 자 중 희망하면 희망자에게 인정베이비시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24) 이 협회는 베이비시터회사들의 협회로 1989년에 설립되어 1993년에 자주기준을 제정하였음.

25) 동경도 세다가야구에 위치한 昭和女子大學 등으로 이들 대학의 해당 정원은 1,375명이고, 적용시기가 2007년 이후 인 학교가 많아서 앞으로 자격 인정 희망자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베이비시터 이용에 대해서는 협회와 기업, 미래재단 등이 협력하여 이용권 구매를 보조하는 형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4. 독일

### 1) 양육의 사회화의 역사

독일은 이미 19세기부터 아동양육을 위한 제도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카톨릭 교회가 아동을 위탁받아 돌보는 보육시설이 설치되었고 생업노동을 하는 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였다. 19세기말 20세기 초부터는 국가가 처음으로 아동보육 시설(Kindertageseinrichtung)에 대한 구상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1922년 제국청소년복지법(Reichsjugendwohlfahrtsgesetz)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에 아동양육을 위한 책임이 구체화되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아동양육을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적 아동양육의 책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는 보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독일은 1980년대까지도 적어도 3세 미만의 아동을 모에게서 양육되는 것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요구된다는 입장이 우세하였다. 그러므로 3세 이후 유치원(Kindergarten)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3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탁아보육(Krippenbetreuung)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다. 1998년 통계에 의하면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시설은 2.8% 정도만이 충족되었는데, 사실상 필요한 수요는 약 20%에 이르렀다. 반면에 3세부터 6세까지의 유치원의 취원 가능 시설은 100%를 만족할 정도로 완비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 단계에서도 문제는 전일보육체계가 미비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전체 유치원의 약 5분의 1정도만이 전일 보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다.



## 2) 독일의 개별 양육 지원 체계

### (1) 육아휴직활성화를 통한 지원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육아휴직제도(Mutterschafts- und Elternurlaub)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은 3세 미만의 아동은 가급적이면 모에 의하여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양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에 일반적인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아동에 개별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노동시장을 조절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모성휴가제도는 가장 기초적인 지원 체계이다. 독일은 모든 여성 근로자와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에게 모성휴가를 적용한다. 전업주부와 자영업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모성휴가의 권리가 귀속되지 않는다. 모성보호법에 의하면 모성보호기간은 출산 전 6주에서 시작하여 출산 후 8주까지 -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출산 후 12주까지- 보장하고 있다. 모성지원금(Mutterschaftsgeld)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전에 근로관계에 있었거나 법률상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어야 한다. 모성지원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평균 임금이 일 13 EUR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모성지원금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모성휴가(Mutterschaftsurlaub)를 사용한 후 모는 해고금지 또는 일자리 보장 정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복귀를 보장 받는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에 의하여 보장되고 임금조정에 의하여 전액이 보장된다. 이것이 결국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모가 일정기간을 아동양육에 전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모성휴가와 구별하여야 하는 것은 교육휴가제도(Erziehungsurlaub)이다. 교육휴가제도와 교육휴가지원금(Erziehungsgeld)은 1986년 도입된 연방교육지원금법(Bundeserziehungsgeldgesetz)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육휴가제도는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부모가 아동을 스스로 양육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2001년 새로이 개정된 연방교육지원법(Bundeserziehungsgesetz)은 이것을 부모휴가(Elternzeit)로 명명했고, 근로중인 부모와 교육과정에 있는 부모 모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가능한 기간은 최대 3년까지이다. 부모휴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늦어도 시작하기 7주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2년의 기간 중 어느 시기에 부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부모휴가 대신에 단기노동(Teilzeitarbeit)을 선택한 경우 2001년까지는 주당 19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법에 의하면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근로를 하는 경우 부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양자에게 귀속되지만 상호 시기를 분할하여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995년 통계에 의하면 부가 부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1.8%에 국한되었으며 나머지는 모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휴가를 신청하고 가족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할애한 자는 임금과 직장에서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휴가 이후에는 원래 종사했던 지위와 동등한 정도의 업무로 복귀하는 것을 보장한다. 부모휴가의 사용의 만족도는 교육지원금의 정도와 기간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교육지원금을 아동이 만24개월이 될 때까지 청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휴가기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일정한 한도를 월등히 초월하는 경우 교육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교육지원금은 소득에 대한 상계의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양육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승인으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부모휴가와 교육지원금제도는 아동을 초기에 스스로 양육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여력이 낮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휴가에 대한 청구는 도리어 높은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초기 유대관계인으로서 여성이 고착되어 전통적인 모와 아동의 관계에 대한 관념에 부합하게 된다.

교육지원금은 2004년부터 출생 시 일회 800 EUR를 지불하며 매월 159 EUR를 지불한다. 둘째아동에 대한 일회성 지불은 500 EUR에 이른다. 그러나 교육지원금 이외에 양육지원금(Betreuungsgeld)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부

모가 3세 미만의 영아를 탁아보육(Krippe)에 보내거나 또는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가진 양육담당자(Betreuungsperson)에게 의뢰하는 경우 지불된다. 이 권리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은 월수입이 4,100 EUR가 넘지 않아야 한다. 200,000가족이 그 혜택 대상이 되고 있다. 나아가 가족과 아동의 삶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이 발의하고 있는 모든 것을 국가에 의하여 강력하게 보장된다. 이 모든 기준의 공적인 목적은 직업과 가족의 합의를 더 강력하게 편리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2)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한 지원

독일에서 아동수당은(Kindergeld)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된다. 이것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되며, 교육과정에 있는 아동을 둔 경우에는 27세까지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평생 지급된다.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21세까지 지급된다. 아동의 소득이 특정한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아동수당은 처음 세명의 아동까지는 월 154 EUR에 지불하고, 4번째 아동부터는 179 EUR를 지불한다. 이것은 가족의 부담에 대한 조정(Familienlastenausgleiches)의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부(Finanzamt)는 아동수당을 대신하여 세법상 아동공제수당(Kinderfreibetrag)이 가족에 대해 더 적당한지 파악하고 적당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대부분 고소들 가정에서는 아동공제수당이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3) 탁아보육과 개별 양육 활성화를 통한 지원

탁아보육(Kinderkrippen)이란 만 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시설 또는 이 연령대의 아동을 위한 전일제 보육시설 내의 그룹을 의미한다. 2004년 아동양육육성법(Tagesbetreuungsausbaugesetz)을 제정함으로써 독일 분방에 전일제탁아보육보급(Kindertagesstuetzenplaetze)과 아동돌봄서비스보급(Kindertagespflegeplaetzen)이 영유아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탁아보육의 확대를 통하여 3세 미만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아동양육지원제공자(Tagespflegeperson, 소위 일일 위탁모 Tagesmutter

라고도 함)에 의하여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동양육지원법(Kinderfoerderungsgesetz)을 제정하여 3세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질적인 관리가 되는 아동양육서비스 제공을 기획하였다. 현재 3세 미만의 아동에 약35%인 연간 2,013개 정도의 아동돌봄서비스보급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약 3분이 1이 개별적 양육지원을 하는 일일 위탁모(Tagesmutter) 또는 위탁부(Tagesvater)에 의한 개별양육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으로 새로운 구조를 짜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일일 위탁모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청소년지원법(사회보장법 제8권)과 이에 준하는 각 분방 법규정에 의한다. 일일 위탁모의 활동에는 다양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먼저 청소년국(Jugendamt)과 아동의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청소년국은 아동돌봄서비스보급을 연계하고 양육관련한 비용과 부모에게 해당되는 제공 비용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일일 위탁모에게는 관련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인 상담과 보수교육 과정을 안내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청소년국은 일일 위탁모와 부모, 부모와 청소년국, 일일위탁모와 청소년국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일일위탁모에 의한 개별양육지원 서비스 업무 전반을 책임진다. 그러나 청소년국은 이러한 업무를 민간 청소년지원기관에 양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일일 아동 돌봄 서비스(Kindertagespflege)는 법적으로 승인된 아동양육 지원의 유형에 해당한다. 이것은 전일제아동보육과 동등한 등급의 아동 양육 방식으로 인정된다. 부모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아동 양육 서비스 방식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일일 아동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다. 가능한 것은 여러 명의 아이를 부모의 집에서 돌볼 수 있다. 일일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자(Tagespflegeperson)는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아동 양육의 방식과 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여기에서 부모와 일일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는 일종의 고용계약(Arbeitsverhaeltniss)가 성립되며 부모가 사용자(Arbeitsgeber)이 된다.

또한 반대로 영유아의 부모의 집이 아니라 일일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집에서도 아동 양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데, 이 경우 5명 이상을 넘지 못한다. 물론 이것은 각 분방의 개별법으로 자세히 규정될 경우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간에 관한 규정 등은 개별 분방법으로 상세히 규정하도록 한다. 대체로 요구하는 것은 충분한 놀이 공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시설 및 자연과 숲 등에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등을 요구한다. 5명 정도의 아동은 일일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집에서 양육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청소년국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일일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는 부모와 어떠한 관계에서 아동을 돌보고 있는지에 의하여 좌우된다. 언급한 것처럼 아동 양육의 일련의 과정들 - 어디에서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는지, 먹는 것, TV 시청, 및 놀이, 소풍가기 등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권이 행사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주로 부모의 집에서 부모가 제시하는 양육 기준에 준하여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피용자(Arbeitnehmer)이며 부모가 사용자(Arbeitsgeber)가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일 위탁모의 집에서 또는 제3의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소(Kindgerechte Räumlichkeiten)에서 일일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자기 고유의 책임으로 양육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자영업에 준하는(selbstständig) 법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 대개의 경우 독일에서 일일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자영업에 준하는 독립성을 가지고 아동을 돌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적인 지위와 무관하게 의료보험, 요양보험, 사고보험 실업보험 및 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 가능한 사적 보험 역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5. 소결 및 시사점

위에서 검토한 나라들의 가정 내 보육 배경과 성격이 각각 다르다. 프랑스는 여성의 일자리와 맞물려 영아보육의 주된 수단으로, 호주는 시설보육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그리고 일본은 공보육의 대체수단인 동시에 보완적 수단으로 발전하여 왔다. 독일은 3세를 기준으로 가급적이면 3세 미만

의 아동을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육시스템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노동정책을 통하여 아동을 부모가 양육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지배적으로 채택하다가 최근에 비로소 전일제 탁아보육과 가정 내 개별 양육 지원을 위한 법규를 제정하였다.

프랑스 가정 보육모 정책은 그 배경이 보편적 보육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3세미만 연령대를 대상으로 개별 보육을 받도록 하고 개별보육사를 등록,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가정보육수당(AGED)나 등록보육사고용지원제도(AFEAMA) 등의 혜택은 개별보육사를 고용할 수 있는 중상위 소득계층이나 부유한 가족에게 돌아가고, 등록보육사고용지원제도(AFEAMA)의 경우에는 비공식 시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질 낮은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져서 비판의 요인이 된다.

호주는 보육자 집에서 제공하는 가정보육과 아동의 집으로 파견하는 가정보육 모두 인가보육 범주에 포함된다. 후자가 특별한 지역 등에 한정하여 인정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와는 차별되는 정책이다. 또한 등록보육으로 조부모나 친인척, 기타 개안에 의한 보육도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의 보장은 국도가 넓기 때문에 낮은 인구밀도로 시설보육 공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데서 비롯된다.

일본의 가정보육서비스는 보육자 집에서 제공하는 형태와 아동의 집으로 파견하는 형태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보육제공자 집에서의 가정보육은 시설보육이 충분하지 못한 일본에서는 인가보육소의 공보육서비스의 보완적 성격으로서의 역할이 강하다. 한편 가정 내 보육은 공공형으로는 회원조직 형태로 운영하여 운영유상 자원봉사자를 아동의 집으로 파견하는 패밀리 서포트센터 사업이 있고, 또한 영리 베이비시터가 회사 협회를 중심으로 역시 보완 보육을 담당한다. 보육시설 시작 전이나 종료 후, 보육시설 등·하원 서비스, 보육시간외 지원, 방과 후 아동의 보육, 부모의 급한 용무나 잔업 등의 비상사태, 그 외 아이가 아픈 경우 등에 이용 가능한 틈새 보육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일은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 제공이 부모의 주거에서 이루어지거나 양육 서비스 제공자의 주거에서 이루어지는 양자 모두를 가능한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여성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가지고 가정 내 개별 양육제도 도입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종사자들의 법적인 지위를 세분화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정책을 정착함으로써 일일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환경 보장과 이를 통한 아동에게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제4장

## 가정 내 개별양육 서비스 제도의 현황

I. 다양한 자녀양육 서비스 등장 배경	63
II. 아이돌보미의 현황 분석	68
III. 경기도 보육교사 운영 실태 분석	98
IV. 사회적 일자리로 “YMCA 아가야” 사업	101
V. 민간 베이비시터 현황 분석	103



## I. 다양한 자녀양육 서비스 등장 배경

### 1. 자녀양육환경의 변화와 양육지원의 다양화의 필요성

#### 1) 자녀양육 돌봄의 부담

근대 이후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의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고 자녀양육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가정에서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과거 대가족제도에서 가족 전체가 양육의 책임을 공유하던 것과 달리 근대 핵가족의 고립화로 인하여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중되게 되었다. 또한 아동 양육의 방식의 변화와 교육과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행 추세에 비추어 자녀양육비는 가정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여성이 점차 고학력과 되고 양성평등 의식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여성은 점차 취업의 가치를 선호하게 되었으므로 여성의 취업에 따른 자녀양육 부담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즉 맞벌이 부부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이나 가족 친화적 기업 환경이 부족하므로 남성은 가정의 가사노동이나 가정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와 일 중심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돌봄이 점차 가족의 큰 부담으로 자리하게 된다.

#### 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떨어짐

정부가 '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추진한 지 올해로 5년째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쏟아 부은 돈은 무려 20조원에 달하는데도 출산율은 여전히 1.1명대에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서문희, 안재진, 최혜선, 소마 나오코, 안진, 2009/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국가, 지역 및 개인 단위로 구분하여 양육비 지원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최근 14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정부의 보육예산 확대는 보육 유아교육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며, 이는 다

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출산수준이 계속 낮아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의 확대만으로 출산 수준을 올리는 어려움을 시사한다.

### 3) 시설중심의 보육정책의 한계

현재 정부의 양육지원 정책이 시설중심, 저소득층 지원 중심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제한적 지원정책만으로는 일반가정의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시설 중심의 보육정책의 경우 시설이용이 어려운 다양한 가정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시설중심 보육이 포괄하지 못하는 자녀양육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가 직장인 24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정부와 기업의 출산에 대한 지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보니 출산과 육아는 모두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은 출산 직후 1년간의 육아를 누가 담당했는지만 살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이가 있는 기혼자 중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담당했다는 경우는 37%에 머물렀다. 즉 자녀를 직접 키우는 부모가 열 명 중 네 명도 안 된다는 얘기다. 입주 보모나 육아도우미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경우는 전체의 7%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가정이 친정(처가, 28%) 또는 시댁(본가, 27%)에 자녀의 양육을 의뢰하는 식으로 가족 내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실효성 떨어지는 육아 지원 및 일 가정 양립 정책

현재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 휴직제도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동조 제2항), 육아휴직 기간 내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동조 제3항).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동조 제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 이외에도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동법 제19조의 2 제1항),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1.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법 제19조의5).

이와 같이 제도만을 보자면 한국 육아휴직제도는 잘 갖춰져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제도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지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분위기와 기업문화로 인하여 사실상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는 44만88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44만 명의 아빠 중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502명으로 전체 중 0.11%에 불과하며 이들이 사용한 기간은 평균 7개월(215일)이었다.

## 2. 가정 내의 자녀양육 가치의 중요성 인식

### 1) 3세 미만 자녀의 성장원리로서 가정 내 양육의 중요성

3세 미만의 자녀 성장에 있어서는 생리적, 정서적 안정, 성격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안정적인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0세아의 경우 부모들이 자녀양육 선호로서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영아기의 특성상 일관적인 양육태도와 신뢰감 형성이 매우 필요하다는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가정 내 양육을 우선지원으로 선진국의 양육패러다임의 전환

이러한 욕구가 적절히 구현되도록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보육시설, 가정보육, 가정양육, 소규모, 일인 보육 선택 제도 등을 다양화 하여 보육의 다양화를 구현해 왔다. 특히 일본, 프랑스, 스웨덴, 호주 등에서 가정 내 양육의 제도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임신과 출산, 양육의 유기적 연계로서 가정 방문형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아동의 양육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육아수당, 육아 휴직, 파파휴직, 가족 간호제, 가족기금(CAF) 제도를 통해 가정 내에서 아동양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기업 내의 남성휴직을 권장하는 등 가정 내의 양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3. 여성인력개발의 가치 중요성

### 1)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 인력 가치 재발견

성평등의 결과로서 노동시장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한계로 인하여 만혼, 결혼 기피, 출산 파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서 여성의 유희 인력에 대한 산업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기혼 여성 취업 희망자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혼여성의 취업 희망자가 증가하며 특히 저소득 계층의 여성에게는 노동을 통한 생계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점차 취업시장에서 기혼 여성 노동자는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여성의 취업의 대부분의 형태가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편재되는 것이 또한 현실이므로 이들 여성들의 노동의 형태가 많은 경우 야간 저녁시간에까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의 특성은 필연적으로 아동양육의 공백이 염려되게 된다.

## 2) 자녀양육이후 사회로 재진출하는 기혼여성들

기혼여성 특히 양육의 경험을 가진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의 진출은 일면 언급한 양육의 공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의 양육과 육아의 경험을 직업의 주요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돌봄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특히 양육전문가로서 여성의 활동 가치 또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서비스, 홈헬퍼 등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이 기대됨에 따라 기혼여성들에게는 노동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3) 출산 · 자녀양육전문가로서 여성 인력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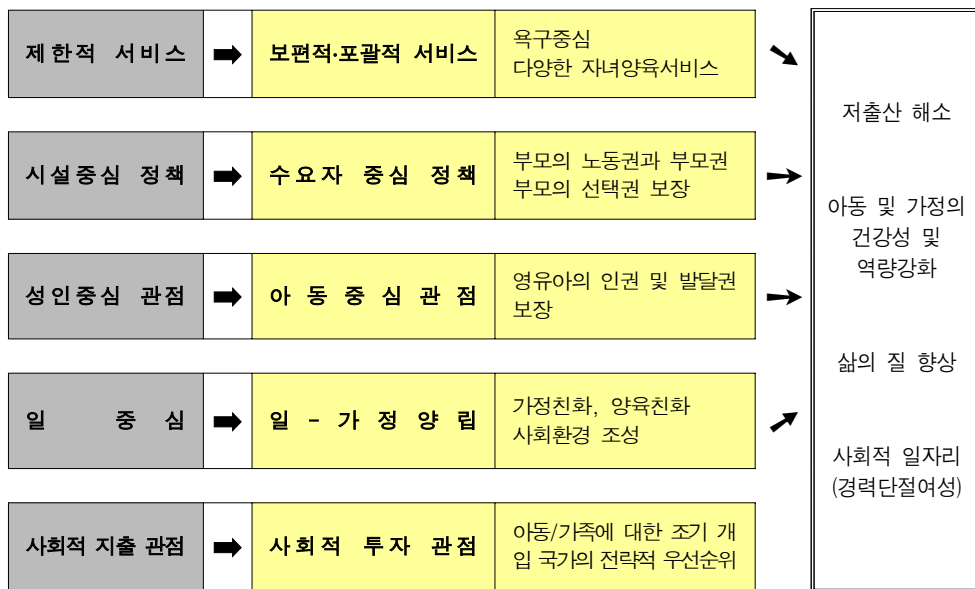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의 요구와 가정생활병행 가능한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출산과 양육의 경험과 지식을 중심으로 여성을 출산 · 양육지원 전문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여성인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 지원을 통하여 자녀양육을 공적 시스템으로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 4. 자녀양육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

자녀양육이 국가의 공적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하는지의 문제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입장의 반영이다.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적 국가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양육은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개별가정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왔다. 반면에 사회국가 이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양육은 사적영역인 개별가정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는 공동책임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관하여 우리헌법은 사회국가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은 제헌헌법 이래 대한민국의 헌법은 일관되게 복지국가원리를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여 왔다. 이러한 원리에서 양육이 단지 사적인 영역이 가정에서 부모만의 책임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국가도 양육의 공동 책임의 주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며 다양한 가정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자녀양육지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핵가족의 고립화가 가져온 양육의 과부담을 국가 사회 차원에서 완화함으로써 부모가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궁극적으로 양육의 주체인 아동권리를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는 자녀양육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양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할 때 가장 요구되는 부분은 일 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정책이 구체화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II. 아이돌보미의 현황 분석

### 1. 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로서 아이돌보미 사업의 배경

첫째, 시설중심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하여 육아지원 체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촉발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0세아 자녀가 주로 있는 곳은 전체 0세아의 93%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0세아의 주 양육자는 부모, 친인척, 베이비시터에게 양육되는 현실이다. 또한 취약보육시설 (24시간 보육, 시간 연장, 휴일보

육 시설)들의 긴급·일시 보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취약보육의 시설중심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의 보완이 되는 면을 있게 된다. 0세아 양육은 세계적으로 가정과 부모에 의해 되는 현실이며, 이는 앞의 일본이나 프랑스 등의 보육정책에서 나타난다.

둘째, 맞춤형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로서 다양한 가정의 욕구를 반영한 자녀양육서비스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맞벌이 가족, 장애 아동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자녀양육의 특수상황지원이 어느 시기보다 필요한 상황인데,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의 경우는 현재 다문화가정 양육지도사를 훈련하여 맞춤형으로 가정에 파견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아이돌보미 이용의 50%이상이 맞벌이 가정이며, 일부 저소득층의 가정과 조손 가정 등이 국가에 의해 지원받음으로써, 다양한 가족 형태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또한 둘째자녀출산 등의 다자녀 가정의 양육스트레스가 심한 가정, 자녀 돌봄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정, 0세아 가정의 특별한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함으로써 자녀양육부담경감과 양육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또한 부모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부모 요구형 지원으로서, 부모의 외부활동이나 교육, 모임 등의 활동 시에, 자녀에 대한 일시돌봄을 해결됨으로써, 자녀양육부담을 해소하여 긍정적인 자녀가치관을 갖도록 일반가정도 이용하고자 한다.

셋째, 잔여적 보육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아동·가족 가족지원서비스 형태로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즉 안정적이고 편안한 자녀양육의 가정환경의 지지를 통한 행복권 추구를 지향하며,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아동, 가족가치로서 가족지지, 가족사랑, 신뢰회복, 건강한 아동의 성장 동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사회투자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성장발달의 주요 투자처로서 family support system을 설정한다.

넷째, 여성의 경력 단절 기혼여성들을 양육경험한 여성을 활용한 육아지원 인력 개발하는 것이다. 그동안 출산과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여성의 취업 중단되고, 출산과 양육부담으로 인해 여성의 우울증, 자녀출산양육 기피증 증대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 활동을 통하여 오히려 자녀양육부담경감과 자녀양육행복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여성사회 활동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즉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0세아 양육지원서비스 자리매김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수한 시간대와 세심한 양육경험에 참여하고, 1:1 자녀양육지원의 효과가 있는 특별한 여성일자리로서 개발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다섯째, 그동안 부모권-자녀발달권의 몰이해를 해소하고, 가정 내의 자녀양육 핵심가치의 실현 할 수 있다. 심신이 건강한 자녀성장과 개성과 기질이 다른 아동의 선택적인 자녀양육환경 제공하고, 0세아 성장발달 보호를 위한 가족(부모) 관계를 통한 애착과 친밀성 증진시키는 양육지원이 된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행복권 보장하고자 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본 사업이 의미가 있게 된다. 본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육아지원, 자녀양육수당, 육아휴직,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실현의 수단이 된다.

여섯째, 자녀의 성장과 가정의 소중한 가치 지원을 통하여 부모-자녀 행복추구권의 선택적인 가족정책 가치 실현하게 된다. 이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 1차적 장소는 가정이 되도록 지원하고, 부모자녀관계의 원만한 소통과 신뢰의 형성은 미래의 건강한 성장발달의 근간이 되는 자녀양육의 원리를 실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위한 가정 내의 자녀양육 서비스 지원수단이다.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자녀양육, 양육의 즐거움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며 국가의 정책 이념인 <행복 공감 생활정치>의 실현으로 작동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민서비스의 직접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의 하나이다.

## 2. 아이돌봄미사업의 진행

### 1) 목적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 경감한다. 또한 저소득 중장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및 돌보미 교육을 통해 양육 전문가 양성의 목적도 있다.

## 2) 사업 대상자 가정선정 및 지원내용 현황

사업대상은 크게 국가지원형과 전혀 혜택이 없는 일반가정으로 나눈다. 맞벌이 가정 등 일정소득이상인 경우에는 전적으로 자부담으로 국가가 양성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어떠한 지원이 없다. 다만 그 아이돌보미를 신뢰하고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업대상자란 일정기준의 지원을 받는 가정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소득수준이나, 아이의 연령에 따라 일정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

### (1) 선정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0세(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으로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경증 장애아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가구원별 소득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연령 판정은 서비스 이용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표 4-1〉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00% <sup>1)</sup>	1,308	2,394	3,397	3,913	4,251	4,590	4,929	5,268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654	1,197	1,689	1,956	2,126	2,326	2,526	2,726

※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 (2) 지원내용

아이돌보미 파견, 월 80시간(연 480시간 이내)이며, 서비스 수요유형에 따라 아동 양육 중심의 양육 돌봄 서비스와 취학아동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그 중에서 기관 돌보미 서비스 및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지침에 따라 현안문제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즉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등에 이용이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에 국가가 특별히 사업 내용을 시달하게 된 내용이다.

2010년 현재 아이돌보미 이용 요금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교통비는 지역에 따라 실비로 지원하거나, 부모부담을 하고 있다. 돌보미의 지원 단가는 시간당 5천원, 심야·주말 시간당 6천원. 심야·주말 이용 시에도 본인부담금은 이 있으며, 차액은 정부지원하기도 한다.

〈표 4-2〉 지원 기준 및 이용 요금

유형	이용요금(1시간당)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00원	4,000원	1,000원	50% 이하 (이용요금 80% 지원)
나형	5,000원	1,000원	4,000원	51%~100%이하 (이용요금 20% 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4인기준 196만원 이하/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4인기준 391만원 이하

### 3. 2009년 아이돌보미사업 현황 분석

#### 1)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가정 가입 현황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한 가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2007년 보다 약 4.5배 증가하였다. 2009년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규가입가정은 34,162 가정이었다.

#### 2) 아이돌보미 이용신청 및 연계현황

전국 아이돌보미 이용신청 및 연계현황은 아래 <표 4-3>, <표4-4>와 같다. <표 4-3>에서 나타나듯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은 총 101,048가정이며 이 중 연계가정은 99,118가정이다. <표 4-4>에서는 신청건수는 969,470건, 연계건수는 951, 927로 약 98%의 연계율을 나타냈다. 지역별 소득유형별(가·나·다형) 이용건수 비율 결과를 살펴보면 전남, 경북,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가형의 이용건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울산, 경기 지역은 다형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4-3〉 지역별 신청가정 및 연계가정 현황

(단위: 가정 수)

	개소수	신청가정				연계가정				연계비율
		가형 <sup>26)</sup>	나형 <sup>27)</sup>	다형 <sup>28)</sup>	계	가형	나형	다형	계	
서울	25	9,759	5,136	5,723	20,618	9,689	5,061	5,592	20,342	98.66
부산	11	5,170	1,377	706	7,253	5,141	1,325	674	7,140	98.44
대구	8	2,728	595	389	3,712	2,677	569	348	3,594	96.82
인천	5	2,749	1,166	434	4,349	2,748	1,166	434	4,348	99.98
광주	5	2,342	445	394	3,181	2,283	414	385	3,082	96.89
대전	5	1,612	613	341	2,566	1,611	613	341	2,565	99.96
울산	5	1,678	803	1,091	3,572	1,678	803	1,091	3,572	100
경기	31	10,086	4,452	4,124	18,662	9,783	4,234	3,889	17,906	95.95
강원	18	3,953	1,187	718	5,858	3,823	1,106	693	5,622	95.97
충북	12	2,425	654	295	3,374	2,388	633	295	3,316	98.28
충남	16	3,282	1,004	520	4,806	3,250	993	512	4,755	98.94
전북	14	3,184	565	545	4,294	3,171	563	546	4,280	99.67
전남	21	4,705	626	476	5,807	4,658	606	476	5,740	98.85
경북	23	4,154	826	358	5,338	4,138	821	354	5,313	99.53
경남	20	4,335	967	1,109	6,411	4,296	953	1,095	6,344	98.95
제주	2	920	184	143	1,247	872	184	143	1,199	96.15
계	221	63,082	20,600	17,366	101,048	62,206	20,044	16,868	99,118	98.09
비율		62.43	20.39	17.19	100.00	62.76	20.22	17.02	100	100

26) 가형 :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27) 나형 :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초과~100%이하

28) 다형 :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초과

〈표 4-4〉 지역별 신청건수 및 연계건수 현황

(단위: 건수)

	개소수	신청가정				연계가정				연계비율
		가형	나형	다형	계	가형	나형	다형	계	
서울	25	101,155	40,354	48,968	190,477	100,216	39,535	47,820	187,571	98.47
부산	11	56,461	9,789	4,821	71,071	55,379	9,335	4,612	69,326	97.54
대구	8	28,918	4,976	2,815	36,709	28,440	4,291	2,783	35,514	96.74
인천	5	32,583	9,246	3,582	45,411	32,581	9,246	3,582	45,409	99.99
광주	5	26,738	3,596	2,915	33,249	26,716	3,582	2,897	33,195	99.84
대전	5	15,606	3,900	2,939	22,445	15,566	3,873	2,921	22,360	99.62
울산	5	19,281	5,584	8,253	33,118	19,281	5,584	8,253	33,118	100
경기	31	104,880	32,353	33,672	170,905	101,898	30,724	32,173	164,795	96.42
강원	18	38,230	8,175	4,868	51,273	36,739	7,552	4,599	48,890	95.35
충북	12	25,396	5,085	1,678	32,159	25,024	4,928	1,644	31,596	98.25
충남	16	35,447	7,019	4,001	46,467	35,013	6,886	3,954	45,853	98.68
전북	14	35,710	4,567	4,811	45,088	35,636	4,525	4,797	44,958	99.71
전남	21	54,532	4,158	3,269	61,959	54,532	4,158	3,252	61,942	99.97
경북	23	46,804	6,597	2,374	55,775	45,881	6,455	2,274	54,610	97.91
경남	20	46,574	6,173	8,787	61,534	46,146	6,110	8,738	60,994	99.12
제주	2	9,329	1,235	1,266	11,830	9,307	1,230	1,259	11,796	99.71
계	221	677,644	152,807	139,019	969,470	668,355	148,014	135,558	951,927	98.19
비율		69.90	15.76	14.34	100.00	70.21	15.55	14.24	100	100

### 3) 아이돌보미 서비스 평일·주말 연계현황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주로 주말보다 평일(86.95%)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평일·주말 연계현황

(단위: 건수)

	개소수	평일				주말				계
		가형	나형	다형	계	가형	나형	다형	계	
서울	25	86,534	36,673	46,662	169,869	13,525	2,834	1,343	17,702	187,571
부산	11	46,282	8,147	4,388	58,817	9,145	1,147	217	10,509	69,326
대구	8	24,684	3,804	2,599	31,087	3,797	455	175	4,427	35,514
인천	5	28,294	8,408	3,414	40,116	4,290	8,842	161	5,293	45,409
광주	5	22,902	3,145	2,645	28,692	3,983	381	139	4,503	33,195
대전	5	13,411	3,331	2,811	19,553	2,165	532	110	2,807	22,360
울산	5	15,587	4,602	7,671	27,860	3,675	993	590	5,258	33,118
경기	31	86,720	27,889	31,166	145,775	15,054	2,756	1,210	19,020	164,795
강원	18	29,700	6,662	4,308	40,670	7,061	926	233	8,220	48,890
충북	12	21,119	4,549	1,442	27,110	3,963	437	86	4,486	31,596
충남	16	29,959	6,201	3,814	39,974	5,043	700	136	5,879	45,853
전북	14	30,194	4,084	4,615	38,893	5,447	445	173	6,065	44,958
전남	21	45,110	3,666	2,975	51,751	9,422	492	277	10,191	61,942
경북	23	38,492	5,973	2,173	46,638	7,370	468	134	7,972	54,610
경남	20	37,962	5,420	7,975	51,357	8,187	713	737	9,637	60,994
제주	2	7,283	1,106	1,172	9,561	2,025	122	88	2,235	11,796
<b>계</b>	<b>221</b>	<b>564,233</b>	<b>133,660</b>	<b>129,830</b>	<b>827,723</b>	<b>104,152</b>	<b>14,243</b>	<b>5,809</b>	<b>124,204</b>	<b>951,927</b>
<b>비율</b>		<b>59.27</b>	<b>14.04</b>	<b>13.64</b>	<b>86.95</b>	<b>10.94</b>	<b>1.50</b>	<b>0.61</b>	<b>13.05</b>	<b>100</b>

### 4) 아이돌보미 시간대별 이용신청 및 연계현황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표 4-6>에서 보듯이 저녁 16시~20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오후 12시~4시, 오전 8시~12시 순이다. 이용연계 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저녁 16시~20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가정이 맞벌이 가정인 것과 연관되며 퇴근해서 돌아오기 전 양육자

가 없는 돌봄의 공백을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6〉 시간대별 이용신청 및 연계현황

(단위: 건수)

	오전1 04:00-08:00	오전 08:00-12:00	오후 12:00-16:00	저녁 16:00-20:00	심야 1 20:00-24:00	심야 2 24:00-04:00	계
누계	41,276	221,251	274,525	<b>352,395</b>	58,230	4,250	951,927
비율	4.34	23.24	28.84	<b>37.02</b>	6.12	0.45	100

### 5) 이용시간별 현황

아이돌보미 1회 서비스 이용시간은 4~8시간미만이 41.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시간 이용은 24.07%, 2시간 이용은 24.0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이돌보미의 이용은 일시적인 자녀양육형태임을 증명하고 있다.

〈표 4-7〉 1회 서비스 이용시간 현황

(단위: 건수)

	1시간	2시간	3시간	<b>4~8시간</b>	8시간 이상	계
누계	504	228,732	229,145	<b>393,781</b>	95,220	951,927
비율	0.53	<b>24.03%</b>	<b>24.07%</b>	<b>41.37%</b>	10.00%	100%

### 6) 1달 이용시간 현황

한 달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40시간 이하 이용가정이 전체의 56.96%로 나타났으며 40시간에서 80시간을 이용가정이 38.81%, 80시간에서 120시간을 이용하는 가정은 3.77%이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이용 시 2시간~3시간 이용률이 40%인 것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1달 이용시간 현황

(단위: 가정 수)

		~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101~110	111~120	120~	계
전 국	가형	9,388	7,315	6,248	6,512	6,152	4,972	4,750	14,444	1,192	335	277	423	247	62,255
	나형	6,479	3,664	2,345	1,843	1,333	1,133	897	1,775	235	85	59	97	44	19,989
	다형	5,742	3,017	2,175	1,738	1,111	835	591	471	326	205	190	311	162	16,874
	누계	21,609	13,996	10,768	10,093	8,596	6,940	6,238	16,690	1,753	625	526	831	453	99,118
	비율	21.80	14.12	10.86	10.18	8.67	7.00	6.29	16.84	1.77	0.63	0.53	0.84	0.46	100
		56.96	38.81	3.77	0.46	100									

## 7) 이용 사유별 현황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사유는 직장근무로 이용한다는 경우가 전체의 61.2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의 연계건수에서 맞벌이 가정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녀양육 부담, 교육참여 등으로 나타나고, 병원치료, 산후 후유증, 집안 활동 등의 개인적이나 급한 일들로 이용하여 자녀양육, 가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원됨을 볼 수 있다.

〈표 4-9〉 이용사유별 현황

(단위: 건수)

	직장근무	교육참여	병원치료	여가활동	산후 후유증	집안행사	자녀양육 부담	기타	계
누계	583,254	70,365	34,962	26,006	9,778	8,897	153,401	65,264	951,927
비율	61.27	7.39	3.67	2.73	1.03	0.93	16.11	6.86	100

## 8) 이용아동연령 현황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연령 현황을 살펴보면 <표 2-9>와 같다. 만 0세~만 2세 이용아동의 건수는 552,228건(43.13%), 만 3세~만 5세는 390,495건(30.5%), 만 6세~8세 242,441건(18.92%), 만 9세~12세 95,383건(7.34%)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0세~만 2세 아동(연령이 낮은 아동)이 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6-8세)>1세>2세>12개월 미만>3세>4세>5세>9세-12세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 지원되는

경우가 맞벌이 가정 부모가 학습 및 정서적 지원 등의 돌봄의 욕구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녀키우기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표 4-10〉 이용아동연령현황

(단위: 건수)

		12개월 이하	1세	2세	3세	4세	5세	6-8세 미만	9-12세 미만	계
서울	25	26,450	52,728	37,671	27,448	22,440	22,911	43,714	10,782	244,144
부산	11	14,450	11,944	12,983	12,979	9,032	9,211	18,506	6,026	95,131
대구	8	7,616	9,647	6,513	4,586	5,028	4,900	6,898	1,744	46,932
인천	5	7,743	10,388	7,841	8,476	6,486	6,289	13,117	3,174	63,514
광주	5	6,023	6,747	6,243	4,081	4,964	4,882	11,742	4,468	49,150
대전	5	3,119	7,137	4,485	2,805	3,455	2,699	4,981	979	29,660
울산	5	9,173	6,349	4,714	4,290	3,890	2,964	8,324	3,487	43,191
경기	31	21,573	34,812	33,722	24,947	19,335	21,789	44,413	13,871	214,462
강원	18	6,317	12,079	9,178	8,816	6,432	7,276	10,078	3,475	63,651
충북	12	5,898	4,867	5,527	5,677	3,768	3,661	8,293	5,555	43,246
충남	16	6,921	9,685	9,869	8,768	6,052	6,414	9,405	4,579	61,693
전북	14	6,110	11,129	10,583	6,987	6,197	6,108	11,040	5,820	63,974
전남	21	9,519	13,075	8,603	7,781	7,828	8,039	20,269	12,843	87,957
경북	23	6,364	13,991	11,035	7,310	7,438	6,072	13,405	7,548	73,163
경남	20	9,048	14,490	10,216	8,889	8,424	7,083	16,202	10,083	84,435
제주	2	1,549	3,337	2,767	1,998	2,372	1,218	2,054	949	16,244
계		221	147,873	222,405	181,950	145,838	123,141	121,516	242,441	95,383
비율		11.55	17.37	14.21	11.39	9.62	9.49	18.92	7.45	100
비율		43.13	30.5	18.92	7.45	9.62	9.49	18.92	7.45	100

### 9) 돌봄 아동 수에 따른 이용가정 연계현황

돌봄 신청 아동 수에 따라 파견되는 연계비율을 보면 돌봄 아동 1명 가정이 6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돌봄 아동 2명 가정이 32.41%, 돌봄 아동 3명 가정이 2.81%, 돌봄 아동 4명 가정이 0.25%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1〉 돌봄 아동 수에 따른 이용가정 현황

(단위: 건수)

	돌봄 아동 1명 가정				돌봄 아동 2명 가정				돌봄 아동 3명 가정				돌봄 아동 4명이상 가정				총계
	가형	나형	다형	계	가형	나형	다형	계	가형	나형	다형	계	가형	나형	다형	계	
누계	396,159	112,198	106,005	614,362	244,774	35,630	28,075	308,479	24,899	966	874	26,739	2,291	53	3	2,347	951,927
비율	41.62	11.79	11.14	64.54	25.71	3.74	2.95	32.41	2.62	0.10	0.09	2.81	0.24	0.01	0.00	0.25	100

## 10) 연계사업현황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가정 및 돌보미들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문화, 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결과는 <표 4-12>과 같이 나타났다.

〈표 4-12〉 연계사업현황

(단위: 가정수)

월	교육	문화	상담	기타	계
1	4	8	20	15	47
2	31	12	53	21	117
3	75	15	38	37	165
4	81	211	73	87	452
5	109	188	69	61	427
6	136	529	99	189	953
7	293	48	45	256	642
8	120	180	54	239	593
9	106	50	54	253	463
10	87	48	52	295	482
11	199	133	66	253	651
12	51	171	30	263	515
총 계	1,292	1,593	653	1,969	5,507

#### 4. 특별 돌보미 파견

2009년에 신종 인플렌자의 대유행으로 아이들이 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특별하게 개별 가정에서 아이가 머물러야 하거나, 다양한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보육시설 등에 정규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파견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영아전담 보육 시설 등에 보조 인력이 필요하거나, 병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사 등에 아이를 동반하여 수업이 진행 될 경우, 시간제로 일시 파견하여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아이를 돌볼 인력이 부족한 기간이나, 가정에도 이용하도록 한 제도로서,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이 진행되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기관 파견 돌보미 현황

###### (1) 기관파견돌보미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가능하였고, 아이돌보미 소득확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디자인 되었다. 돌봄 서비스 연계이용대상기관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기관 중 서비스 희망 기관이다. 서비스 이용요금과 정부지원 기준은 <표 4-13>과 같다. 돌봄활동 아동 수는 <표 4-14>와 같다.

<표 4-13>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 지원

유형	지원 시간	요금 체계		
		이용요금	정부지원	기관부담
A형 사회복지법 제 2조 3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연 480시간	10,000원	4,000원 (40%)	6,000원 (60%)
B형 그 외 기관 예) 학교, 병원, 유치원, 보육시설 등	-			10,000원 (100%)

- 지원 시간 적용 방법

- 예) 1회 3명의 돌보미가 2시간 활동했다면 6시간 지원으로 적용

〈표 4-14〉 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아동연령	만 0세~2세	만 3세~12세	주의
돌보미 1인당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 수	3명	5명	- 한명의 돌보미가 여러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2) 아이돌보미 기관파견 현황

기관파견돌보미 운영현황을 보면 기관 파견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과 연계건수의 결과는 <표 4-15>와 같다. 총 209개 기관에서 1,582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파견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등이다.

〈표 4-15〉 기관파견돌보미 연계기관수 및 연계건수

(단위: 기관수/건수)

월별	연계 기관수			연계 건수		
	A형 <sup>29)</sup>	B형 <sup>30)</sup>	계	A형	B형	계
6월	11	1	12	59	1	60
7월	28	3	31	156	7	163
8월	20	5	25	175	23	198
9월	32	5	37	310	34	344
10월	35	4	39	265	11	276
11월	33	5	38	308	24	332
12월	24	3	27	176	33	209
누계	183	26	209	1,449	133	1,582
비율	87.56	12.44	100	91.59	8.41	100

※ 기관파견돌보미 실적은 운영 지침이 변경된 후 6월부터 적용된 자료임.

29) A형 : 사회복지법 제 2조 3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0) B형 : 그 외 기관

## 2)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특별 돌보미 현황

### (1)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특별 돌보미

사업 목적은 수족구병 등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서비스 특별 지원으로서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2군 전염병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맞벌이·한부모 가정 자녀로서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형” 가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였다. 현재 가·나형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전염성 질병 감염에 따른 서비스 이용은 이용지원시간(월 80시간, 연 480시간)에 포함되지 않게 하고,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하게 하였다.

### (2) 특별 돌보미 파견 현황

전염성 질병 지원서비스 운영 현황은 수족구병 등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서비스 특별 지원한 결과는 전염성 질병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은 67가정이며 연계건수는 292건이다. 서비스를 이용한 질병의 유형을 보면, 수족구병이 전체 6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두가 37.21%로 나타났다.

〈표 4-16〉 연계가정 및 연계건수

(단위 : 건수)

	연계 가정	연계 건수
누계	67	292

〈표 4-17〉 서비스 이용한 질병유형

(단위: 가정수)

월별	수족구병	수두	이하선염	백일해	A형간염	홍역	기타	계
8월	22	15	0	0	0	0	0	37
9월	8	7	0	0	0	0	0	15
10월	6	1	0	0	0	0	0	7
11월	4	0	0	0	0	0	0	4
12월	2	2	0	0	0	0	0	4
누계	42	25	0	0	0	0	0	67
비율	62.69	37.31	0	0	0	0	0	100

※ 전염성 질병 실적은 운영 지침이 변경된 후 8월부터 적용된 자료임.

### 3) 긴급 돌보미 파견

긴급돌보미 운영현황은 시간적(주말·야간), 지리적(교통불편 등) 사유로 돌보미가 파견을 기피하면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에 대한 연계성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 긴급돌보미 서비스의 결과는 <표 4-18>, <표 4-19>와 같다. 긴급돌보미 활동인원은 1,924명이며 이용가정은 7,565, 연계건수는 54,046으로 나타났다.

<표 4-18> 긴급돌보미 연계가정 및 연계건수

(단위: 가정/건수)

월별	연계 가정				연계 건수			
	가형	나형	다형	계	가형	나형	다형	계
7월	372	109	74	555	2,636	556	420	3,612
8월	1,039	271	196	1,506	6,695	1,305	945	8,945
9월	1,025	299	209	1,533	8,330	1,698	1,421	11,449
10월	933	261	191	1,385	7,395	1,519	1,189	10,103
11월	987	252	199	1,438	8,458	1,643	1,190	11,291
12월	750	210	188	1,148	6,379	1,264	1,003	8,646
누계	<b>5,106</b>	<b>1,402</b>	<b>1,057</b>	<b>7,565</b>	<b>39,893</b>	<b>7,985</b>	<b>6,168</b>	<b>54,046</b>
비율	<b>67.50</b>	<b>18.53</b>	<b>13.97</b>	<b>100</b>	<b>73.81</b>	<b>14.77</b>	<b>11.41</b>	<b>100</b>
비율	<b>87.56</b>	<b>12.44</b>	<b>100</b>		<b>91.59</b>	<b>8.41</b>	<b>100</b>	

<표 4-19> 긴급돌보미 활동현황

월별	인원(명)	활동시간	이동시간 <sup>31)</sup>	사무보조시간 <sup>32)</sup>	총 활동시간	총 활동비(원)	총 교통비(원)	총계(원)
7월	146	15,555	274	1,054	16,883	118,329,952	11,210,240	129,540,192
8월	375	40,765	529.5	1,831	43,125.5	305,268,270	24,050,020	329,318,290
9월	407	48,630	1,075	1,568	51,273	377,856,660	346,817,550	31,039,110
10월	341	45,264	1,072	1,317	44,953	332,392,015	28,742,200	361,134,215
11월	352	46,626	1,082	1,445	49,153	340,160,530	30,025,090	370,185,620
12월	303	36,631	651	1,245	38,527	305,270,970	24,510,230	329,781,200
누계	<b>1,924</b>	<b>233,471</b>	<b>4,683.5</b>	<b>8,460</b>	<b>243,914.5</b>	<b>1,779,278,397</b>	<b>465,355,330</b>	<b>1,550,998,627</b>
평균	<b>321</b>	<b>38,912</b>	<b>781</b>	<b>1,410</b>	<b>40,652</b>	<b>296,546,400</b>	<b>77,559,221</b>	<b>258,499,771</b>

※ 긴급돌보미 실적은 운영 지침이 변경된 후 7월부터 적용된 자료임.

31) 이동시간 : 왕복 이동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활동시간으로 인정함(활동인정시간)

32) 사무보조시간 : 의무활동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사무보조시간 20시간(활동인정시간)

## 5. 2009년 아이돌보미 서비스 만족도 분석

2009년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만족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시행 232개 지역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였고, 229개 지역에서 조사에 응하고, 아이돌보미 2,435명, 서비스 이용자 3,721가정, 사업 담당자 259명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 1) 아이돌보미 이용자 가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232개 지역 중 229개 지역에서 총 3,721가정이 설문조사에 응답하고 응답자 가족의 자녀 평균연령 4.32세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이용자 가정 월평균소득비율을 살펴보면 100만원~150만원 미만(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만원~150만원 미만(19.7%), 0~100만원 미만(16.9%)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20〉 이용자가정 월평균 소득

월 평균 소득	빈도	비율(%)
100만원 미만	629	16.9
150만원 미만	962	25.9
200만원 미만	732	19.7
250만원 미만	308	8.3
300만원 미만	318	8.5
350만원 미만	189	5.1
400만원 미만	145	3.9
450만원 미만	113	3.0
450만원 이상	303	8.1
무응답	22	0.6
합 계	3,721	100

〈표 4-21〉 서비스유형에 따른 소득수준

월 평균 소득	서비스 유형			전체
	가형	나형	다형	
100만원 미만	595(26.5%)	22(2.8%)	12(1.8%)	629(17.0%)
150만원 미만	876(39.0%)	67(8.4%)	19(2.9%)	962(26.0%)
200만원 미만	566(25.2%)	144(18.0%)	22(3.4%)	732(19.8%)
250만원 미만	113(5.0%)	165(20.6%)	30(4.6%)	308(8.3%)
300만원 미만	66(2.9%)	198(24.8%)	54(8.3%)	318(8.6%)
350만원 미만	13(0.6%)	110(13.8%)	66(10.2%)	189(5.1%)
400만원 미만	10(0.4%)	46(5.8%)	89(13.7%)	145(3.9%)
450만원 미만	3(0.1%)	23(2.9%)	87(13.4%)	113(3.1%)
450만원 이상	7(0.3%)	25(3.1%)	271(41.7%)	303(8.2%)
전체	2,249(60.8%)	800(21.6%)	650(17.6%)	3,699(100%)

이용가정 유형에 따른 월평균 소득을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가형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00~150만원 미만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형은 250~300만원 미만, 다형은 45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2〉 이용자 가족형태

	맞벌이	일반	한부모	장애인	조손	다문화	위탁	기타	무응답
이용자가정 수 (3,721명)	1,480	1,469	510	73	32	92	2	52	11
비율(%)	39.8	39.5	13.7	2.0	0.9	2.5	0.1	1.4	0.3

아이돌보미 이용자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족이 39.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가족 39.5%, 한부모 1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3〉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기간

	0~3개월	4~6개월	7개월~1년	1년1개월~2년	2년1개월~3년	무응답
이용자 수 (3,721명)	1,328	1,062	774	444	94	19
비율	35.7	28.5	20.8	11.9	2.5	0.5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기간은 3개월 미만이 35.7%, 4-6개월이 28.5%로 주  
로 단기간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이돌보미사업의 기본정신  
에 부합되는 것이며, 시간 제약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표 4-24〉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말길 곳이 없어서	<b>1,992 (53.5%)</b>	450 (12.1%)	347 (9.3%)
이용요금이 저렴해서	517 (13.9%)	<b>1,119 (30.1%)</b>	602 (16.2%)
타 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서(기관, 민간 등)	68 (1.8%)	234 (6.3%)	410 (11.0%)
아이돌보미 제공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서	134 (3.6%)	267 (7.2%)	320 (8.6%)
정부지원에 대한 믿음, 안정성 때문에	431 (11.6%)	734 (19.7%)	711 (19.1%)
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믿음, 안정성 때문에	483 (13.0%)	762 (20.5%)	<b>995 (26.7%)</b>
기타	36 (1.0%)	14 (0.4%)	42 (1.1%)
무응답	60 (1.6%)	141 (3.8%)	294 (7.9%)
합계	3,721 (100%)	3,721 (100%)	3,721 (100%)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는 ‘말길 곳이 없어서’가 1순위로 나  
타났으며, 2순위 ‘이용요금이 저렴해서’, 3순위 ‘돌보미 선생님의 믿음과 안  
정성 때문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5〉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이용자 수	비율(%)
<b>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b>	<b>1,949</b>	<b>52.4</b>
취업준비, 학원 등 자기 개발을 위해서	513	13.8
<b>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b>	<b>이용자 수</b>	<b>비율(%)</b>
긴급 비상 시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426	11.4
주 양육자의 건강문제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서	235	6.3
양육부담(다자녀, 쌍둥이 등) 때문에	391	10.5
기타	183	4.9
무응답	23	0.6
합계	3,721	100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5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취업 준비나 학원 등 자기개발을 위해서’ 13.8%, ‘긴급 비상 시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11.4% 양육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10.5%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원래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포괄적 서비스의 형태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26〉 아이돌보미 서비스 중 주로 제공받는 서비스

주로 제공받는 서비스	이용자 수	비율(%)
송영서비스(보육시설, 학교, 병원 등)	288	7.7
<b>보육활동(놀이활동, 기본생활 습관지도 등)</b>	<b>2,004</b>	<b>53.9</b>
안전·신변보호처리	558	15.0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538	14.5
학습 돌봄(숙제점검, 예·복습 관리, 준비물 보조 등)	222	6.0
기타	80	2.1
무응답	31	0.8
합계	3,721	100

아이돌보미 서비스 중 주로 제공받는 서비스라고 응답한 것은 ‘보육활동(놀이활동, 기본생활 습관지도 등)’이 53.9%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안전·신변보호처리’,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송영서비스와 학습 돌봄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어, 아이돌보미의 활동이 부모역할을 대신한 다양한 자녀양육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표 4-27〉 아이돌보미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무응답
이용자 수(3,721명)	1,665	1,591	267	145	21	32
비율(%)	44.7	42.8	7.2	3.9	0.6	0.9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중 87.5%가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점

	1순위	2순위	3순위
국가지원 이용시간이 부족해서	73(44.0%)	44(26.5%)	27(16.3%)
이용료가 비싸서	63(38.0%)	46(27.7%)	13(7.8%)
	1순위	2순위	3순위
아이돌보미 서비스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9(5.4%)	12(7.2%)	15(9.0%)
아이돌보미에 대한 불만태도, 성향 등)	8(4.8%)	8(4.8%)	9(5.4%)
이용신청이 힘들어서(서류제출 등)	3(1.8%)	24(14.5%)	18(10.8%)
서비스 신청 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6(3.6%)	8(4.8%)	18(10.8%)
담당자에 대한 불만	1(0.6%)	6(3.6%)	14(8.4%)
홈페이지 사용이 불편해서	1(0.6%)	9(5.4%)	31(18.7%)
기타	2(1.2%)	4(2.4%)	12(7.2%)
무응답	0(0%)	5(3.0%)	9 (5.4%)
합계	266(100%)	266(100%)	266(100%)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 매우불만족이라고 대답한 이용자의 주요 불만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국가지원 이용시간이 부족해서’가 1순위로 나타났고, 뒤이어 ‘이용료가 비싸서’, ‘홈페이지가 불편해서’ 2, 3순위로 나타났다.

〈표 4-29〉 아이돌보미 희망 연간 이용시간

희망 연간 이용시간	이용자 수	비율(%)
연 480시간	11	1.2
연 540시간	10	1.1
연 600시간	54	5.8
연 660시간	38	4.0
<b>연 700시간 이상</b>	<b>801</b>	<b>85.3</b>
무응답	25	2.7
합계	939	100
합계	3,721	100

아이돌보미 정부지원시간에 대해 불만족, 매우불만족이라고 대답한 939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희망 연간 이용시간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연 700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앞으로 아이돌보미 이용시간을 원하는 만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재정보호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표 4-30〉 한 달 평균 이용요금 : 127천원

	가형	나형	다형
이용자가정 수(3,420명)	80,000원	176,000원	230,000원

이용자 가정의 평균이용 요금은 127천원 정도이며, 다형 가정이 자신이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230천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만족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형의 경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77.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나·다형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34.6%, 37%로 가형의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용요금에 대해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이용자가정에 주간시간에 아동 1인의 적당한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 2,478원으로 현재 아이돌보미 이용요금인 5,000원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성품 및 성격	1,137(59.5%)	707(37.0%)	57(3.0%)	5(0.3%)	5(0.3%)	1,911(100%)
전문성 (연령별 보육 등)	226(47.2%)	164(34.2%)	75(15.7%)	13(2.7%)	1(0.2%)	479(100%)
육아경험	162(35.4%)	259(56.6%)	36(7.9%)	1(0.2%)	0(0%)	458(100%)
연령	20(29.4%)	36(52.9%)	10(14.7%)	2(2.9%)	0(0%)	68(100%)
활동(놀이, 기본 생활지도 등)	235(49.2%)	200(41.8%)	42(8.8%)	0(0%)	1(0.2%)	478(100%)
기타	35(46.1%)	28(36.8%)	9(11.8%)	4(5.3%)	0(0%)	76(100%)
합계	1,815(52.3%)	1,394(40.2%)	229(6.6%)	25(0.7%)	7(0.2%)	3,470(100%)

90 「자녀돌봄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92.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품 및 성격’의 만족도가 96.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활동(놀이, 기본생활지도 등)’, 육아경험 대해서도 뒤이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신청 과정에 대해서는 73.4%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반면 이용신청 과정에 대해 ‘불만족, 매우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이용자가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갑작스러운 이용신청(주말, 당일)이 어렵다’가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출서류가 많다.’, ‘인터넷 서비스 신청이 어렵다’가 뒤이어 높게 나타났다.

〈표 4-32〉 주 돌봄 제공자

	부모님, 친인척	주변 이웃	보육시설	민간 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기타	무응답
이용자 수(3,721명)	1,518	313	149	37	1,630	45	29
비율(%)	40.8	8.4	4.0	1.0	43.8	1.2	0.8

아이를 잠시 맡겨야 할 때 자주 이용하는 돌봄제공자는 ‘아이돌보미’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부모님, 친인척’이 40.8%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에 아동보육 현황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가정은 아이돌보미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표 4-33〉 추가되기를 희망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추가 희망 서비스	이용자 수	비율(%)
학교배식 등 부모대리 역할	370	9.9
주말 및 심야 전문 돌보미	958	25.7
영아 전문돌보미	614	16.5
연령별 학습 돌보미	1,054	28.3
현장 체험 돌보미	395	10.6
기타	131	3.5
무응답	199	5.3
합계	3,721	100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추가되기를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해 ‘연령별 학습 돌보미’가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말 및 심야 전문 돌보미’, ‘영아전문 돌보미’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시간대와 영역별 전문성을 가진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통하여 해결할 부분이라고 본다.

## 2) 아이돌보미 조사 분석

아이돌보미 중 2,435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43.54세이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0대, 30대 순으로 활동 돌보미 중 약 80% 가량이 40~50대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자녀양육이 끝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모집하는 점을 반영하기도 하며, 양육경험을 살린 취업욕구를 반영하기도 한다.

〈표 4-34〉 아이돌보미 연령

연령대	빈도	백분율(%)
20대	13	0.5
30대	284	11.7
<b>40대</b>	<b>1,077</b>	<b>44.2</b>
<b>50대</b>	<b>921</b>	<b>37.8</b>
60대	123	5.1
무응답	17	0.7
합 계	2,435	100

〈표 4-35〉 아이돌보미 학력 수준

	무학	초등학교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졸업이상	무응답
아이돌보미(2,435명)	3	56	238	1,447	377	290	24
비율(%)	0.1	2.3	9.8	59.4	15.5	11.9	1.0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분들이 5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전문대졸 이상도 27.4%로서 활동하고 있다.

자녀양육경험은 98.7%가 경험이 있으며, 약 50% 가량이 가정주부였으며 일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2,435명 중 나머지 50% 가량은 아이돌보미 활동 이전에 일한 경험이 있었으며, 직업군으로는 전문직 11.7%, 자영업 11.3%가 높게 나타났다.

〈표 4-36〉 자녀양육 경험

	없음	1명	2명	3명이상	무응답
아이돌보미(2,435명)	26	268	1,628	507	6
비율(%)	1.1	11.0	66.9	20.8	0.2

〈표 4-37〉 아이돌보미 활동과 유사한 직업에 종사한 경력

	없음	1년 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5년미만	5년 이상	무응답
아이돌보미(2,435명)	1,222	291	260	185	130	214	133
비율(%)	50.2	12.0	10.7	7.6	5.3	8.8	5.5

〈표 4-38〉 아이돌보미 가정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소득	빈도	비율(%)
100만원 미만	433	17.8
150만원 미만	277	11.4
200만원 미만	370	15.2
250만원 미만	287	11.8
300만원 미만	362	14.9
350만원 미만	201	8.3
400만원 미만	190	7.8
450만원 미만	98	4.0
450만원 이상	132	5.4
무응답	85	3.5
합 계	2,435	100

아이돌보미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1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50~20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순으로 조사되었다. 아이돌보미 이외 다른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5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로 취업하게 된 경로는 '가족, 친구 등 주변소개'가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구인정보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로 취업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게 된 동기로는 '원하는 시간에만 일을 할 수 있어서' 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이돌보미의 활동 연령대가 40~50대가 주로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집안일과 병행할 수 있는 주부들이 아이돌보미를 직업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8.0%로 나타났다.

〈표 4-39〉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 동기

활동 동기	돌보미 수	비율(%)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137	5.6
원하는 시간에만 일을 할 수 있어서	1,107	45.5
다른 일보다 수입이 괜찮을 것 같아서	32	1.3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925	38.0
기타	210	8.6
무응답	24	1.0
합 계	2,435	100

소득과 관련하여 보면 이들의 소득은 유급 자원봉사수준으로 60만원 미만이 64.7%이고, 100만원 이상은 5.5% 수준밖에 되지 않은 열등한 수준이다. 따라서 급여 대한 만족도 역시 58.6%가 불만족이다. 그들이 원하는 월평균 희망 임금은 97만원이고 시간당 활동비는 7천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10)

〈표 4-40〉 아이돌보미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	돌보미 수	비율(%)
60만원 미만	1,576	64.7
60~80만원 미만	420	17.2
80~100만원 미만	245	10.1
100~120만원 미만	67	2.8
120~140만원 미만	33	1.4
140~160만원 미만	16	0.7
160~180만원 미만	6	0.2
180~200만원 미만	7	0.3
200~200만원 이상	4	0.2
무응답	61	2.5
합 계	2,435	100

아이돌보미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간은 ‘11시간~20시간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희망활동시간은 이보다 높은 ‘21시간~30시간 이하’, ‘31시간~40시간 이하’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제로 원하는 만큼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4.5%로 볼 때 실제 활동하고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하는 시간만큼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용자가정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일을 하고 싶으나 활동할 가정이 없어서’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4-41〉 일주일 평균 활동시간

활동시간	현재 활동시간		희망 활동시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시간 이하	607	24.9	200	8.2
11시간 ~ 20시간 이하	880	36.1	499	20.5
21시간 ~ 30시간 이하	431	17.7	650	26.7
31시간 ~ 40시간 이하	241	9.9	630	25.9
41시간 이상	198	8.1	425	17.5
무응답	78	3.2	31	1.3
합 계	2,435	100	2,435	100



〈표 4-42〉 원하는 시간만큼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

원하는 시간만큼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	돌보미 수	비율(%)
이용자가정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578	43.6
일을 더하고 싶으나 활동할 가정이 없어서	509	38.4
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을 더 내기 어려워서	159	12.0
일이 힘들어 더 활동하기 어려워서	34	2.6
기타	40	3.0
무응답	5	0.4
합 계	1,325	100.0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며 어려웠던 점 1순위는 ‘활동 중 이동거리, 교통편 등의 불편함’, 2순위는 ‘돌보기 어려운 까다로운 아동’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3순위에서는 ‘직업으로서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이 없음’으로 조사되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며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은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5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4-43〉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며 어려웠던 점

	1순위	2순위	3순위
이용자가정과 문제 (까다로운 요구, 무례함 등)	483(19.8%)	242(9.9%)	209(8.6%)
활동 중 이동거리, 교통편 등의 불편함	502(20.6%)	384(15.8%)	268(11.0%)
돌보기 어려운 까다로운 아동	490(20.1%)	450(18.5%)	234(9.6%)
활동 시 식사문제	236(9.7%)	<b>384(15.8%)</b>	<b>350(14.4%)</b>
돌보미들 간의 경쟁과 비교에서의 불편함	19(0.8%)	40(1.6%)	56(2.3%)
아이돌보미 담당자와의 관계에서의 불편함	2(0.1%)	11(0.5%)	17(0.7%)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함	94(3.9%)	251(10.3%)	235(9.7%)
직업으로서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이 없음	358(14.7%)	277(11.4%)	<b>420(17.2%)</b>
기타	3(0.1%)	1(0%)	0(0%)
무응답	248(10.2%)	395(16.2%)	646(26.5%)
합 계	2,435(100%)	2,435(100%)	2,435(100%)

〈표 4-44〉 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

가장 필요한 지원	돌보미 수	비율(%)
안정적인 소득보장	1,352	55.5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적용	488	20.0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홍보	168	6.9
아이돌보미 활동에 대해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활동	130	5.3
전문 직업훈련(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교육 등)	220	9.0
무응답	77	3.2
합 계	2,435	100

아이돌보미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이 현장에서 대체로 활용이 가능하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58.5%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시 1순위로 ‘아동발달, 연령별 특성 등에 대한 전문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 강화가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영역별 활동교육’이 39.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현장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필요가 아이돌보미에게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표 4-45〉 교육 시 강화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

교육 시 강화되어야 할 내용	1순위	2순위
아동발달, 연령별 특성 등에 대한 전문교육	1,163(47.8%)	489(20.1%)
아이돌보미로서의 자존감 향상교육 및 자세에 대한 교육	325(13.3%)	318(13.1%)
고객과의 관계 맺기,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	238(9.8%)	332(13.6%)
파견 전 아이돌보미 관련 현장실습	97(4.0%)	188(7.7%)
영역(신체, 인지, 언어, 사회정서, 표현 등)별 활동 교육	518(21.3%)	953(39.1%)
무응답	94(3.9%)	155(6.4%)
합계	2,435(100%)	2,435(100%)

## 6. 소결

포괄적인 자녀양육서비스는 시설중심 보육과 함께 가정 내 자녀양육을 부모 또는 다양한 가정의 형태와 일터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자녀양육과 관련한

육구들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는 자녀의 행복추구권과 함께, 부모권, 만족한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족지원서비스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와 정부의 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통한 인구의 적절성과 노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삶 뿐 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국가적 면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하는 부분인 것이다.

비록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를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일지라도, 영아기(0세-2세미만)의 자녀들이 부모 또는 부모역할을 대행하여 가정에서 양육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부모에게는 양육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자녀양육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설보육과 함께 새로운 자녀지원서비스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2009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229개 기관을 중심으로 95만 건 이상의 서비스를 받은 가정과 아이돌보미의 조사가 있어,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해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자료에서는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을 통해, 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요구가 매우 높고, 특히 시간수가 매우 부족한 면과, 더 많은 요구가 있는 점, 맞벌이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점, 한부모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특별돌보미의 파견-기관, 전염성 질환에 대응, 긴급한 상황 등을 위한 노력들은 앞으로 가정 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양육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녀 양육 돌봄에 활용될 수 있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그들의 보수 등이 유급 자원봉사 수준이며, 여성의 경력을 활용하되, 노동성이 보장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졸이상의 유능한 여성들이 98%이상의 자녀양육 경험을 전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의 육구를 기반으로, 아이돌보미 전문성 교육과 자격 유지 관리, 보수교육, 보수 등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또한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 Ⅲ. 경기도 보육교사 운영 실태 분석

#### 1.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소개

2008년 1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맞벌이 가정 및 취업여성의 보육문제 해소를 사회/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정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인이 출산, 육아 경험이 있거나 어린이집 현장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 자격을 이 주어지며, 지역보육센터에서 면접과 함께 40시간 이상의 직무 연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경기도민이면서 36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이나, 만5세까지 연장 보육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가정보육교사의 역할은 가정을 방문하여 1:1 맞춤형으로 영아를 돌보아 주는 것으로 국가에서 개발한 영아표준 보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발달단계에 맞게 보육을 실시한다. 자녀의 교육과 함께, 영아의 주 활동 공간의 청소와 장난감 세척, 젖병 소독, 목욕시키기 등의 활동, 이유식과 식사제공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보육계획안과 하루일과 등의 내용을 부모에게 매일 전달하는 등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현재 아이돌보미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부모들은 어느 부모나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신청한 부모와 교사의 지역 과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상호 면접 후 계약하며, 약속된 날로부터 가정을 방문하며 보육을 시작한다.

홈페이지는 경기도 보육정보센터([www.educare.gyeonggi.go.kr](http://www.educare.gyeonggi.go.kr))로 이곳에서 온라인 신청을 한다.

## 2.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의 보육료 현황

8시간 보육기준으로 했을 때 보육교사는 1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 비용구성은 부모부담금 579,000원, 활동지원금 179,000원, 보육료지원금 251,000원이 된다.

보육료지원금은 여성이 취업했을 때와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되는데 아래와 같이 취업여성의 경우는 421,000원을 지원받는데, 12개월 미만 첫째아의 경우 취업지원금 76,000원, 이용지원금 175,000원, 보육교사활동 지원금 170,000원으로 구성된다. 12개월 미만이면서 둘째아의 경우는 취업여성 지원금 191,000원이 되어 총 536,000원의 지원이 경기도에서 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은 464,000원이 된다.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기도의 가구는 261가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서, 이용자가정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등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고소득 가정도 이용하는 점에 대한 면을 지적하고 있다.(서울경제신문,2009,10,14일) 특히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하여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등을 시도하였으나, 보육시설 연합회 등의 반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가정보육교사와 시설에 있는 보육교사의 업무상의 형평성이 되지 않은 점과 중상층대상의 지원이란 점 등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여성취업이란 현실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자녀 지원, 3세미만의 영아기 자녀발달지원이란 측면의 세 마리토끼를 잡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근거 법 없이 진행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

〈표 4-46〉 이용시간별 보육료 지원 금액 및 부모부담금

나이	출생 순위	8시간보육			9시간보육			10시간보육			11시간보육		
		보육료 지원금	활동 지원금	부모 부담금	보육료 지원금	활동 지원금	부모 부담금	보육료 지원금	활동 지원금	부모 부담금	보육료 지원금	활동 지원금	부모 부담금
0세	첫째아	251	170	579	251	170	679	251	170	779	251	170	879
	둘째아	366	170	464	366	170	564	366	170	664	366	170	764
1세	첫째아	152	170	678	152	170	778	152	170	878	152	170	978
	둘째아	253	170	577	253	170	677	253	170	777	253	170	877
2세	무관	56	170	774	56	170	874	56	170	974	56	170	1,074
교사수령액		1,000	1,100	1,200	1,300								

나이	출생 순위	4시간보육(60%)			5시간보육(70%)			6시간보육(80%)			7시간보육(90%)		
		보육료 지원금	활동 지원금	부모 부담금	보육료 지원금	활동 지원금	부모 부담금	보육료 지원금	활동 지원금	부모 부담금	보육료 지원금	활동 지원금	부모 부담금
0세	첫째아	150	102	348	175	119	406	200	136	464	225	153	522
	둘째아	219	102	279	256	119	325	292	136	372	329	153	418
1세	첫째아	91	102	407	106	119	475	121	136	543	136	153	611
	둘째아	151	102	347	177	119	404	202	136	462	227	153	520
2세	무관	33	102	465	39	119	542	44	136	620	50	153	697
교사수령액		600	700	800	900								

- \* 보육시간 옆의 %는 7시간 이하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비율임
- \* 위 금액은 주5일을 기준으로 함
- \* 추가보육료 : 시간당 6,000원
- \* 취업여성이 아닌 경우 취업여성지원금의 금액이 자부담으로 산정됨
- \* 어린이집에 등록되어있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음

〈표 4-47〉 자녀연령별 지원비

영아월령	출생순위		이용부모	가정보육교사
	취업여성보육료지원	이용지원금	활동지원금	
12개월 미만	첫째아	76,000원	175,000원	170,000원
	둘째아		191,000원	170,000원
24개월 미만	첫째아	67,000원	85,000원	170,000원
	둘째아		168,000원	170,000원
36개월 미만	무 관	미지원	56,000원	170,000원

## IV. 사회적 일자리로 “YMCA 아가야” 사업

### 1. 사회적 일자리의 의미와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YMCA아가야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업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출산과 양육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차원에서 양육의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동시에 여성에게 경제적 독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아동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첫째는,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로 아동 양육 서비스 제공은 공익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익성의 충족이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규모나 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시장 개척과 공급모델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인 노동시장의 진출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이들이 노동을 통하여 자립적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회전체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유형으로서 아동 양육 서비스 제공은 전체 일자리의 파이를 키우며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공익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양육의 지원이 절실하면서도 고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장애여성의 출산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이나 특별한 양육의 배려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아동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 세력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2. YMCA아가야 사업의 구성<sup>33)</sup>

현재 YMCA 아가야 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33) 참조: [http://www.ymcaagaya.kr/images/sub02\\_01.jpg](http://www.ymcaagaya.kr/images/sub02_01.jpg).

### 1) 시간제 열린 육아센터(공간)

시간제 열린 육아센터는 주부가 자기개발로 사회 참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거나, 오랜만의 친구 모임에 아이들을 마땅히 맡길 때가 없을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돌아와도 아이가 즐겁게 머무를 장소가 없을 때,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도 심심해하는 아이를 위한 놀이공간이 있었으면 할 때, 재택근무, 야근, 출장, 몸이 아플 때 등,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이 필요할 때 육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8시~오후8시까지(월요일~토요일) 이다.

영유아 공간 돌봄 서비스	초등 방과 후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최초의 시간제 열린육아센터</li> <li>•영유아 - 아동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운영, 자연친화적인 환경구성 및 교구 사용</li> <li>•맞벌이 가정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방학특별프로그램 실시</li> <li>•건강한 먹을거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 방과 후 교실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초등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li> <li>•초등학생 방학 특별프로그램 실시</li> </ul>

### 2) YMCA아가야 <가정육아교사> 자격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한 YMCA아가야에서는 지역사회실업 여성들을 모집하여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전문 가정육아교사를 양성하고, 교육 후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과 가정을 연계하여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YMCA 가정육아교사는 기초교육으로 6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교육 내용은 기초소양교육, MBTI를 통한 자기이해, 영유아의 발달 이해, 유아교육의 이해, 아동의 문제유형과 성격, 가정육아교사의 역할과 자세, 놀이의 이론, 풍선 만들기/손 유희/종이접기/인형 만들기 등, 직업의식교육, 영양관리, 의사소통 훈련, 영유아응급처치, 영유아 마사지, 아기체조, 응급처치 및 안정교육, 실습교육 및 일지작성 등이다. 그 이외에 YMCA 가정육아교사 실기교육으로 방송통신대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40시간의 자격증 과정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YMCA아가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정육아교사는 현장, 견학 체험 도우미 시터방학, 놀토 등 체험활동 도우미시터, 기관 파견 시터, 교회, 동우회, 친목회, 공



공기관 등 행사시 혼합연령지도가 가능한 파견시터, 및 보육시설 도우미시터 보조교사로 도움을 주는 보육시설파견 도우미시터 등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다.

### 3) 교육프로그램

YMCA아가야의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오르다, 타프라, 동화, 미술체험, 전래놀이, 공동체놀이 등 영유아~아동의 유의미한 놀이문화체험 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한다. 특별프로그램으로는 문화체험활동, 몸놀이, 미술체험활동, 과학활동, 부모교육 등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맞벌이가정을 위한 돌봄지원서비스-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방학 특별프로그램 실시한다.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아동양육서비스를 접근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유휴 인력인 여성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목적으로 하게 되므로 종사여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성인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칫 서비스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하는 아동이 서비스 제공의 객체화 되기 쉬우며 아동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 V. 민간 베이비시터 현황 분석

### 1. 민간 베이비시터 현황

민간 베이비시터 파견회사가 설립된 것은 1996년부터다. 당시 경제위기 이후 제도권 보육의 사각지대인 가정 내 보육을 대상으로 베이비시터를 소개하는 영리사업체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다. 1996년은 정부가 보육3개년확충계획에 의하여 보육의 양적 확충이 한참 추진되던 시기로 보육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되던 시기이었다. 그 후 보육시설 확충으로 공급이 확대되어 베이비시터 회사 설립이 주춤하다가 2000년대 초에 인터넷의 확산으로 일종의 벤처사업으로 다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베이비시터 파견업체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및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등록을 하고 있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그 원인은 직업안정법이 요구하는 사업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문희, 한국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2007, 56-58).

현재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는 그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베이비시터와 같이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소개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을 대상으로 홈 아웃소싱 성격의 포괄적인 인력 파견을 하는 업체이다. 따라서 회사의 유형에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가 난다. 전자의 경우 베이비시터 소개 전문업체라고 하겠는데 제공하는 서비스는 업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매우 다양하며 일반 탁아 이외에도 가사도우미, 산후조리도우미, 실버도우미, 학습시터, 놀이시터, 현장학습시터 등 부모가 해야 하는 모든 관련 업무를 시터업무로 개발하여 제공한다. 이 이외에도 영어시터 파견이 있는데, 최근에는 영어권 외국인을 가정에 일정기간 동안 입주시켜 아동을 돌보면서 영어교육을 하도록 오피어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시터의 유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48〉 베이비시터의 서비스 내용분석

## ▶ 베이비시터의 유형별 서비스내용

일 반 베이비시터	0~3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유 및 이유식 만들기, 먹이기, 기저귀 갈기</li> <li>•낮잠 재우기, 목욕하기, 낮잠 재우기, 마사지</li> <li>•기타 아이와 관련된 일(우유병 세척 및 소독, 장난감 및 침구정리, 기저귀 빨래 등)</li> </ul>
	36개월~취학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사 및 간식 만들고 챙기기</li> <li>•학원 보내거나 집으로 데려오기</li> <li>•학습지 및 학원과제 챙기기</li> <li>•동화 읽기 및 놀이</li> </ul>
	취학 후 초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교, 등원 및 하교 챙기기</li> <li>•지나친 오락자제 및 생활관리</li> <li>•숙제 등의 간단한 학습 도움</li> </ul>
가사겸 베이비시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베이비시터의 제공 서비스는 기본 업무에 포함. ▶가사일은 정도를 정의해 두고 있음</li> <li>•정리정돈, 세탁기를 이용한 빨래, 설거지, 쌀 씻어 두기 가능</li> <li>•정리정돈의 경우 방바닥 및 서실바닥에 어지러워진 물건들을 한쪽으로 치워놓기 손빨래, 반찬 만들기, 담집질, 집안 청소 등은 제외부분 ▶제외 부분의 가사 일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 가사도우미를 따로 채용토록 제한함. ▶기타의 무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요구 시 회원자격 박탈</li> </ul>	
학습시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제 지도</li> <li>•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지도</li> <li>•과외는 전문 과외선생님의 영역이므로 서비스 제공하지 않음</li> </ul>	
영어시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놀이를 통한 생활영어</li> <li>•아이의 실력에 맞는 영어 노래 부르기, 영어 비디오 보기</li> <li>•영어로만 대화하며 시간보내기</li> </ul>	

## 2. 베이비시터 활동 분석

베이비시터 회사 및 비영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베이비시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베이비시터로서의 활동 경력은 최소 1개월에서 120개월까지 편차가 매우 컸으며, 평균 21.3개월의 경력이 있었다. 비영리 기관과 영리 회사 간 소속 베이비시터의 활동 경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영리기관(베이비시터 회사)

의 베이비시터는 활동경력이 평균 24.6개월임에 반해 비영리기관의 베이비시터는 평균 11.7개월의 활동경력으로 1년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최대 활동경력에 있어서도 비영리기관의 베이비시터는 72개월에 불과해 영리기관의 베이비시터와 약 4년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베이비시터가 영리기관의 사업으로서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4-49>참조).

베이비시터로 활동하기 이전의 직업에 관한 물음에서는 다른 직업이 없었던 경우가 31.6%이며, 보육교사, 학습지 교사, 이외 아동양육 관련 직업에 종사한 경우는 30.5%에 불과해 약 70%의 베이비시터가 현 베이비시터 업무에서의 경력이 아동양육 관련한 유일한 경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50> 참조).

〈표 4-49〉 베이비시터 활동 경력

(단위: 개월)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T
전체	21.3	17.6	1	120	(364)	
비영리	11.7	10.4	1	72	(94)	-6.4**
영리	24.6	18.4	1	120	(270)	

주 :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를 의미함.

자료 :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표 4-50〉 베이비시터 이전 직업

(단위: %(명))

구분	가사도우미	학습지 교사	보육교사	이외 아동양육 관련 직업	아동양육과 무관한 직업	없음	계(수)	X <sup>2</sup> (df)
전체	4.2	5.8	11.8	12.9	33.7	31.6	100(380)	
비영리	1.9	2.8	13.1	16.8	32.7	32.7	100(107)	6.3(5)
영리	5.1	7.0	11.4	11.4	34.1	31.1	100(27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제5장

## 가정 내 개별양육 서비스 제도화

I. 서비스 대상 아동과 종사자의 자격	109
II. 종사자 자격	111
III. 자격인증을 위한 교과과정	120
IV. 서비스 공급 기관	130
V.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142
VI. 가정 내 양육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153

## I. 서비스 대상 아동과 종사자의 자격

가정 내 자녀돌봄의 대상으로 아동은 출생이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종사자의 자격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부모적 특성과 그에 준한 전문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련의 자녀양육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서비스 대상 아동

서비스 대상 아동은 출생이후 만12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 아동의 경우는 현재 장애아동족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2010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에서는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영아보육의 경우는 3개월 이상이 넘어야 영아보육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초등학교 아동까지 돌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한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청소년기에도 부모의 도움이 요청되기 때문에 정서적 부모역할을 대신해줄 돌보미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하여 가족 내 자녀돌봄의 욕구는 다양한 자녀 연령에게도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 2. 개별양육 서비스 수요 측정

영아 가정 내 양육 파견돌보미의 이용 가능 아동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 0세아와 1세아는 아이돌보미 이용 가능성 5%, 최소 0.25%를 적용하여 추정함.
- \* 2세아는 최대 아이돌보미 가능성 3%, 최소 0.15%를 적용함.

2세는 보육시설 이용이 급증하는 연령임을 반영하여 수요 비율을 낮춤

110 「자녀돌봄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그 결과로 추정하면 영아 돌보미 수요는 26,000명에서 53,000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

2009년 전국실태조사에서 비혈연 이용률이 0세 3.5%, 1세 2.6%, 2세 1.7%인데, 공급이 확충되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용가능성 가정이 증가할 것을 년도별로 추정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0세 아동 수(추정)					취업모 비율	추계 기준	파견돌보미 이용가능성	필요 아동 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432,164	425,454	418,154	410,765	403,509	25%	최대	5%	21,608	21,273	20,908	20,538	20,175
						최소	2.5%	10,804	10,636	10,454	10,269	10,088
1세 아동 수(추정)					취업모 비율	추계 기준	파견돌보미 이용가능성	필요 아동 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435,030	429,072	422,414	415,170	407,838	29	최대	5%	21,752	21,454	21,121	20,759	20,392
						최소	2.5%	10,876	10,727	10,560	10,379	10,196
2세 아동 수(추정)					취업모 비율	추계 기준	파견돌보미 이용가능성	필요 아동 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438,779	433,984	428,042	421,401	414,176		최대	3%	13,163	13,020	12,841	12,642	12,425
						최소	1.5%	6,582	6,510	6,421	6,321	6,213
소계(추정)					취업모 비율	추계 기준	파견돌보미 이용가능성	필요 아동 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1,305,973	1,288,510	1,268,610	1,247,336	1,225,523		최대	4.3%	56,523	55,746	54,870	53,939	52,993
						최소	2.2%	28,262	27,873	27,435	26,969	26,496

## II. 종사자 자격

### I. 아이돌보미 자격 34)

#### 1) 아이돌보미 자격 신청요건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한 신청자격은 특별한 요건은 없다.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만 65세 이하 희망자를 아이돌보미 활동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필수 요건으로 하므로 일정한 경우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 **아이돌보미 신청 결격 사유**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한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부와 건강진단서 1부(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포함, 면접 통과 후 제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건강진단서의 경우 1년 단위로 사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활동성 B형 감염의 경우 전염 우려가 없으므로 의사 소견서 제출 시 활동 가능하다.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한다.

접수 서류심사(1차) 통과자에 한하여 범죄 경력·성범죄경력조회 및 면접을 실시,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등을 심사하도록 한다. 성범죄경력

34) 본 자료는 2010년 아이돌보미 운영매뉴얼에 근거함



조회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성범죄경력조회 방법**

- 관련규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2008.2.4부터 시행)
- 신청방법 : 관할 경찰서에 해당 기관의 장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요청
- 구비서류
  - ①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 ② 면접대상자 본인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돌보미 본인 작성)
  - ③ 사업자등록증(인·허가)사본 등 사업기관 증빙서류 1부
  - ④ 사업기관장의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부
  - ⑤ 면접대상자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부
- 경찰서 민원 대표전화(1566-0112)
  - : 성범죄경력 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로 문의

아이돌보미로 실제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양성교육과정 및 현장실습 과정을 수료하고 교육수료증을 수여받은 후 비로소 활동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학습보조를 위하여 학습 돌보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기관을 통해 학습 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 아동이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해당 지역 사업기관의 인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업기관에 지정돌보미를 신청하여 인근 지역 주민을 서비스 제공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돌보미는 인근의 사업기관에 채용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지정돌보미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 2) 아이돌보미 활동 및 자격의 제한

아이돌보미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과 종료 후 사업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며, 서비스 종료 후 활동일지 작성 및 고지하여야 한다. 활동일지는 1개월 단위로 사업관리시스템, 사업기관 방문, 이메일 등으로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활동일지에 작성된 활동상황을 이용가정에 고지하도록 한다. 돌보미가 활동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이용가정의 불평 신고가 3회 이상 접수 된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서약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총 6회) 1회 불참 시 경고 조치하며 2회 이상 불참 시 돌보미 활동을 중지 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가 사업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하였을 경우 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이 3회 이상 발생 시 활동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보수교육 불참으로 활동이 중지된 도우미가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신규양성교육의 50%를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 교육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현재 활동 중인 돌보미 중 만 65세 이상 돌보미는 매년 재 면접 실시를 통해 활동 적합 여부를 검증하여야 하며 최대 만 70세 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50시간은 의무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주말·공휴일, 심야에 20시간 활동 필수), 만일 의무 활동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기관은 해당 돌보미를 탈락조치 할 수 있다.

## 2. 사회적 일자리 YMCA 아가야 자격

베이비시터로서의 자격은 보육·교육 유자격자를 우선 채용하되, 저소득 실업 여성, 한부모, 실직 가장 여성, 고학력 실업여성, 20~50대 고졸이상 여성들로 그 대상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베이비시터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3개월 80시간의 양성교육과정과 1개월 30시간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보수 교육 및 놀이시터 교육 이수자는 놀이시터로서도 활동할 수 있다. 베이비시터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방문접수를 통해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사진 2매, 건강진단서(보건소 및 국공립병원), 기타 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개별 상담 후에 베이비시터를 선정하고 교육비를 입금 받을 수 있다. 베이비시터는 회비를 납부하며, 각 지역별 센터는 이를 시터들의 교육 및 활동에 사용한다.

월 회비는 월수입 20만원인 자의 경우는 받지 않고 있으며, 월수입 20만원~50만원은 1만원, 월수입 50~90만원은 2만원, 월수입 90만 원 이상은 3만원을 받고 있다. 또한 아가야에 회원으로 가입한 베이비시터는 돌봄 서비스에서 발생할 불의한 사고에 대비하여 ‘돌봄복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아가야 사업에서는 베이비시터 약관을 정하여 아가야 베이비시터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다. 약관에 명시된 회원이라 함은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당사 또는 지점에서 신청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에 한하고 있다. 이 때 회원은 정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지어 정회원은 1년 회비를 납부하고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비회원은 1년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이용약관 참조).

### 3.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기준

#### 1) 베이비시터 선발 조건

한국베이비시터 실태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서문희 외, 2007)에 의하면 대부분의 베이비시터 회사에서 베이비시터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면접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신분증 사본, 건강진단서, 신청서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보증인 란에 보증인이 확인되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한 후 회비 및 교육비를 내고 회원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마치게 된다.

위 조사에서는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에서 베이비시터 모집 시 학력, 경력, 연령 및 결혼상태에 특정한 조건을 두고 모집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 회사가 베이비시터 채용 시 연령과 경력을 고려하는 경우는 비교적 많은 편이나 학력이나 결혼상태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특히 결혼상태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 회사 중 16.1%에 불과하여 베이비시터의 조건으로 결혼 상태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전체 조사 대상 회사 중 31.2%에 달하였는데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고졸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각 회사들이 베이비시터 채용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연령기준으로 평균 23.5세에서 55.7세까지의 하한 및 상한 연령 기준이 있었다(<표 5-1>, <표 5-2>, <표 5-3>참조).

즉, 회사에서는 최소한 20대 초반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이상을 채용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고, 경력 여부를 채용 시 고려하고 있으나 결혼상태에 대한 제한은 극히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터의 연령을 볼 때 우리나라의 베이비시터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형태의 좁은 의미에서의 베이비시터라기보다는 내니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하겠다.

〈표 5-1〉 베이비시터 모집 시 연령 제한 여부

(단위: %, 세(명))

구분	제한함	제한 최소 연령			제한 최대 연령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96.8	23.5	5.4	(93)	55.7	3.3	(93)
본사	100.0	25.6	5.4	(14)	54.6	2.4	(14)
가맹점	97.1	22.6	4.9	(70)	55.8	3.4	(70)
단독	88.9	27.0	7.1	(9)	56.8	3.7	(9)
F			3.9*			1.1	

주: 1)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2)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5-2〉 베이비시터 모집 시 학력 및 경력 제한 여부

(단위: %)

구분	학력				경력		
	고졸 이상	전문대졸이상	제한 없음	계(수)	고려함	고려하지 않음	계(수)
전체	68.8	-	31.2	100.0 (93)	86.0	14.0	100.0 (93)
본사	71.4	-	28.6	100.0 (14)	78.6	21.4	100.0 (14)
가맹점	70.0	-	30.0	100.0 (70)	88.6	11.4	100.0 (70)
단독	55.6	-	44.4	100.0 (9)	77.8	22.2	100.0 (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5-3〉 베이비시터 모집 시 학력 및 경력 제한 여부

(단위: %(명))

구분	기혼 유아녀에 한함	기혼자에 한함	제한 없음	계(수)
전체	9.7	16.1	74.2	100(93)
본사	7.1	21.4	71.4	100(14)
가맹점	8.6	15.7	75.7	100(70)
단독	22.2	11.1	66.7	100( 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결과임.

베이비시터 채용 시 전문자격 소지자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자격이 없다고 차별되는 일은 거의 없다.<표 5-4>에 제시된 바와 같은 유치원·초등학교 교사·보육교사 간호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선호하는 자격조건이 없는 경우도 40.9%에 달하여 베이비시터의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이비시터에 대해 가장 선호하는 자격은 보육교사 자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베이비시터가 가장 많이 돌보는 연령대가 취학 전의 영유아에 집중되고 있어 베이비시터 회사에서는 영유아를 돌보는 인력으로서의 전문성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5-4〉 베이비시터 모집 시 선호 자격

(단위: %(명))

구분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기타	없음	계(수)
전체	23.7	6.5	55.9	8.6	1.1	40.9	100.0(93)
본사	21.4	7.1	57.1	14.3	-	35.7	100.0(14)
가맹점	27.1	7.1	55.7	8.6	-	41.4	100.0(70)
단독	-	-	55.6	-	11.1	44.4	100.0( 9)
$\chi^2(df)$	na	na	0.0(2)	na	na	0.2(2)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결과임.

그러나, 베이비시터회사는 베이비시터 모집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은 61.3가 '인성'을 꼽았고 그 다음이 시터 경력 25.85, 육아경험 10.8%이었다. 그 이외의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거의 없다(표 5-5 참조). 즉, 베이비시터 회사에서는 베이비시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학력이나 각종 자격증 등으로 표현되는 지식·기술적 전문성에는 크게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5-5〉 베이비시터 모집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단위: %(명))

구분	학력	시터경력	인성	육아관련자격증	가정환경	연령	육아경험
전체	1.1	25.8	61.3	-	-	-	10.8
본사	-	-	85.7	-	-	-	7.1
가맹점	1.4	31.4	54.3	-	-	-	12.9
단독	-	22.2	77.8	-	-	-	-
$\chi^2(df)$	na	na	0.0(2)	na	na	0.2(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결과임.

〈표 5-6〉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의 자격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별 자격 없음	계(수)
전체	8.8	2.6	7.6	81.1	100.0(93)
본사	9.1	2.9	9.5	78.5	100.0(14)
가맹점	9.1	2.5	7.1	81.3	100.0(70)
단독	5.9	2.3	8.3	83.4	100.0(9)
F	1.1	0.0	0.6	0.3	

자료 :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결과임.

〈표 5-7〉 등록된 베이비시터 중 공공기관 베이비시터 교육 경험자 수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20.6	25.9	0	100	(93)	40.1*
본사	37.5	34.4	0	100	(14)	
지점	18.4	23.6	0	90	(70)	
직업소개소	11.4	18.5	0	60	(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베이비시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보육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약 20%에 불과하였고 이중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비영리기관에 소속된 자격 소지 베이비시터의 경우 그 자격은 대부분 보육교사 자격증이었다(표 5-8 참조).

〈표 5-8〉 조사된 베이비시터의 보육관련 자격

(단위: %(명))

구분	없음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등학교 교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계(수)
전체	79.9	13.8	2.6	1.3	1.3	0.5	0.5	100(378)
비영리	79.2	18.9	0.9	-	0.9	-	-	100(106)
영리	80.1	11.8	3.3	1.8	1.5	0.7	0.7	100(27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 4. 소결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단체에서 인증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돌봄 대상 자녀로 하는 범위는 0세아에서 부터 만12세 미만의 초등학교 재학중인 아동까지 포함하고, 또한 아이돌보미는 반드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의 지휘를 받아 아동에게 개별화된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제도, 사회적 기업인 YMCA 아가야 사업 및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에서도 각각 아동에게 개별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자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 제도의 법제화에서도 이들에게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필수적인 자격조건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아이돌보미의 연령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재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최종적으로 70세까지 활동 가능 연령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적 기업인 YMCA 아가야 사업은 20세에서부터 50세를 기준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에서는 40대에서부터 50대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의 하한선의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은 만 65세 이하를 신청자격의 원칙으로 할 뿐 하한선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YMCA아가야 사업은 20세부터 50세를 기준으로 하여 20세를 하한선으로 볼 수 있다. 영리 기관의 베이비시터는 중에서 직접적인 아이 돌봄을 주로 하는 전형적 의미의 베이비시터 외에 학습·놀이 등을 지도하는 학습시터, 놀이시터, 영어시터 등은 21세로 낮은 연령층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법제화 대상인 아이돌보미 사업은 일면 아동에게 최선의 양육 서비스를 가정 내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있으나, 동시에 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돌보미의 역할이 반드시 직접적 양육의 의미 이외에 좀 더 광범위하게 학습 지원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역할을 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으로 고려할 때, 연령조건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미성년자가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성년이 된 자는 원칙적으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법안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여성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저소득층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금치산자,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자 등에는 결격사유를 두어 제한한다. 이 점은 현재 여성가족부



가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자격요건을 참조하면 될 것으로 본다.

아이돌보미에게 일정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들 자격증에 수여와 조건이 문제될 것이다.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격증을 수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일회 취득으로 항구적인 자격을 줄 것인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을 가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일정한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경우 기간이 만료될 때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다시 갱신하고자 할 경우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전제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제한을 둘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는 3년에서부터 5년 정도의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Ⅲ. 자격인증을 위한 교과과정 35)

#### 1.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 1) 자격증 교육 과정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여 활동하도록 하는 사업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돌보미에 대한 양성·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시간은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등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25시간 이수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특수교육 및 재활교육 전공자, 특수교사 등 장애아관련 학위 및 자격증소지자는 장애아 교육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돌보미의 교육기관은 시·도에서 지정한 별도 교육기관 또는 소권역별(2~3개 시군구)에서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수료증은 교육과정에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에 수여하며, 추가로 학습돌보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학습돌보미 양성교육과정 14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5) 2010년 아이돌보미 운영 매뉴얼 참고 함.

돌보미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는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 실습 완료 후 비로소 돌보미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장실습은 이용자 가정의 사전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후 사업담당자가 일정을 조율하고 진행한다. 현장 실습중인 교육이수자에게는 10시간 현장 실습에 대해 교통비 포함 3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 아이돌보미 교육과정1: 기본교과과정

회기	교육내용	시간	공통	25시간	양육	학습
1회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기본업무 및 서비스 기본예절	2	○	○		
2회	돌봄 아동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아이돌보미의 자세	"	○	○		
3회	아동인권과 권익보호	1	○	○		
4회	MBTI 검사 및 지표설명	2	○			
5회	MBTI를 통한 성격의 이해	"	○			
6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	○	○		
7회	다문화가족의 이해	"	○			
8회	다문화 가족 자녀의 이해	"	○	○		
9회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 발달의 이해(1)	"			○	
10회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 발달의 이해(2)	"			○	
11회	도래문화의 이해와 적응	"	○			
12회	문제행동의 발견	"	○	○		
13회	가정에서의 안전 및 건강관리	"	○	○		
14회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방법 및 실습	"	○	○		
15회	기본생활 습관 지도방법	"	○	○		
16회	방과 후 생활지도	"	○	○		
17회	돌보미의 양육스타일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지도	"	○			
18회	독서지도	"	○			
19회	창작활동	"			○	
20회	음악활동	"			○	
21회	실내놀이 활동	"			○	
22회	장애부모 정서 및 장애가족지원의 이해	"		○	○	
23회	장애아동 일상생활 훈련	"		○	○	
24회	아이돌보미 정보화 교육	"	○	○		
25회	역할극을 통한 아이돌보미 활동 실습	1	○			
26회	아이돌보미 활동 사례 공유	"	○			
27회	아이돌보미 관련 토의 및 질의 응답	"	○			
28회	교과 및 숙제지도	2				○
29회	언어영역 지도 1	"				○
30회	언어영역 지도 1	"				○
31회	수·과학영역 지도 1	"				○
32회	수·과학영역 지도 2	"				○
33회	예체능영역 지도 1	"				○
34회	예체능영역 지도 2	"				○
총시간		50	36	25	14	14

## 2) 교육기관 지정과 취소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 지정 기준(예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교육 제공 능력 (20)	최근 3년간 교육서비스 제공내용	10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내용 및 종류 평가
	최근 3년간 교육 제공 실적	15	최근 3년간 제공된 교육서비스의 내용 등
	재정의 건전성	5	재정의 규모, 운용실태 등 평가
교육 운영 능력 (50)	교육 커리큘럼, 교육 강사진 구성 등	25	신청기관에서 마련하거나 발행한 커리큘럼 평가 및 교육 강사진 구성의 타당성
	강의실 운용 현황	10	강의실 개소 및 크기 등 운용현황 평가
	기타 관련 기자재 운용 현황	10	교육 실시를 위한 관련 기자재보유 현황 평가
	관리 인력 현황 평가	5	돌보미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직원 현황 등
재정 운영 방안 (20)	예산 운영 계획	20	교육비 산정의 타당성 및 예산 운영 계획 등
기타 사항 (10)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정 여부 등	10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 지정 여부, 지리적 접근성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평가
합 계		100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시·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 ①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 ② 교육기관 지정 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의 정당한 지시 및 요청에 불응한 경우
- ④ 여성가족부가 정한 서비스 표준 및 질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3) 보수교육과정

보수교육은 격월 1회(2~4시간)를 받도록 한다. 전체 보수 교육 중 4회 이상 필수 참석하도록 한다. 단, 서비스 연계로 보수교육 불참 시 교육자료(동영상강의, 책자 등) 자체학습 후 과제 제출로 참석 처리하도록 한다.

####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과정

월 별	교육주제
1	자녀 놀이지도
2	자녀 생활지도
3	자녀의 건강·영양 관리 실무(이유식, 간식 만들기, 식사지도)
4	교재교구 활용법
5	사례관리 기초
6	부모 및 아동과의 의사소통 기술
7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기술(예, 게임중독자녀, 장애아동)
8	장애 특성에 따른 대처 기술
9	아동 성교육 지도
10	가정 내 폭력 및 아동학대·방임의 실태와 대책
11	소근육·대근육 놀이지도
12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 아동의 심리

\* 0세아 돌봄 보수교육과정

회기	교육 내용	시간
1회기	아이돌봄미지원사업의 이해	2시간
2회기	0세아 발달의 이해1	2시간
3회기	0세아 발달의 이해1	2시간
4회기	0세아 기질과 상호작용	2시간
5회기	0세아 일과계획 및 운영 - 0세아 하루일과의 구성	2시간
6회기	0세아 돌보미의 역할	2시간
7회기	0세아 건강·영양·안전 관리	2시간
8회기	0세아 발달척도의 이해 및 행동관찰	2시간
9회기	0세아 관찰일지 및 활동일지 작성	2시간
10회기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실습과정1	3시간
11회기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실습과정2	3시간
12회기	0세아 일과운영 실습 -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낮잠재우기, 젖병소독 등	2시간
13회기	0세아 영양관리의 이론과 실제 - 수유 및 이유방법 - 식품제공 안전 등	2시간
14회기	0세아 신체발달을 돕는 베이비 마사지, 신체활동 실습	2시간
15회기	발달지원 활동(언어·인지, 사회·정서)	2시간
16회기	현장 활용 가능한 0세아 전통 육아 놀이 방법 실습	2시간
17회기	0세아 놀이지도 - 놀이감 만들기 - 놀이감을 활용한 상호작용 기법	2시간
18회기	부모 면담 방법	2시간
19회기	0세아 돌봄 사례공유 및 질의응답	2시간
총 시간		40시간

2. 사회적 일자리 YMCA 아가야 사업 교육과정

사회적 일자리로 YMCA아가야의 양육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은 보육·교육 유자격자를 우선 채용하되, 저소득 실업여성, 한부모, 실직 가장 여

성, 고학력 실업여성, 20~50대 고졸이상 여성들로 그 대상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베이비시터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3개월 80시간의 양성교육과정과 1개월 30시간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보수교육 및 놀이시터 교육이수자는 놀이시터로서도 활동할 수 있다.

〈표 5-9〉 YMCA아가야 베이비시터 양성과정교육 내용

구분	교육내용
이론 (30시간)	오리엔테이션, 기초소양교육, MBTI를 통한 자기이해, 영유아 발달 이해, 유아교육의 이해, 아동의 문제유형과 성격, 베이비시터의 역할과 자세, 놀이의 이론, 풍선 만들기/손 유희/종이접기/인형 만들기 등, 직업의식교육, 영양관리, 의사소통 훈련, 영유아 응급처치, 영유아 마사지, 아기체조,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 실습교육 및 일지작성 등
실습 (30시간)	현장실습

자료 : 아가야 홈페이지 참고 (<http://www.ymcaagaya.kr>)

### 3.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

#### 1) 교육현황

베이비시터에 대한 교육은 현재 민간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곳이 있고 이외는 대부분의 업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업체마다 많은 차이를 보인다. 회사에서는 대부분이 민간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간자격을 부여하는 업체로는 사이버 교육업체인 베이비시터자격개발원이 있다. 이곳에서는 25시간 30분짜리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간 자격 업체인 한국자격개발원과 연계하여 베이비시터 민간자격을 부여한다. 실습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희망하는 경우에 베이비시터 업체와 연계한다고 한다.

베이비시터 회사에서의 교육은 교육과정에 비교적 체계를 갖추려 하고 있다. 과거에는 시터로서의 의무 및 주의사항 및 일부 실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정

도였으나 최근에는 관련 교과목을 모두 다루려는 노력을 보인다. 그러나 교육 시간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 회사의 예를 보면 3시간 동안 교육에 10개 항목을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표 5-10> 참조). 이러한 교육은 아이 돌보기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표 5-10> 베이비시터 기본 과정 교육내용

	A업체
A업체	- 일반 과정(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비시터의 사회적 필요</li> <li>• 영유아 발달 이론</li> <li>• 영유아 영역별 발달 특성</li> <li>• 유아심리</li> <li>• 문제행동의 유형과 수정의 실제</li> <li>• 연령별 케어 포인트 1,2</li> <li>• 영양관리에 기초한 이유식</li> <li>• 연령별 놀이지도 1,2</li> <li>•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li> <li>• 시팅일지 작성법</li> </ul> - 전문가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 및 방법</li> <li>• 언어의 의미와 언어 영역 발달 과정</li> <li>• 언어 발달의 환경 만들기</li> <li>• 논리 영역의 의미와 논리 발달 환경 만들기</li> <li>• 창의력의 의미와 창의력 발달 환경 만들기</li> <li>• 외국어 교육의 의미와 외국어 환경 만들기</li> </ul>
B교육원	- 5과목 51강 25시간 309분 유아교육개론, 신생아 돌보기, 유아교육의 실제, 유아 놀이지도, 유아심리

자료: URL:<http://www.thesittertime.com>

베이비시터로 파견하기 전에 실시하는 초기 교육시간은 평균 14시간인데, 업체별로 최소 3시간에서 최대 40시간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본사의 경우가 가맹점이나 단독업체보다 시간을 좀 더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베이비시터 교육을 자체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90%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인사를 초빙하거나 외부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각각5.4%, 3.2%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본사의 경우에는 자체 직원 외 인사를 초빙하거나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하는 경우가 가맹점이나 단독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업체의 크기나 체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시터 교육 교재 이용에 있어서도 업체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본사나 가맹점의 경우 자체 제작한 교재 뿐 아니라 총연합회에서 공통으로 제작한 교재, 외부 교재 이용도 비교적 높은 비율이나 단독업체의 경우 약 78%의 업체가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의 업체에서 교육비를 회비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베이비시터가 받는 교육의 내용은 영유아의 발달, 심리, 교육 등에 관한 이론이 60%로 주가 되며, 이밖에 영양·이유식, 동화 구연·손 유희, 놀이교육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1〉 베이비시터 교육내용

(단위: %(명))

구분	이론	실무	영양·이유식	동화구연·손유희	건강안전	놀이교육	기타	계(수)
전체	60.2	20.3	2.3	00.8	7.5	6.8	1.5	100.0(133)

## 2) 사후관리 및 재교육

베이비시터에 대한 사후관리로 활동 후 보고, 응급 및 불만사항 처리 및 업체에서의 시터 재교육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활동보고는 비용 처리 문제와 직결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정한 보고를 지침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터 재교육은 사실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베이비시터 파견 전 실시하는 초기 교육 이외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전체 업체의 62.4%에 불과하였고, 실시하는 경우에도 평균 4.4개월에 4.5시간의 교육에 불과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표 5-12〉 참조).



〈표 5-12〉 재교육 실시 여부 및 그 주기와 시간

(단위: %, 개월, 시간(명))

구분	실시		실시 시 간격		실시 시 시간		(수)
	비율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2.4	(93)	4.4	3.4	4.5	2.8	(34)
본사	57.1	(14)	2.8	2.0	5.4	3.5	(5)
가맹점	64.3	(70)	3.6	2.4	4.4	2.8	(25)
단독	55.6	(9)	10.8	3.2	3.5	1.9	(4)
$\chi^2(df)$	0.5(2)		15.3**		0.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베이비시터 간 친목을 도모하거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정기 모임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베이비시터간의 자체모임은 96.8%, 회사가 주관하는 베이비시터 정기 모임은 91.4%가 없다고 답하였다.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베이비시터의 채용 및 파견 후에는 인력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 4. 소결 : 아이돌보미의 교육 기준

현재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교육은 대체로 서비스 제공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직접 교육과정을 수행하거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되어 위탁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교육 과정은 시·도에서 지정한 별도 교육기관 또는 소권역별로 통합하여 교육을 받도록 구성되어 있다. 반면 사회적 일자리인 YMCA아가야 사업은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두고 있으며, 방송통신대학교 연계하여 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의 경우에도 베이비시터 교육을 자체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90%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인사를 초빙하거나 외부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각각 5.4%, 3.2%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자녀돌봄지원법 (안)에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자의 교육을 어떻게 이수하도록 할 것인지는 위에서 제시된 예에 따라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자격교육 시간은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교육시간은 돌보미의 근로자로서의 위상 변화에 따라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내용은 안전관리와 응급처치기술, 식생활 관리, 위생과 질병관리, 아이돌봄,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격 부여를 위한 교육은 현 사업체 대표로 구성된 사업자 협회에서 초기교육,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사업체 대표로 구성된 협회에 아이돌보미 교육비용을 지원하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육아 인력 교육과 연계하여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실상 자체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에 충실함 등이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이면 교육기관으로 선정받기 희망하는 기관에 일정한 요건을 제시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고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 진다. 교육기관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최근 교육서비스 제공 내용, 교육 서비스 제공 실적 및 교육 커리큘럼, 교육 강사진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육, 아동 및 유아교육 관련 학과가 있거나 아동 및 가족, 사회복지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서 이러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육기관을 외부 전문 기관에 선정 의뢰하는 경우 보수 교육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 즉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은 월 1회 집단 보수교육을 실시하되 보수교육은 1) 보육, 아동 및 유아교육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2) 아동양육 및 가족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을 것이다.

## IV. 서비스 공급 기관

### 1.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 및 운영<sup>36)</sup>

#### 1) 아이돌보미 서비스 공급기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주체가 되어 위탁이 이루어진다. 아이돌보미를 파견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 기관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가족 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중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YWCA, YMCA, 여성노동자회, 여성단체협의회, 사회복지관 등이 해당한다. 다만, 시·군·구 내 대상기관이 없을 경우 인접 지역의 기관 중 선정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기관 평가 결과 및 취소 요건 등을 반영하여 심사하며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정기관에 “아이돌보미 사업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이다. 다만, 1년 이상 지정하더라도 매년 기관 평가는 별도로 실시한다.

#### 2) 신규 기관 지정 및 취소

사업기관 변경에 따른 신규 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지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 일간지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되, 2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사실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최소 7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기관 지정 신청서, 대표자의 경력 사항 1부, 가족돌봄사업 관련 업무 실적 증명 서류 1부, 사업계획서, 사업수행 계획, 아이돌보미 모집 및 교육·관리 계획, 아이돌보미 사회보험가입 등 근로조건,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의 경우 회칙·규약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선정기관은 신청기관의 가족 돌봄 서비스 제공 경력 및 능력, 아이돌보미 확보 및 교육·관리 능력, 임금 등 근로조건, 서비스 질 관리체계 등을

---

36) 2010년 아이돌보미 운영매뉴얼 등 참고

고려하여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전년도 사업 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서비스 수준 및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청에 불응할 경우 및 기타 사업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아이돌보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사업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제출서류 허위 작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지정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3) 서비스 사업기관의 역할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되면 아이돌보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1명을 각각 배치하고 있다. 전담인력은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2급 이상 등 아동양육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서비스 사업 기관의 주요 업무는 먼저, 아이돌보미 모집·교육 관리, 아이돌보미 홍보 및 모집 및 아이돌보미 보수 교육 실시를 담당한다. 또한 월별 사업 추진 실적을 사업지원기관 및 시·도, 시·군·구 담당공무원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업실적 및 아이돌보미 파견 현황, 이용가정 현황, 예산 집행 내역 등이 해당한다. 사업지원기관은 사업기관별 사업 실적보고서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 일지 및 활동상황 점검, 아이돌보미 간담회 실시, 간담회 실시 후 회의록을 작성·비치, 보수교육이 가능하며, 사업기관은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한 4대 보험을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보험의 가입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아가 아동에 대한 배상 보험은 제공기관에서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상해 보험은 4대 보험으로 같음하되, 4대 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공기관에서 상해 보험이나 별도 보상 대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아이에 대한 배상·상해 보험 및 돌보미에 대한 상해 보험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비상 연락 체계를 확립하며, 전담인력, 부모, 아이돌보미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상·하반기 모의 훈련 실시하도록 한다. 사업기관의 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하며(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 시·군·구에서는 중대사고의 경우 시도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통계를 관리한다.

서비스 제공 사업기관은 서비스 이용자 및 고객들의 민원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내부적인 민원관리기준을 정하고 이용자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민원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 제기된 민원은 지체 없이 접수 및 처리하도록 한다.

## 2. 사회적 기업의 개별양육 서비스 제공

위에서 살펴 본 아이돌보미지원사업과 달리 YMCA의 ‘아가야’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공익성을 담보하여 지역 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규모나 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시장개척과 공급모델로서 기여하며 일반 노동시장 진출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을 통해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과제로 한다. 이와 같이 전체 일자리의 파이를 키우면서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익활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YMCA가 전국적 조직을 이용하여 아동에 대한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민간 차원의 비영리 단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의 유형에 해당한다.

비영리 민간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의 유형으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한 또 하나의 예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실시하였던 보육도우미 사업이 그것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저소득층 대상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 또한 서비스 공급자인 실직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서비스 수혜자인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보육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간접적인 소득지원효과 및 경제활동 참여 여건이 개선되는 복합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구성하였다.

사업관리는 중앙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외에 6개 지부가 주체가 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전국 6개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되어 저소득 135가구에 무료 가정 보육사가 파견되었다. 보육도우미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여성장애인 가정이나 만 2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육은 영아를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보육하는 종일보육과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을 방과 후에 부모 귀가시간에 맞추어 보육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형태로 혼합적으로 제공되었다. 보육도우미를 모집 교육 훈련하는 것은 한국여성노동자회 각 지부별로 보육도우미를 모집 관리하였다.

### 3.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에 의한 개별양육서비스 제공

우리나라에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 대신 아동을 맡아봐 주는 방문탁아를 하는 베이비시터 파견회사가 처음으로 설립된 것은 1996년부터이다. 1996년은 정부의 보육3개년확충계획에 의한 보육의 양적 확충이 한참 추진되던 시기로 보육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되던 시기이었다. 그 후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또한 국가 경제위기 등으로 베이비시터 회사 설립이 주춤하다가 2000년대 초에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일종의 벤처사업으로 다시 설립되기 시작한 이후 2007년 약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5-13> 참조).

〈표 5-13〉 베이비시터 회사 설립연도

(단위: 개소)

구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
전체	1	13	11	13	11	10	16	13	5	(93)
본사	1	3	5	1	3	0	0	1	0	(14)
가맹점	0	8	3	10	7	9	16	12	5	(70)
단독	0	2	3	2	1	1	0	0	0	( 9)

베이비시터 파견업체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및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7년 조사된 업체 본사 중 100.0%, 가맹점 중 44.3%, 단독업체는 88.9%가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소로의 등록하고 있는 비율도 본사 중 71.4%, 가맹점 중에서는 28.6%만이 유료 직업 소개업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독 업체는 55.6%로 절반 가량만이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5-14〉 베이비시터 회사 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사업자 등록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그렇다	아니다	계(수)	X <sup>2</sup> (df)	그렇다	아니다	계(수)	X <sup>2</sup> (df)
전체	57.0	43.0	100.0(93)	18.9(2)*	37.6	62.4	100.0(93)	10.5(2)**
본사	100.0	-	100.0(14)		71.4	28.6	100.0(14)	
가맹점	44.3	55.7	100.0(70)		28.6	71.4	100.0(70)	
단독	88.9	11.1	100.0( 9)		55.6	44.4	100.0( 9)	

주: \*\*는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이렇게 사업자 등록 비율이나 직업 소개업으로의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특히 가맹점들의 사업자 등록 비율이 낮은 것은 많은 지점들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본사 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들이 직업 소개업으로의 등록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직업안정법이 요구하는 사업자 조건, 20m<sup>2</sup> 이상의 사무실 및 법으로 정한 상담원 1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본사가 직업소개업체로

등록을 한 경우에 지점은 별도로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베이비시터를 소개하는 서비스 연계 기관은 조직의 구성 및 인적·물적인 자원이 매우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본사와 단독업체는 78.6%, 77.8%로 거의 80%에 이르는 회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맹점의 경우 비교적 서울 소재지의 비율이 낮고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편이나 이도 대부분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다(<표 5-15> 참조).

〈표 5-15〉 베이비시터 회사 소재지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수)
전체	44.1	7.5	3.2	4.3	1.1	3.2	2.2	28.0	1.1	1.1	1.1	2.2	1.1	100.0(93)
본사	78.6	14.3	-	-	-	-	-	7.1	-	-	-	-	-	100.0(14)
가맹점	32.9	7.1	4.3	5.7		4.3	2.9	35.7		1.4	1.4	2.9	1.4	100.0(70)
단독	77.8	-	-	-	11.1	-	-	-	11.1	-	-	-	-	100.0( 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 4. 아이돌보미의 사업 기관

### 1) 서비스 연계 기관의 선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 내에서 개별적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 기관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과 같이 공공적 성격을 지닌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유사 지역사회 지원기능을 하고 있는 비영리 기구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 위탁 사업체로 지정한다. 이곳에서 아이돌보미를 등록하여 교육받도록 한다. 그리고 가정과 연계하여 양육 기능을 실시하고 돌보미 활동을 지도 감독하고 사후 관리한다. 또한 돌보미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돌보미나 파견 가정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유형으로 구성하여 가정 내 개별적 양육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의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으로 구성된 조직체가 아이돌보미호 활동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하고 교육하여 일반 가정에 연계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민간 영리 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회원 이상의 아이돌보미 수를 확보하고 이를 개별 가정에 전문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수익을 만들어 내는 구조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방식은 현재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로 다른 유형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어떠한 유형을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아이돌보미와 개별 가정을 연계할 수 있는 주체로 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 주관 기관 이외에 민간 영리 단체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일면 민간 영리 시장이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수용하면 장점은 서비스 연계 기관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규모의 확대가 질적인 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보여진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대부분이 영세하며 사실상 이들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적인 물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활동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 시장이 인적 공급이 더 원활하다거나,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거나 이들의 법적인 지위 보장이 더 잘 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 시장을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맞도록 일정한 요건을 제시하고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 시장을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 선정한다면, 단순히 일정한 수준의 요건을 갖춘 규모의 단체에 서비스 연계 자격을 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

루어지고 있는지, 이들 기관에 소속되어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는 자들의 법적인 지위 보장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도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을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수용할 경우의 문제점은 당사자들의 지위 이외에 또 다른 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미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은 영리 목적의 벤처 기업의 유형으로 최초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가가 이루고자 하는 양육의 공공성이라는 목적에 비교하여 부합하는 이념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것은 특히 현재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폐지하고 오로지 민간 차원의 영리 목적의 베이비시터 시장을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공공 서비스적 특성의 아이돌보미 사업과 영리 사업이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을 하나의 관리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양자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도리어 양자의 이질적 속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관리의 기준을 도입하는 어려움이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위의 현황 검토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 시장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다. 이 경우 이들 베이비시터 연계 사업자를 여성가족부의 관리 대상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 연계기관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이들 기관이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으로 지원 선정되는 경우에는 민간 영리 기관이 국가 공공서비스 사업의 위탁기관으로 활동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공공재와 민간 자원의 구별이 어려워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 서비스로서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일정 소득군 이하에서는 비용의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 수혜계층을 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영리 베이비시터 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영리 베이비시터 시장의 활성화를 도리어 저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재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 시장이 인적·물적인 차원에서 공공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사업 등에 비교하여 월등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할 때 현 단계에서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 서비스 연계 기관과

지 여성가족부가 관리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 기관의 종류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민간 영리기관은 서비스 연계 기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의 유형으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연계하는 YMCA와 같은 공익적 성격의 민간 비영리 단체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들 기관이 사회적 기업의 유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도 아동에 대한 양육 서비스 제공의 특성상 요구되는 아동인권보장 차원의 기준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서비스 연계를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개별 양육 서비스 제공자의 아동에 대한 책임의 범위 기타 아동 안전을 위한 장치 등이 완비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여성가족부가 위탁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을 그 위탁 기관, 사업 규모,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 개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 시장을 여성가족부 관리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가장 적절한 서비스 연계 방식에 해당할 것이다. 우선은 도시를 중심으로 시군구에 1개소를 목표로 한다. 아이돌보미 사업체에는 상근자 1인 이상이 필요하고, 직무 관련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상담이나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공간, 교재교구 수납공간 등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

## 2) 서비스 연계기관의 기능

사업자는 사업 개시 시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후에도 연 1회 정도 경영자 연수회 등의 형태로 교육한다. 이 역시 관련 단체에서 담당한다. 사업체에는 대표 이외에 상근자 1인 이상이 필요하고, 양육(보육)현장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 자녀교육관련 전문가가 업무수행에 적절하다. 사무실 외에 직무 관련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상담이나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공간, 필요에 따라서 교재교구 장난감 수납공간 등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

인적 구성은 기본적으로 센터장과 on-line 연계 업무 담당자, off-line 상담자, 가정보육교사의 자기집 보육 방문지원과 관리 감독 담당자, 기타 일반 관리 직원이다. 사업들은 상근자가 모두 담당할 수도 있으나 비상근 업무 담당자를 고용하여 담당케 할 수도 있다. 특히 가정을 순회하며 관리하는 업무는 전문 양육의질 평가업무 경험자를 비상근으로 고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아이돌보미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의 성격과 같다.

센터장은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리더쉽이 있는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 즉 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모나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리더쉽과 소양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On line, Off line 상담자 역시 영아 보육의 경험이 있으면서 가정 내 보육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센터장과 상담자 모두 운영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 업무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아동가족학, 교육학, 사회복지 등을 전공하였거나, 2년 이상의 보육현장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가 업무수행에 적절하다.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업무수행 관련 심의기구이며 동시에 육아지원 업무의 자체 평가를 위한 중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On line과 Off line 상담자, 아이돌보미 대표, 이용자인 부모, 지자체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본기관의 업무를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 보육지원기관(어린이집, 소방서, 병원 등) 종사자와 양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보육의 질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다.

아이돌보미 사업체에서는 아이돌보미를 등록하여 교육받도록 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보육 기능을 실시하고 돌보미 활동을 지도 감독하고 사후 관리하며 돌보미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또한 돌보미나 파견 가정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다. 사업체의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이돌보미 관리이다. 이

들을 잘 교육하여 자부심을 갖고 활동에 임하도록 하는 일은 보호를 받는 아동과 그 가정 및 아이돌보미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아이돌모니 파견 사업체는 인터넷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여 교육하고 관리한다. 아이돌보미 제도를 홍보하고 양육 가능한 유자격자를 등록시킨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보미 근무 지침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월 1회 월례 모임의 형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각 가정의 사례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도우미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의 공동 협력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도우미간의 연계를 지원한다.

둘째, 자녀 가정 내 양육을 필요로 하는 가정과 아이돌보미를 연결해 주고, 아이돌보미의 활동을 관리한다. 일정 기간을 두고 아이돌보미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활동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또한 포괄적 서비스의 개념을 가지고 지역 지원을 개발하여 양육서비스 이외에 가정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가정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사업 주체가 자녀양육 지원 기능으로 on-line, off-line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돌보미 파견 가정 부모에게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off-line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넷째, 보육료 수납 및 돌보미 급여를 지급한다. 안전사고 관련 및 기타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지원한다. 돌보미의 질병, 응급사태, 휴가 시 대체인력지원 등을 담당한다.

### 3) 서비스 연계기관의 비용 지원

아이돌보미 위탁 사업체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위탁 사업체의 최소의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여기에는 아이돌보미 상해보험, 아동배상보험 등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과 운영자 인건비가 포함된다.

둘째, 근로자로서의 처우와 중장기적으로는 최소 단시간 근로자 형태로라도 고용하여 일정한 고정급을 보장한다. 현재는 아이돌보미의 급여는 정해진 근로 시간에 따라 일정액으로 정하는 일시 고용의 형태로 하고, 시간제, 종일제 등 여러 유형별로 처우 수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그러나 아이돌보미의 근로자로서의 위상은 낮고 보호의 범주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업체가 지원금으로 인증 아이돌보미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정도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파견기관이 아이돌보미를 고용하여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최소한 단시간 근로자로서의 위상이라도 확보하도록 한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의 보호가 가능하고 4대 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대상에도 포함 가능하다.

셋째는 아이돌보미 이용에 소요되는 부모 부담 비용인데, 이는 차등보육료 형태로 소득계층별로 차등화 하여 정부가 지원한다. 현재 보육시설과 유치원 중심으로 부모의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가 인증하는 아이돌보미와 같은 개별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영아에 우선 적용하고 차상위 이하 소득계층 아동부터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육비 지원, 양육수당과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보육료가 전자비우체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므로 다양한 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하나의 체계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 4) 민관협력 사업자 단체 구성

지원체계로 사업기구로 구성된 중앙 및 지방 아이돌보미 파견 관련 단체를 둔다. 이 아이돌보미 기관 관련 협회는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와 사업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 아이돌보미, 이용자 가정, 기관운영, 중앙,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대표기구로서 활동한다.

#### 5)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 지원

현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의 전반적인 사업개발과 매뉴얼, 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아이돌보미 인력 교육과 자격 인증 업무를 담당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각종 지침이

나 기준 등을 개발하여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를 연계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앙거점기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체 경영자 교육도 담당한다.

## V.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 1. 아이돌보미 사업과 안전기준

현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아이에 대한 배상·상해 보험 및 돌보미에 대한 상해 보험 가입하고 있다. 또한 비상 연락 체계를 확립하여 아이돌보미 사업 연계 기관의 전담인력, 부모, 돌보미와의 비상연락망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모의 훈련 실시하고 있다. 사고 보고체계를 위하여 사업기관의 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구에서는 중대사고의 경우 시도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통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2010년4월 현재 아이돌보미 보험가입현황

종사자수	산재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고용보험가입자	국민연금가입자
5,666명	422명	66명	384명	66명

\*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 소정 근로기간이 1월 이상,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

\*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 소정 근로기간이 1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월 평균 80시간 이상 근무자 비율 : 57.4%('09년기준)

### 2. YMCA아가야 사업 안전기준

YMCA 아가야 사업에서는 단순히 배상 보험 가입이외에 아동안전 관리의 책

임 소재를 귀속시키고 있다. 즉 베이비시터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나 상해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베이비시터는 업무 중에 강도, 절도, 사기, 폭력행위 등을 행함으로써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과 당사에게 입힌 재산상, 신체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고, 베이비시터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시터가 책임을 진다고 약관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센터도 베이비시터의 등록정보를 포함한 베이비시터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베이비시터가 제공한 개인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 3.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의 안전기준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결과 가입한 보험의 종류를 보면 아동, 시터,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험 등인데, 이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험이 전체의 78.5%로 가장 많았으나, 단독업체의 경우는 절반가량인 55.6%만이 아동 대상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표 5-16〉 베이비시터 회사가 가입한 보험과 그 대상

(단위: %(개소))

구분	아동대상 보험	시터대상 보험	회사 보험	기타	계(수)
전체	78.5	6.5	12.9	4.3	100.0(93)
본사	78.6	14.3	14.3	7.1	100.0(14)
가맹점	81.4	5.7	14.3	4.3	100.0(70)
단독	55.6	-	-	-	100.0( 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결과임.

한 본사 사례를 보면, LIG 손해보험의 플러스메티칼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정회원 자녀들에 한해 보험 서비스가 제공되며 상해보험의 유효한 적용시간 범위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시간 범위 내로 한정된다.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베이비시터가 돌보는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사망, 후유장애 시 최대 5,000만원을 보상한다(<표 5-17> 참조).

〈표 5-17〉 LIG 손해보험 플러스메디칼 단체보험 내용

내용
- 실제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던 시간 중에 발생할 지도 모를 자녀의 상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사는 정회원 자녀들에 한해 손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유효한 적용시간 범위는 당사의 승인을 받아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시간 범위 내로 한정됨.
주요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 사망 후유장애시 최대 5,000만원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함. 2.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함.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자료: URL: <http://www.babysitter114.com/>

## 4. 아이돌보미 사업의 아동 보호 기준

### 1) 가정 내 안전사고 현황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집계한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에<sup>37)</sup> 의하면 식료품이나 기호품을 비롯해 차량 및 승용물과 화장품이나 미용기구 등에 의한 발생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생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안전사고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경우 가정 내에서의 사고가 다른 장소에 비해 월등이 높았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위해발생 역시 10세 미만의 어린이들과 같이 가정 내에서의 사고가 다른 장소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원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37) [http://www.wolyo.co.kr/wolyo/bbs/board.php?bo\\_table=gg&wr\\_id=55](http://www.wolyo.co.kr/wolyo/bbs/board.php?bo_table=gg&wr_id=55).

것은 식품으로 인한 사고로 나타났다. 식품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취약계층은 인지와 분별력이 부족한 10세 미만 어린이로 식품안전사고의 26.9%를 차지했으며, 이러한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이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보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접수된 위해정보는 17,639건으로 2005년에 비해 42.12%나 증가했다. 이중 통계분석 유효건수인 14,836건을 분석한 결과 식료품과 기호품이 19.86%인 총 2,974건으로 위해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토지, 건물 및 설비가 15.8%인 2,338건, 스포츠, 레저, 취미, 놀이용품이 14.1%인 2,098건, 차량 및 승용물에 의한 사고가 11.1%인 1,641건, 보건·위생용품이 7.1%인 1,058건의 순이었다. 식료품 중에서는 빵 및 과자류에 의한 위해가 15.5%인 4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란 및 유란류 가공식품이 12.9%인 381건, 어패류 및 어패류 가공식품이 12.5%인 368건, 음료가 11.9%인 351건으로 드러났다.

식료품에서 섭취에 따른 위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패, 변질과 이물질 혼입으로 드러나 소비자와 제조 및 유통업자들의 사전·사후적 조성과 예방이 최선임이 확인됐다.

안전사고 위해발생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26.9%인 3,99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대가 15.9%인 2,354건, 20대 14.1%인 2,093건, 40대 10%인 1,488건, 10대 7.8%인 1,157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30대에 비해 약 1.7배, 20대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아 위해요인에 매우 취약함을 드러냈다.

이는 2003년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와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추진이후 10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해요인으로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이 19.78%인 2,934건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했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경우 문에 끼이는 압쇄사고가 유난히 많았다. 특히 특이체질로 인한 알러지 및 부작용이나 제품의 하자, 결함 및 취급부주의 등의 기타요인이 14.64%인 2,172건이나 차지했다.

특히 가정 내 안전사고는 전년 대비 6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 3년 연속 그 발생비율이 늘고 있다. 가정 내 안전사고는 2004년도 전체발생건수의 35.2%인 3,069건, 2005년에는 전체의 36.1%인 4,392건이었다. 가정 내 안전사고도 역시 식료품의 이물질 혼입 및 섭취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토지, 건물 및 설비와 관련해서는 계단추락, 욕실 미끄러짐 등의 위해사고가 많았다. 이곳에서도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6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중 64.3%인 2,566건이 60세 이상 안전사고 중에서는 58.4%인 598건이 발생했다.

## 2) 아동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방식

### (1) 민간영리베이비시터 계약과 아동안전의무

이와 같이 가정 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안전 배려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그 책무의 범위가 명확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이나, YMCA아가야 사업 및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 시장은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이 사업의 안전기준은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나마도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 시장의 경우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가입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상해보험에 의한 손해배상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 사후적 정리방식에 해당한다. 또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만으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사적 배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에게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안전책임의 소재는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이돌보미가 활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정도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에 개별적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와 소재가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본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계약에 따라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자에게 그 급부가 되는 돌봄노동과 이

에 따른 부수적 주의 의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적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 시장을 통하여 아동에 대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현재 민간 베이비시터를 소개하는 서비스 연계 기관들이 이들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인력 소개 정도에 그치는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는 법적으로 부모에 의하여 고용되는 고용계약의 형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계약에서 부가되는 급부제공의 기준에 따라서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간 베이비시터는 그 책임의 한계를 정하게 된다. 고용계약에 따라 베이비시터가 제공해야 하는 급부는 아동을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급부제공의무 이외에 부가되는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베이비시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정도에 해당하는 주의의무를 가지고 아동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등의 법적 책임이 귀속되기 위하여는 자기 책임의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귀책사유로서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의욕하는 것이며,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있어야 한다. 그 주의의무가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평균인을 전제로 하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라고 한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정도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특히 아동에 대한 가정내 안전사고의 상당 부분이 식품 등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자가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하는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아동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민간 베이비시터이든 사회적 기업의 형태인 YMCA아가야 사업이든 아동에게 개별적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음식을 조리하도록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며 아동의 부모가 마련한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 메뉴얼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모가 제공한 간식이 직

접 조리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완료된 가공식품인 경우 이들의 유통일자를 확인하는 작업은 아동에 대한 개별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책임의 범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모의 책임 영역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부모와 아이돌보미가 공동의 책임 영역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유통일자를 확인하는 것은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일반적으로 구매 단계에서부터 평균적 소비자들에게 일차적으로 검증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의 경우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가입된 경우에도 위의 약관에 설명된 바와 같이 세균성 음식물 섭취한 결과로 생긴 증상은 상해보험에서 보장 대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5-17> LIG 손해보험 플러스메디칼 단체보험 내용 참조).

다음으로 아동안전사고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추락, 넘어짐 또는 미끄러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예상되는 부분은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가정의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사고는 아동에 대한 일정 시간동안의 양육을 아이돌보미에게 맡기고 있는 부모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아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아이돌보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많은 경우 이에 대비하여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보험으로 손해를 보장해 주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배상액이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는 현행 상해보험제도에서 보상액의 범위를 월등하게 초월하는 손해의 발생의 경우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는 사법적 책임을 여전히 부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이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사고의 발생과 관련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의 하나는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들의 활동 공간을 어디까지로 확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가

정 내 개별 양육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란 아동의 주거지에서 부모 등의 지휘·명령을 받아 개별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이 경우 주거지의 범위를 아동의 생활공간이 집안으로만 국한하는 것인지 또는 광범위하게 아동의 생활이 영위되는 곳, 즉 아동의 주택과 아동의 놀이공간으로서 놀이터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주거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즉 우리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거란 사람의 현재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주택·아파트가 대표적인 것이나, 이에 한하지 않고 회사의 사무실이나 점포,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여관·호텔의 객실, 야외용 천막 안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형법 제319조제1항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住居)란 사람의 기와침식(起臥寢食)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또한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부속물도 포함하므로 계단, 복도, 지하실은 물론 정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sup>38)</sup>.

법에서 ‘주거’에 대한 개념을 이와 같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아동의 생활공간의 영역인 놀이터는 주거지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개별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반드시 집안에서만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적절한 양육서비스의 제공으로 보여 지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아동과 놀이터 등을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유형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놀이터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적 준비가 없이 이루어질 때이다. 특히 아동과의 놀이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아이돌보미의 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때, 안전장비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아이돌보미의

38)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보정신판), 박영사, 231쪽, 이러한 입장에서 判例는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圍繞地)를 포함한다. 이미 수일 전에 2차레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책임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가 아동과 자전거를 타거나, 인라인 스케이트 등 또래 아이들이 하는 놀이에 동행할 경우, 아동이 헬멧, 손목, 발목 및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아이돌보미가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낙상의 위험이 높은 놀이터의 시설물, 예컨대, 미끄럼틀 같은 것을 탈 경우 아이돌보미는 반드시 근접거리에서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놀이터에 동행하는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2) 복지서비스 계약에서 아동안전의무

### 가) 아이돌보미 계약의 성격

공공의 복지서비스로서 여성가족부가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제공해야 하는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민간 베이비시터처럼 아동의 부모와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명확하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복지서비스 제공계약의 형태로 제공되는 유형이다. 복지서비스 공급계약이란 정부나 지자체가 주된 재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서비스 제공은 계약에 의해 민간에서 맡으며, 정부는 사후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는 서비스 제공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제공 계약 방식은 정부의 직접적 서비스제공과 완전 민간화의 중간적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계약은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이용을 목적으로 서로에게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복지서비스 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노동자체 내지 결과나 정보를 제공하고 또는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줄 것을 약속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복지서비스 계약의 사고방식은 계약을 복지 서비스의 공급수단으로써 채용하는 것에 의해, 이용자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선택과 사업자 간의 경쟁에 의한 이를테면 유사시장 메커니즘 속에서 복지서비스의 선택유리적인 제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복지서비스가 제공 되어지는 환경은 본래 계약이 유효한 수단이 되는 통상의 물건거래가 행해지는 경우와 등장하는 당사자도 이념도 다르다. 계약은 본질적으로 자유경쟁, 기장원리의 세계의 수단인 것에 반해,

복지는 오히려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안전망이고, 개인의 자기책임에 의한 해결에 어울리지 않는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계약책임의 원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계약은 다양한 복지서비스계약마다 그 성질결정이 각기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유형으로 설명하거나 그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복지서비스의 '질'을 서비스 결정요인에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서비스의질이 계약상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sup>39)</sup>.

#### 나) 아이돌보미 계약에서 서비스의 질

위에서 검토한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 계약의 경우 베이비시터의 법적 지위를 고용계약에 준하여 처리하게 되므로 채무의 이행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본다. 계약의 성격이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 계약은 이를 서비스공급자와 서비스수급자 사이의 직접적 고용계약에 의하여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위임이나 도급의 법리에 준하여 접근이 되어야 할 성질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들에게 어느 수준의 서비스의 질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이와 같이 복지서비스계약을 체결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것의 어려움은 복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의하여 얻으려 하는 최종적인 목적·성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을 돌보거나 하는 복지서비스는 그 연원 자체가 본래 가족 중 에서 행하던 비공식적인 서비스였기 때문에 이를 계약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복지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가족기능의 영역이 사회화 공식화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제도와 정서적 측면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한 복지서비스 계약의 속성을 위임 또는 도급 어느 측면의 계약으로서의 성격으로 규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현행 법체계에서

39) 김희성, 복지서비스계약과 계약책임, 사회복지에서 권리의 의미와 법적책임,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학술발표대회, 2009. 64-65면.



는 서비스 제공은 중등의 품질 서비스(민법 제375조 유추)를 제공할 의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되며 서비스의 질과 관련해서는 선관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급부 자체가 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서비스 그 자체의 품질과 그 제공 상태라는 것을 구별할 의미가 없는 것이 많고 서비스의 질은 동시에 위 양자의 규정(즉 민법 제375조와 681조)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 즉 아이돌보미가 아동에게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책임져야 하는 서비스 질의 한 유형으로서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는 현행 법 체계에서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정도가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안전 배려의 의무는 위에서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의 베이비시터가 부담하는 경우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 3) 개별양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배려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안전배려에 대한 의무는 단지 아동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가칭 아이돌보미)에 대한 안전문제 또한 배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내 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아이돌보미도 가정 내에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서 예외는 아니다. 특히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화재나 기타 낙상의 위험 등은 아이돌보미에게도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의 경우 상해보험 가입이 아동을 대상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며 근무하는 아이돌보미는 상해보험으로부터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일하게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YMCA아가야 사업에 약관이다. 이 약관에 의하면 센터 소속 베이비시터가 접수된 이용 시간 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가입한 보험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약관의 회원의 권리 및 의무와 이용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베이비시터의 고의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베이비시터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YMCA아가야 베이비시터 이용약관, 제9조 사고도난에 대한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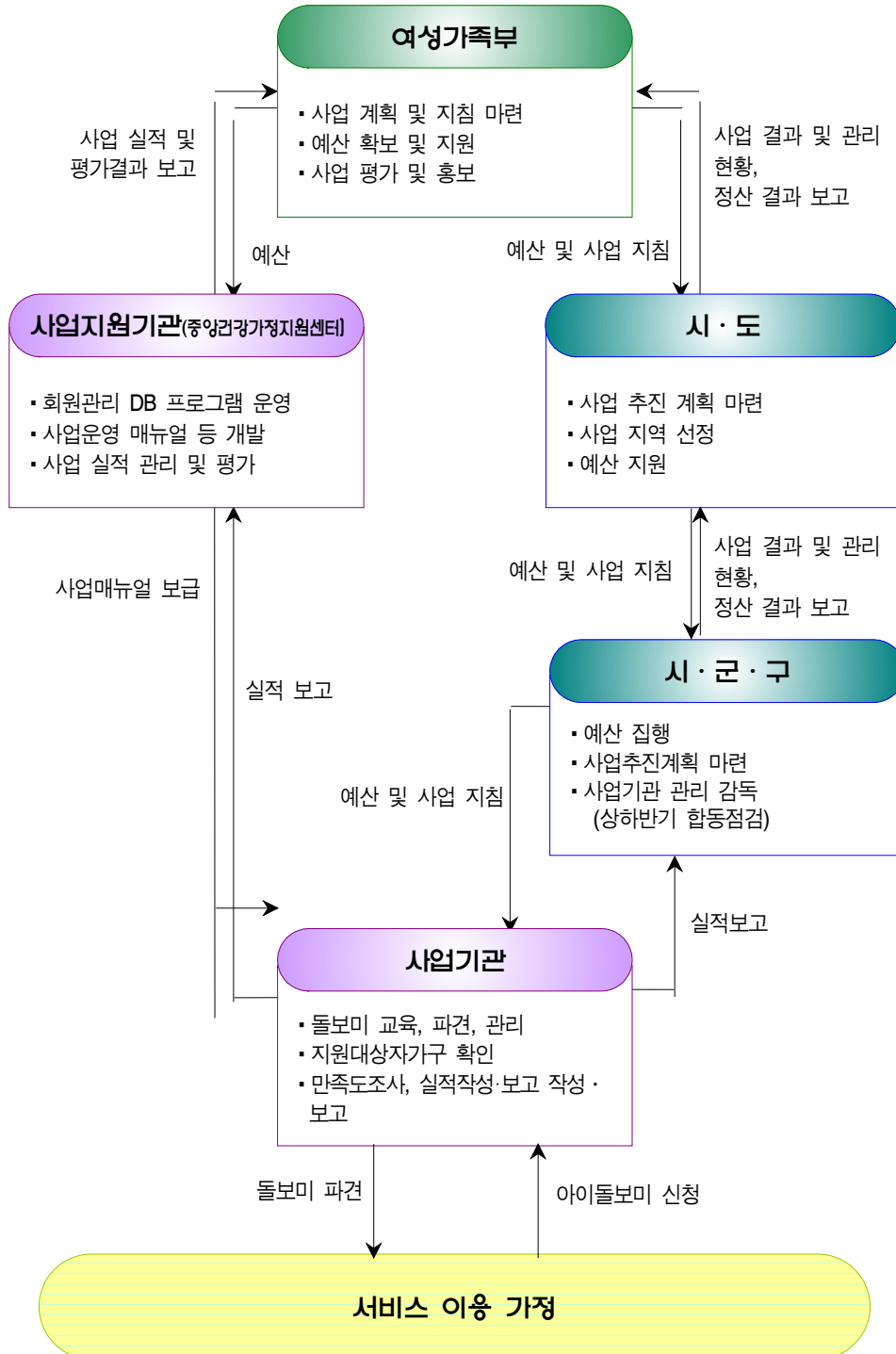
이와 같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배려는 사실상 서비스 제공은 연계하는 센터에게 일정한 책임을 귀속시키기 전에는 사실상 이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고려하기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민간 영리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베이비시터의 경우 현재의 서비스 연계 기관의 역할을 볼 때, 베이비시터가 서비스 연계 기관에 소속되어 서비스 연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별양육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모와의 고용계약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며, 고용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실 책임의 법리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용자인 부모에게 과실이 없다면 베이비시터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베이비시터의 개인책임으로 귀속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베이비시터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기준이다. 사실상 아동에게 가정 내에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의미가 단지 아동의 복지라는 측면 이외에 상당 부분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 단순히 고용계약의 법리에 의하여 과실 책임만을 귀속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관은 아이돌보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이 가입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 VI. 가정 내 양육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 1.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의 전달체계

#### 1) 아이돌보미 전달체계의 구조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 전달체계의 구조는 그림과 같다.



## 2) 아이돌보미 전달체계의 업무와 기능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가 총괄하는 개별 양육 서비스 제공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기본계획수립과 지침작성, 국고보조, 홍보 및 사업 총괄이 그 역할이며 사업의 평가와 지도 감독의 책임을 부담한다. 사업관리는 시·도가 주체이며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선정 및 관리,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에 예산지원 및 사업량 조정과 사업관리 감독을 담당한다. 사업의 중간관리는 시·군·구가 담당하며 사업추진 계획수립과 사업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와 홍보와 사업평가를 담당한다. 실질적으로 돌보미를 파견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선정된 사업기관이며, 여기서 돌보미 모집·심사·면접을 한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양성 및 파견, 관리주체이며, 지원 대상 가정의 소득수준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 연계 접수를 실시하고 추진한 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 및 돌보미 급여 지급을 담당한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지원기관으로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 교재를 개발하며 사업담당자 교육과 사업 평가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아래 그림은 사업의 주요 주체와 업무 기능을 요약한 것이다.

추진주체		기능
여성가족부	사업총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보조, 홍보 등 사업총괄</li> <li>○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li> </ul>
시·도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선정 및 관리</li> <li>○ 사업추진 계획 수립</li> <li>○ 시·군·구에 예산지원 및 사업량 조정 등</li> <li>○ 시·군·구 사업관리 감독</li> <li>○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인원 보고</li> </ul>
시·군·구	사업중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계획 수립</li> <li>○ 사업기관 관리 감독(합동 점검)</li> <li>○ 예산 집행 및 실적보고, 홍보 등</li> <li>○ 사업평가</li> </ul>
사업기관	돌보미 파견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보미 모집·심사, 면접</li> <li>○ 돌보미 양성 및 파견, 관리</li> <li>○ 지원대상 가정 소득기준 확인 등 서비스 접수 연계</li> <li>○ 사업실적 보고 및 돌보미 급여 지급</li> </ul>
사업지원기관 (중앙건강가정 지원센터)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 교재 개발</li> <li>○ 사업 담당자 교육, 사업평가, 홍보 등</li> <li>○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보수</li> </ul>

### 3)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은 서비스 이용 가정이 관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기관에서 인터넷, 유선, 방문 등을 이용하여 한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건강보험카드 사본(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나형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증명자료 1부(해당자)를 제출한다. 또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전월 월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전월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을 제출한다. 인터넷

이나 유선으로 신청한 자는 자필 서명서류와 소득기준 판별서류를 우편, 팩스 송부 또는 가정환경 조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청 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증명서(모, 부자가정증명서) 등 자격판정기준 부합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해당자)를 제출한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급자증명서, 보장시설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모, 부자가정증명서) 등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증빙이 가능한 자는 공동 적용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상기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자는 가형으로 지원 가능(단, 증빙서 발급기간이 이용일 현재 3개월 이내일 것)하다.

#### 4) 서비스 연계 방법과 서비스제공

##### (1)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방법

아이돌보미 사업기관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 접수 후, 신청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아이돌보미를 확인하여 이용자와 연계하고 양방에 통보한다. 사업기관의 돌보미 공급 부족 등으로 장기간 파견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사업기관 및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인근 지역 기관의 돌보미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서비스 연계 원칙은 예약 가정 선착순으로 하며, 예약가정이 동시에 서비스 신청하거나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순위 결정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저소득 우선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한부모 가정), 맞벌이, 한부모(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가정, 쌍둥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세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차상위) 등의 가정에 우선지원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필수위원으로 포함시켜야하며, 위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 기준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본인부담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서

비스 이용 1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이용한 이체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육자의 질병, 사고, 급작스러운 출장 등으로 긴급한 경우 서비스 선제공 후 3일 이내 지급이 가능하다. 위 기간까지 서비스 이용료 미지급 시 이용료 납부 시까지 서비스 일시 중지 가능하다.

## (2)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일시를 확인한 후 해당일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는 가족서비스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가사활동은 제외되며, 아이돌보미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과 종료 후 사업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기관은 아이돌보미가 제출한 활동일지를 활동비 청구로 간주하며, 매월 말일 기준 정산, 익월 10일 계좌 이체(단, 해당 기관 사정에 따라 고정 급여 일자 변경 가능)한다.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은 당월 신규 이용 가정 및 돌보미 교체 가정을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첫 이용 후 1월 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의 내용은 사업기관에 대한 만족도, 연계대기시간, 담당자의 친절도 등이 해당하며, 돌보미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 준수여부, 서비스의 충실성 및 서비스 이용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한다. 당월 및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및 조치계획을 시·도, 시·군·구에 매 분기별로 보고(3월, 6월, 9월, 12월)하며, 시·도,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반기별 실적을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보고한다.

## 2. 사회적 기업의 가정 내 개별양육서비스 전달체계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가정에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YMCA는 SK와 고용노동부의 후원을 받아 시간제 열린육아센터 ‘아가야’가 해당한다.

YMCA는 이 사업을 통해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병행되고 있는 ‘마을과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라면, ‘아가야’ 사업은 시간제 보육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시에 베이비시터 파견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다. ‘아가야’는 3년을 기한으로 노동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다. YMCA는 중앙에 지원센터 1개와 전국 각지에 16개소의 시간제 육아센터를 두고, 전국 각지에 16개소의 지부를 두어 시간제 육아센터를 두고 있다.

YMCA가 ‘아가야’ 사업을 도입한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로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대상별, 시간별)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함이다. YMCA는 이를 통해 취업여성에게는 근로시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교육을 받는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비취업 여성에게는 가사노동 및 자원봉사를 통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인력을 양성하고 파견함으로써 자녀양육이 필요한 취업 여성들에게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이 보조적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 시설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질 때 기존 종일반 운영에 끼워 넣기 식으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질이 낮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로 귀결되며, 부모들은 시간제 보육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는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는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이런 이유에서 YMCA는 아가야 사업을 통해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를 해결해 주고, 취업 취약계층 여성들에게는 ‘시간 전담제 보육인력’이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YMCA아가야 사업은 그 출발에서부터 SK와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시작하였으며, 사업의 조직과 운영은 전적으로 전국 YMCA라고 하는 조직을 양육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YMCA아가야 사업은 YMCA서울아가야, 군포YMCA아가야, 이천YMCA아가야, 수원YMCA아가야, 원주YMCA아가야, 아산YMCA아가야, 광주YMCA아가야, 진주YMCA아가야, 안동YMCA아가야, 구미YMCA아가야 등 10곳이 사회적 기업으로 조직되어 아동에게 시간별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는 그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베이비시터와 같이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소개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을 대상으로 홈 아웃소싱 성격의 포괄적인 인력 파견을 하는 업체이다.

따라서 회사 유형에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이가 난다. 전자의 경우 베이비시터 소개 전문업체라고 하겠는데 제공하는 서비스는 업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매우 다양하여 일반 탁아 이외에도 가사도우미, 산후조리도우미, 실버도우미, 학습시터, 놀이시터, 현장학습시터 등 부모가 해야 하는 모든 관련 업무를 시터 업무로 개발하여 제공한다.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업무 중 시간제 및 종일제 단순탁아 베이비시터 업무 비율은 최소 10%, 최대 100% 등 업체별로 편차는 크지만 평균 72%정도로 추정된다(<표 5-18> 참조).

**<표 5-18> 회사 업무 중 시간제 및 종일제 단순 베이비시터 업무 비율**

(단위: %(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72.6	24.6	10	100	(93)	1.5
본사	62.1	24.9	10	90	(14)	
가맹점	74.4	24.3	10	98	(70)	
단독	75.0	26.0	20	100	(9)	

주: 시간제 및 종일제 단순탁아 베이비시터 업무가 10% 미만인 업체는 제외하였음.

<표 5-18>는 조사된 93개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서비스 내용별 실시 분포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된 업체의 80.6%가 입주 시터를 소개하고, 75.3%가 학습시터를 소개하며, 산모도우미와 가사도우미도 각각 48.4%, 50.5%의 업체가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영어시터 파견이 21.5%이고 놀이시터, 현장학습

대행시터 파견이 11~12%이다. 최근에는 아동 조기 영어교육을 위하여 영어를 하는 시터를 이용한 타아가 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영어권의 외국인을 가정에 일정기간 동안 입주시켜서 아동을 돌보면서 영어교육을 하도록 오피어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표 5-19〉 단순탁아 이외 제공하는 서비스(복수응답)

(단위:%(개소))

구분	전체	본사	가맹점	단독
입주 베이비시터	80.6	78.6	84.3	55.6
현장학습 대행시터	10.5	21.4	10.0	-
영어 시터	21.5	21.4	21.4	22.2
학습 시터	75.3	64.3	81.4	44.4
아픈 아동 시터	3.2	7.1	1.4	11.1
이벤트 대행	1.1	7.1	-	-
실버 시터	5.4	14.3	2.9	11.1
놀이 시터	11.8	28.6	10.0	-
산모도우미	48.4	64.3	47.1	33.3
가사도우미	50.5	50.0	51.4	44.4
기타	4.3	14.3	2.9	-
(수)	(93)	(14)	(70)	(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표 5-20〉 단순탁아 이외 제공하는 서비스 사례

A업체 <sup>1)</sup>	B업체 <sup>2)</sup>	C업체 <sup>3)</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비시터</li> <li>- 가사 겸 베이비시터</li> <li>- 학습시터</li> <li>- 가사/입주/산후도우미</li> <li>- 실버시터</li> <li>- 유아마사지</li> <li>- 지문적성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비시터</li> <li>- 에듀시터</li> <li>• 동화/가베/체험놀이시터</li> <li>- 산후조리서비스</li> <li>- 실버케어서비스</li> <li>- 홈 이벤트</li> <li>- 학습 베이비시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비시터</li> <li>- 놀이시터</li> <li>- 교육전문시터(북, 학습, 가베, 영어)</li> <li>- 홈킨더</li> <li>- 매니지먼트</li> <li>- 외국인 오피어</li> <li>- 현장학습시터</li> <li>- 키즈매니저</li> <li>- 리빙헬퍼</li> </ul>

자료: 1) URL://www.baby-care.co.kr/  
 2) URL://www.familycare.co.kr  
 3) URL://www.thesittertime.com

또 몇몇 업체에서는 자녀관찰 시스템을 개발하여 집안에 카메라 한 대만 설치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장소에서나 베이비시터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에서는 탁아 서비스 이외에도 이외에 아동이벤트 사업으로 생일파티, 장난감 파티 등의 사업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3개 업체가 단순탁아 이외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예인데 A업체의 경우는 지문적성도 실시한다.

### 1) 민간 베이비시터 회사의 유형

민간 베이비시터 회사는 상당수가 동일한 상호를 쓰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특정지역의 방문탁아업체를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사만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본사에서 지점 개설 희망자와 상담을 통하여 일정한 요구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여 일정한 가맹비를 받고 관할지역 세무서 및 구청에 등록을 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 후 지사를 내게 한다. 이 때 본사는 물품, 비품, 개설 준비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사장 자격에 대하여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한 회사의 경우 지사장의 자격조건으로 35~49세, 유아교육 전공자 우대, 사회경력 3년 이상 및 자녀 5세 이상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사와 가맹점 관계를 살펴보면 본사와 지점이 시터 교육과 회사 홍보를 같이 하는 등 상호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터와 부모의 약관을 통일하고 있는 곳이 각각 84.6%, 92.3%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표준화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비율은 38.5%에 그쳤다. 아래의 <표 5-2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두 업체의 프랜차이즈 가맹사 설치 시에 본사가 지원했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두 업체의 사례를 보면 교육 및 경영 컨설팅, 홍보 및 광고 지원, 각종 관리 프로그램 지원, 물품 지원 등이고, 회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1〉 프랜차이즈 회사 개점시 본사 지원 현황

A 업체 <sup>1)</sup>	B업체 <sup>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주 4주교육(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li> <li>•상담직원 업무교육 2주 교육(상담 및 고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li> </ul> </li> <li>- 광고/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케팅 컨설팅, 생활 정보지 시터 모집 광고 (1개월)</li> <li>•통인익스프레스 지사와 공동마케팅 제휴, 통인 제휴업체와 링크</li> </ul> </li> <li>- 프로그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사 홈페이지 제작, 회원관리, 시터 관리, 상담관리, 회계관리 프로그램</li> </ul> </li> <li>- 물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 운영 매뉴얼, 각종 서류양식(CD), 입간판, 명함, 전단지(4000장), 시터 및 도우미 교육 교재, 필요한 광고 디자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간 집중관리 시스템 활용. 지사 정착시까지 지원</li> <li>- ON/OFF Line 광고/홍보 지원</li> <li>- 전문 경영 컨설팅 제공</li> <li>- 필요시 경영지원(비용별도)</li> <li>- 교육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점 운영자교육(30일) •성공지점 합동 근무</li> <li>•교육 필요 물품 •경영 매뉴얼/전대응대 매뉴얼</li> <li>•지속적인 보수교육</li> </ul> </li> <li>- 광고/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FF-LINE: 육아잡지 3종 광고 및 홍보기사(대중매체), 베이비페어 참가 홍보</li> <li>•ON-LINE: 홈페이지 및 산모관련 사이트 배너 광고, 주요 검색사이트 홍보, 관련업체 제휴홍보 -판촉 Route 신규개발</li> <li>•본사에서 판촉 Route 신규개발(상세내용은 상담시)</li> </ul> </li> <li>- 기타, 참사랑어머니회 산후도우미 지점이 있는 지역은 통합 사무실 운영을 통해 시너지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li> </ul>

자료: 1) URL:<http://daegu.baby-care.co.kr>

2) URL: <http://www.charmlove.co.kr>

한편 개점 후에 이들의 관계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한회사의 사례를 보면 상담직원/시터 교육 및 재교육 지원/ 가맹점 운영에 따른 업무지도 및 교육/ 가맹점 운영 매뉴얼, 서비스별 교육교재 개발, 본사와 가맹점간의 시터 지원, 월1회 가맹점주 회의를 통해 공동 마케팅 및 수익 증대 방안 논의, 공동 마케팅 등 비교적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표 5-22> 참조).

〈표 5-22〉 프랜차이즈 회사 개점 후 본사 지원 현황

A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직원/시터 교육 및 재교육 지원</li> <li>- 가맹점 운영에 따른 업무지도 및 공유</li> <li>- 가맹점 운영 매뉴얼, 서비스별 교육교재 개발</li> <li>- 본사와 가맹점간의 시터 지원</li> <li>- 월 1회 가맹점주 회의를 통해 공동마케팅 및 수익 증대 방안 논의</li> <li>- 본사 서비스 개발에 따른 지원과 공유</li> <li>- 통인 협력업체와 공동 마케팅</li> </ul>

자료: 1) URL:<http://daegu.baby-care.co.kr>

## 2) 민간 베이비시터 회사의 규모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은 사업체로 또는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의 규모를 상근 직원 수 및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의 수로 파악할 경우 다른 변수가 있을지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파악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소규모로 영세하게 운영되는 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표 5-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방문탁아 파견업체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사된 회사전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종일제 근무 직원 평균수는 1.3명이고, 시간제 종사자를 포함하면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시터 회사 본사가 종일제 직원 평균이 2.4명으로 가맹점 1.0명이나 단독업체 1.9명보다 1명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3〉 베이비시터 회사 상근인력 평균

(단위: 명(개소))

구분	종일제			시간제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3	1.0	(93)	0.2	0.5	(93)
본사	2.4	1.6	(14)	0.3	0.5	(14)
가맹점	1.0	0.4	(70)	0.2	0.5	(70)
단독	1.9	1.4	(9)	0.3	0.5	(9)
F	17.5**			0.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또한 회사를 설립한 대표자 1인이 혼자서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73.1%에 이르고 대표자 이외에 직원을 한 명 두고 2명이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12.9%, 그 이상의 규모로 운영되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최대 규모는 상근자의 수가 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4>에서 보며 상근인력이 없다는 업체가 6개가 되며, 이들 업체는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심지어 본사에서 전화를 연계하여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 베이비시터 회사 상근인력 분포

(단위: %, 개소)

상근직원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9명	계
2007년 비율 수	6.5	73.1	12.9	3.2	1.1	2.2	1.1	-	100.0
	6	68	12	3	1	2	1	-	93
2001년 비율 수	-	57.9	23.7	7.9	3.9	5.3	-	1.3	100.0
	-	44	18	6	3	4	-	1	76

특이할만한 것은 2001년도 조사에서는 대표자 1인이 혼자서 업체를 운영하는 비율이 57.9%였으나 2007년도 조사에서는 73.1%로 증가하여 6년 동안 베이비시터 업체의 운영의 규모가 비교적 오히려 작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파견 업체의 규모는 베이비시터 등록자수로도 가늠할 수 있는데, 2007년 7월 1개월간

베이비시터로 등록되어 한 번이라도 일 한 사람의 수는 평균 20.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최소1명, 최대가 200명으로 업체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의 경우 1개월간 활동한 시터의 수가 20명 이하인 비율이 42.8%이고, 가맹점은 88.6%라고 응답하여 본사보다 가맹점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25> 참조).

〈표 5-25〉 베이비시터 회사에서 활동한 시터 수(한 달 기준)

(단위: 명(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20.4	29.1	1	200	(88)	14.2**
본사	20.2	16.9	2	60	(13)	
가맹점	15.0	18.3	1	150	(67)	
단독	65.9	65.1	4	200	(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2001년 조사에서는 업체가 확보한 베이비시터 수를 조사하였는데 20명 이하가 27.6%, 21~50명이 26.3%이고, 51명~100명이 23.6%로 총 업체의 77.5%가 베이비시터 수 100명 이하를 확보하고 있고, 101~200명을 확보한 업체는 10.4%이며, 201명 이상은 12.1%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각 회사가 수요에 비하여 베이비시터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베이비시터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곳은 거의 전무하였으며,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응답한 곳도 평균 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시터의 공급이 약간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곳이 전체의 83.9%로 거의 대부분의 업체에서 부모 수요에 비해 시터 공급을 맞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3. 아이돌보미사업의 전달체계 구성 방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전달체계와 사회적일자리로서 아가야 사업, 민간 베이비시터 등의 사업 성격과 전달체계 등을 분석해 보았을

때, 복지서비스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영리성을 추구해야 하는 민간베이비시터 기관의 융합적 전달체계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되어, 공공재를 바탕으로 하는 전달체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이용과 인터넷을 통한 전산관리, 보호자 체감형과 선택적 서비스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바우처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전달체계 개발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전달체계를 정리 할 수 있겠다.

### 1) 전자바우처 제도의 도입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전자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할 때, 중앙, 지방정부는 일정 수준의 아이돌보미 이용자들에게 비용지원을 위해 전자바우처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즉 아이돌보미 이용자 가정의 이용에 따른 비용을 서비스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나, 이러한 전자 바우처권의 이용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대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조손가정의 조모의 해독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전자바우처의 이용을 위해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그와 관련한 관리 기관과 관리요원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아이돌보미사업 전달체계(안)

아이돌보미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업기관의 범위, 지정, 예산 배정 및 집행, 관리감독, 평가 및 지도 등의 업무와 기능이 부여될 것이다.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할 때, 공공재로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규정한다면, 공공성을 지닌 사회적 서비스로서, 이를 이용하는 보호자(가정), 아이돌보미의 자격 규정, 교육, 모집과 관리, 활동, 모니터링, 사업기관의 수준과 양육전문기관으로서 수준,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과정과 효율적인 관리, 효과성 평가, 사업기관의 운영과 생존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자정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달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여성가족부의 업무나 기능은 종전의 기능에다 유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부)의 협의 기능의 주체로서 활동하도록 하고, 전자정부의 특성을 활용한 전산관리와 전자바우처에 대한 총괄 기획 업무를 추가한다. 특히 유관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보육업무의 중복,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결, 부모의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의 선택권과, 자녀양육수당의 연계, 세제지원, 교육복지우선대상자(초등학교 교육복지 저소득층가구)의 학습돌보미 지원,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확보, 보험 등의 다양한 문제를 우선 협의권을 확보하는 것을 통하여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법령의 근거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시·도 및 시·군·구의 업무 분담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은 시·도 및 시·군·구가 담당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과정에 사업이 불필요한 지역을 사정에 맞게 조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사업의 효율성이 미비한 시·군·구의 경우는 이웃 시·군·구로 운영주체를 이관하고, 아이돌보미의 과건 지역 범위를 넓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실제 2010년 7월 현재 사업평가를 한 결과 과건설적이 저조한 기관들이 있어 현재 시·군·구별로 한 개 기관 지정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의 업무는 기존의 업무에 추가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예산을 반영하여 아이돌보미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이용료의 상한선 지정 등을 하고, 지역주민 욕구를 반영하는 시스템 지원에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는 대민 직접 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지역사회의 특성이 매우 강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사업기관은 앞에서 진행된 바와 같이 아동양육과 가족관련 전문기관들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공재의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갖는 사업이 관계로 비영리적 기관이 참여하되,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기준안을 제시한다.

사업지원기관은 전자바우처제도 도입을 하고, 전체의 아이돌보미사업 발전과 아이돌보미의 자격인증 등을 위해 중앙차원의 전문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인

력관리, 사업관리,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질 높은 전산관리, 매뉴얼 개발 등을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이는 크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존 업무 능력의 향상과 거점기관의 연계, 전자정부의 위탁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도표와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추진주체		기능
여성가족부	사업총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보조, 홍보 등 사업총괄</li> <li>○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li> <li>○ 전자바우처, 전산화 총괄관리</li> <li>○ 유관부처의 협의 조정</li> </ul>
시·도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선정 및 관리</li> <li>○ 지방의 사업추진 계획 수립</li> <li>○ 시·군·구에 예산 지원 및 사업량 조정 등</li> <li>○ 시·군·구 사업관리 감독(합동점검)</li> <li>○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인원 보고</li> <li>○ 사업기관 지정권 부여과 조정</li> <li>○ 거점기관의 지정과 시군구 운영지도</li> <li>○ 시도단위의 홍보</li> <li>○ 광역단위의 아이돌보미 자료생성관리</li> </ul>
시·군·구	사업중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계획 수립</li> <li>○ 사업기관 관리 감독(합동 점검)</li> <li>○ 예산 집행 및 실적보고, 홍보 등</li> <li>○ 사업 자체 평가 지도</li> <li>○ 위원회 운영</li> </ul>
사업기관	돌보미 파견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보미 모집·심사, 면접</li> <li>○ 돌보미 양성 및 파견, 관리</li> <li>○ 지원대상 가정 소득기준 확인 등 서비스 접수 연계</li> <li>○ 사업실적 보고 및 돌보미 급여 지급</li> <li>○ 이용자가정의 모니터링</li> </ul>
사업지원기관 (중앙건강가정 지원센터)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 교재 개발</li> <li>○ 사업 담당자 교육, 사업 평가, 홍보 등</li> <li>○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보수</li> <li>○ 전자바우처 중앙위탁기관 활동</li> <li>○ 통계 생성 관리</li> </ul>
전자바우처 위탁기관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사회복지정보시스템연계)</li> <li>○ 전자바우처카드 발급 및 실행</li> <li>○ 민간기관(은행 등 연계)</li> </ul>

[그림 5-1] 아이돌보미 사업전달체계와 업무 분장(안)

현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를 기준으로 가형, 나형 및 다형으로 구별하고 가형과 나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 내 개별양육 서비스 관련 사업이 국가가 지원하는 아동 양육 지원 서비스로서 민간 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비용지원은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의 유형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본다.

비용 지원의 기준은 핵심적인 것이 소득수준, 거주지역의 상황 및 부모의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비용지급보다는 상대적으로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현행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재정재원의 형평성 저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행 소득세법 제52조에 제3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다(동조 제1호). 여기서 교육비의 개념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아이돌보미의 경우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의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제6장

자녀돌봄지원법(안)과 관련  
국내법의 관계

##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sup>40)</sup>

1989년 국제연합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1991년 12월 20일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sup>41)</sup> 본 조약에서는 20세기 인권존중의 법이념에 부응하는 아동고유의 권리와 인간으로서 향유할 일반적 인권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가정에 있어서 아동의 행복 추구를 최대목표로 하고 있다.<sup>42)</sup>

### 1)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이 조약의 기본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협약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부모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 원칙을 인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동 협약 제18조 제1항).

이러한 아동 양육과 발전에 대한 책임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당사국이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

40)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을 연구한 김유미,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10호, 407면 이하에서는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주요 법률로 민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교육법, 소년법을 예로 들고 있으며, 그밖에도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생활보호법(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유아교육진흥법(폐지, 현행 유아교육법), 모자복지법(현행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이 아동권리협약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41) 박재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교육관계법령의 충돌 및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11호, 대한교육법학회, 125면. 아동권리협약의 제정과정에 관하여는 한봉희, 아동의 권리조약과 가족법, 가족법 연구 6호, 한국가족법학회, 33면 이하 참고.

42) 한봉희, 아동의 권리조약과 가족법, 가족법연구 6호, 한국가족법학회, 40-41면.

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동 협약 제18조 제2항 내지 3항). 또한 동 협약은 체약국으로 하여금 부모의 권리 및 의무를 고려하면서 자의 복지에 필요한 보호 및 케어(care)를 확보 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사법상, 행정상의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한다(제3조 제2항).

둘째, 아동은 이제까지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이제 어린이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권리의 향유주체임과 동시에 권리행사주체로서 국제법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이는 신시대의 새로운 권리상을 구현하였다는 점에 획기적 의미가 있다. 예컨대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자의 최선의 이익이 제1차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제3조제1항), 의견표명권(제12조) 즉 자기결정권의 인정, 표현과 정보의 자유(제13조), 사회보장의권리(제26조), 생활수준의권리(제27조), 건강과 의료의 권리(제24조), 휴식·여가·문화적·예술적 생활에의 참가의 권리(제31조)등 시민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

셋째, 국제적으로 특히 제3세계에서 아동이 당면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대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표시되고 있다. 아동의 권리 조약은 전문과 총54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3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아동의정의, 일반원칙(차별금지, 자의 최선의 이익, 생명생존발달의 권리, 아동의 의사존중),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족환경과 그에 대치되는 양육, 기초 보건과 사회 복지,교육 문화 등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실체 규정(제1조~41조)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제2부는 비준후의 체약국과 유엔과의 관계규정인 이행규정(제42조~제45조)으로서 조약의 국제적 감독기관인 아동권리위원회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부는 서명, 비준, 가입, 효력발생 등 마무리 규정이다(제46조~제54조).<sup>43)</sup>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양육과 관련된 주요조항을 살펴보면 부모의 지도에 대한 존중 의무(제5조),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제7조), 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국가의 원조(제18조), 부모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의 보호(제19조),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이 대체적인 친자관계의 설정을 요구할 권리(제20조), 입양(제

43) 한봉희, 아동의 권리조약과 가족법, 가족법연구 6호, 한국가족법학회, 43면

21조), 장애아동의 권리(제23조), 생존·발달에 필요한 생활의 조건과 수준을 확보할 권리(제27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28조)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① 면접교섭권조항(협약 제9조제3항), ② 입양허가제도 조항(협약 제21조 가항), 그리고 ③ 상소권보장조항(협약 제40조 제2항 나호(5))에 대하여는 국내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그 적용을 유보하였다고 한다.<sup>44)</sup> 이 가운데 입양허가제도와 관련된 조항은 2005년 민법개정에서 친양자제도라는 형태로 도입 되었고, 면접교섭권조항은 1990년 민법 개정 당시 “자를 직접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부모의 일방적인 권리로서 면접교섭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7년 민법 개정시 비로소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부모와 자녀의 상호적 권리로 재구성 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상소권 보장에 관하여는 입법적인 조치가 취하여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sup>45)</sup>

## 2) 자녀돌봄지원법(안) 과의 관계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부모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원칙을 인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부모를 양육의 가장 중심적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일차적인 양육의 책임을 부담하며 동시에 양육의 방법에 대한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방향에서 자녀돌봄지원법(안)과 일치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협약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는데 (동 협약 제18조 제1항), 이는 아동이 최상의 양육 환경을 조성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또한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아동양육에 국가의 원조가 요구된다는 것 또한 명시하고 있다 (협약 제18조). 이는 아동권리협

44)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1, 국제인권법학회, 204면 이하

45) 아동권리협약과 국내법과의 관련에 관하여는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1, 국제인권법학회, 206면 이하 참고.

약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돌봄지원법(안)에서 양육의 안정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부분을 규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민법

### 1) 친권과 양육의 원칙

민법은 부부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의 반영으로 민법의 자녀 양육에 관한 규정은 매우 간단하다. 즉 혼인 중에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지위에서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지는데,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규정으로 제913조와 제974조를 드는 견해가 있는데, 제913조의 경우에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제974조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며 이 경우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과 부양의무자에게 자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인정되는 규정이다(제975조). 이러한 규정은 결국 해석에 의하여 보충되어 부모는 자신에게 자녀를 부양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즉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37조 7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이와 다른 측면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친권과 후견에 관한 규정이다. 이 가운데 친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며,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나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인정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 할 수 없거나 협의를 이루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민법제909조9). 한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친권의 행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하게 하거나 친권의 일부를 상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sup>46)</sup>

한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후견인이 선임된다(민법제928조8).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는 순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932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되며, 제932조 2에 해당하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그렇지만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이 규정하는 법정후견인의 범위를 넘어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민법제940조0). 이러한 친권 규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친권상실을 선고할 정도의 친권남용이나 현저한 비행이 없는 경우에 친권의 행사를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sup>47)</sup>에서는 사전처분으로서 친권자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여 이를 행사할 자가 없게 된 때에는 심판의 확정시까지 그 친권을 행사할 자를 동시에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sup>48)</sup>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방

46) 친권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일부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므로 따라서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일부상실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 925조).

47) 제 62조(사전처분) ①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48) 가사소송규칙 102조(대행자의 지정) ① 제101조 제1항에 규정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 제 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으로서,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

편이며 자녀의 보호도 그만큼 불완전하므로 소송기간을 가급적 단축하여 자녀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sup>49)</sup> 한편 현행 민법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 할 수 있는 자를 민법 제777조 7에서 규정한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친족에 의한 친권상실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에게도 친권상실 선고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sup>50)</sup>

## 2) 고용계약

고용은 당사자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55조).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현대사회에서는 노동법의 등장으로 민법의 고용규정은 제한된 범위에서 적용될 뿐이다. 판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고용계약이라고 본다<sup>51)</sup>.

고용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그 합의는 적어도 노무자의 노무 제공과 사용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 노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육체적인 것 이외에 정신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노무는 노무자가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노무자는 계약에서 정한 대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며 노무자는 약정된 노무를 제공하면 되므로, 사용자가 약정하지 않은 노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58조 제1항). 노무자는 자주성이 없이 종속적 지위에 놓이게 되며, 사용자는 지

---

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여 이를 행사할 자가 없게 된 때에는, 심판의 확정시까지 그 권한을 행사할 자를 동시에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권한대항자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의 재산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9) 김유미,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의 고찰, 가족법 연구 제10호, 442면 영국의 The Children Act에서는 일반원칙으로서 자녀양육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법원은 소송지연이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50) 김유미,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 제 10호, 418면

51) 대법원 1994. 8. 26. 94다15479 ; 대법원1996. 7. 30. 95다11689 ; 대법원1997. 12. 23. 97다25477 ; 대법원2000. 12. 22. 99다55571.

휘·명령권을 갖는다. 노무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무자는 특약이 없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 3) 자녀돌봄지원법(안)과의 관계

아동양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부모와 친족체계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가족정책으로서 추가적인 법제가 요구된다.

현재 가정내 개별 양육 지원의 방식으로 민간 영리 기관에서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방식이 있다. 이 경우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기관은 특별히 베이비시터들을 고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인력풀을 형성하고 이들 중 베이비시터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중개를 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시터들은 중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파견되는 것이 아니므로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법적 지위는 고용관계에 다른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무제공자로서 베이비시터가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 또한 고용계약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다. 다만 현행 민법의 고용계약은 근로기준법과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은 그 전제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노동법의 출발 자체가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불평등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노동법은 근로자가 자본가에 비교하여 약자라는 것을 전제한다. 반면 고용계약은 근대적 인간관으로 평등한 사용자와 노무자 양 당사자가 평등한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고용계약에 의한 노무자의 보호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에 대하여 국가가 이들 연계 기관에 일정 부분의 개입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들 연계 기관에 의하여 민간 베이비시터가 고용되어 파견근로자의 형태를 가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인 보호는 고용계약에 따를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고용계약의 약관을 표준화 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능할 것이다.

### 3. 아동복지법

#### 1)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지법’이라는 법명으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에는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복지의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1981년에 현행과 같이 ‘아동복지법’으로 법명이 바뀌면서 법의 대상이 종전 요보호아동에서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의 보장으로 대상 및 성격이 바뀌게 됨에 따라, 현재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광의의 아동복지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제2조에서 그 기본이념으로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아동의 복지에 관한 책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가정에서의 양육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가정 내에서의 양육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권상실선고를 통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박탈 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52)</sup>

52) 그렇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경우에 아동에 대한 임시조치 등의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들은 아동의 복지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동복지법 전체를 개괄하여도 선언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는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sup>53)</sup>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며, 이를 다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기타 일반가정아동으로 구분하고 있다(제2조). 아동복지법에서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등 일정한 자에 대한 신고의무의 부여(제26조)함과 동시에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제29조)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아동복지법에는 발견된 미아나 기아에 대한 신고의무나 신고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2000.1.12.법률 제6151호로 전문개정 된 후 보호조치나 아동학대 신고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거나 사법경찰관리가 신속하게 아동학대 현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54)</sup>

그렇지만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청문절차와 이의신청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만, 아동으로부터 청취하는 의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아동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 상담·치료 등의 급여나 시설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sup>55)</sup>

끝으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이 채택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아직도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을 급여를 받는

53) 아동복지법시행령에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아동복지지도원 및 아동복지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주로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54) 그렇지만 아직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개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55) 청소년의 성매매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은 여성부가 주관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지 법무부가 주관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피동적 주체가 아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자녀돌봄지원법 (안)과의 관계

아동복지법은 영유아보육법의 모법(母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에 제정되기 이전에 보육에 대한 규정은 아동복지법 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처음으로 국가 보육사업이 실시된 것도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이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탁아시설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더불어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던 중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사업이 시설 설립주체의 제한으로 인한 보육사업 확대 곤란, 관장부처의 다원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 하에,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거쳐,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은 아동복지법에서 별도로 분리되었고, 아동복지시설의 범주에 보육시설은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현 아동복지법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맥락은 같아야 하고, 이외에도 보육 혹은 영유아보육법과 관련된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

아동복지법은 그 이념으로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동의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이는 자녀양육 지원법 (안)이 추구하는 바와 이념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법(안)은 아동이 가정의 익숙한 환경에서 지속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전제한다.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 제9조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 이는 자녀돌봄지원법(안)에서도 동일한 의무 규정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아동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일정한 안전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의 의한 아동보호 원칙과 일치하는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6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녀돌봄지원법(안)에서도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 내 개별양육은 가장 근접한 일대일 양육지원 체계가 될 것이므로 아동학대 등을 파악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며 따라서 이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 4. 건강가정기본법

### 1)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과 가정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에 관하여도 정의하고 있다(제3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며,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sup>56)</sup> 또한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하며,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한다.<sup>57)</sup>

56) 가족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민법에서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해서 호적을 기준으로 가족을 정의하고 있었는데, 2005. 3.31.의 개정민법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당연히 가족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57) 건강가정지원법에서 정의하는 건강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의미하지만, 대체적으로 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으로써 한부모가정이나 그 밖의 가정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라고 불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에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법 개정안에서는 법률명령을 가족정책기본법 등으로 법률 명칭을 변경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도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동조 제1항), 그 기본계획서에는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동조 제2항 제6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제7조에서 가족가치라는 제목 하에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정 내에서의 자녀양육이 가족구성원의 의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정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부양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에 관하여 규정한 제15조 제2항 제6호와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에 관한 제21조 제2항 제4호 및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과 안정된 주거생활에 관한 제21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자녀의 양육지원을 강화하도록 규정한 제22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양성 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 경우 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가정봉사원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있다(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 2) 자녀돌봄지원법(안)과의 관련성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가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동조 제1항), 그 기본계획서에는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동조 제2항 제6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양육이 일차적으로는 부모의 책임이지만 국가가 그 책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민법의 친족상속법 체계와 어우러져 현행 법질서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개인과 국가의 양육에 대한 입장을 대표하는 것으로 자녀돌봄지원법(안)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제도는 가정내 개별 양육지원을 위한 제도화에 교육과정, 역할 및 국가의 지원정도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5. 영유아보육법

### 1)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3장 보육시설종사자, 제4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5장 건강·영양 및 안전, 제6장 비용,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으로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이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함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

또한 동법은 일정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16조)<sup>58)</sup>,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교육수준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나아가 영유아보육법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26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영유아보육법 제5장에서는 건강·영양 및 안전을 규정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을 의무화 하고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육시설 상호간의 안전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 2)<sup>59)</sup>.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

58)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9) 제31조의2(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등) ①보육시설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2) 자녀돌봄지원법(안) 과의 관계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영유아 보육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자녀돌봄지원법(안)에도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돌봄지원법(안)은 다양한 육아 지원유형의 하나로서 영유아 보육법이 규정하는 시설보육의 특성을 공유하지 않으나 궁극적으로 가정 내 개별 양육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복지와 일·가정 양립지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념적으로 영유아보육법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으며, 직접 아동 양육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와 아동의 관계에 따른 책임 범위의 문제와 같은 인적서비스의 특징은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하는 바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육교사의 자격, 보수교육과정, 취약보육우선 실시 원칙, 아동안전지원제도 등은 가정 내 개별 양육 지원을 위한 제도 구성에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으로 본다. 즉 아이돌보미의 일정한 자격요건, 보수교육을 통한 질적 수준의 유지, 우선지원

---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공제회에 가입한 보육시설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⑧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이루어 져야 할 대상 영역 및 아동을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돌보는 경우 아동에 대한 안전 책임의 소재 등이 자녀돌봄지원법(안)에서도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 6. 유아교육법

### 1) 유아교육법의 주용내용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유아교육법은 총 5장 31조로 비교적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책임 이외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유아교육위원회,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를 담고 있다. 제2장은 유치원의 설립 등으로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3장은 교직원으로 교직원과 강사 등에 관한 임무와 자격을 담고 있다. 제4장은 비용을 무상교육을 포함하여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이 보칙 및 벌칙으로 권한의 위임, 각종 명령 및 유치원 폐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역시 총 5장 36조로 구성되어 유아교육법 각 장에서 규정하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유치원 설립, 학기 등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은 교직원 배치, 강사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제4장은 비용과 관련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 사립유치원 및 종일제 유치원 지원근거를 명시하였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은 장 구분이 없이 총 6개 조항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건강검진, 급식, 교육비 지원 방법, 지원의 특례, 납부금 징수 방법 등의 조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 2) 자녀돌봄지원법(안)과의 관계

유아교육법은 영유아보육법과 달리 상당히 간략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유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적 아동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 내 개별 양육지원을 규정하는 자녀돌봄지원법(안)과 규정의 범위를 달리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지만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유아교육법 제26조 제1항)<sup>60</sup>. 가정 내 개별 양육 지

60) 유아교육법 시행령 31조(저소득층 자녀의 범위 및 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란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자녀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나.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 가.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에 따른 지원금

원의 경우에도 현재 국가의 일부 비용의 지원이 있는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국가의 비용지원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유아교

③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3에 따른 입목
    -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 아.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 ④제3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26조의4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3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3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8. 제3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3항제2호: 제3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말한다)

육법의 규정이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 국민기초생활법 주요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2000년 제정되었다. 동법이 제정됨으로써 생활보호법은 폐지되었다. 법의 구성은 총 9장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의 구성은 총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자활지원,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이다.

법 제1장에서는 목적, 정의, 급여의 기본원칙, 급여의 기준 등, 수급권자의 범위, 외국인에 대한 특례, 최저생계비의 결정으로 조항을 구성하였다. 동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 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1항). 구체적으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1항).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소득, 지출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sup>61)</sup>.

61) 제4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2, 2007.6.28, 2008.2.29, 2009.12.30, 2010.3.15>

1. 수급자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장에서는 급여 종류를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으로 정하고 각 급여의 지급 내용, 지급방법 등을 정하였다. 제2장의 2에서는 자활지원에 관한 내용을 2006년에 신설하였다.<sup>62)</sup> 제3장은 보장기관과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두었으며, 제4장에서는 급여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급여의 신청, 신청에 의한 조사, 확인조사,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결과보고, 급여의 결정, 급여의 실시, 급여의 변경 및 중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은 보장시설과 보장시설의 의무에 관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
  -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 다.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2>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62)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함.



조항이며, 제6장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고, 제7장은 이의신청의 장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였으며, 제8장은 보장비용으로 보장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의 징수 및 반환을 내용으로 한다. 제9장은 벌칙조항으로 벌칙 수준과 양벌 규정을 명시하였다. 허위 사실의 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시행령은 장 구분 없이 4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규칙 역시 장 구분 없이 41조로 구성되어 있다.

## 2) 자녀돌봄지원법(안) 과의 관련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 결정 기준은 기타 타법에서 추가적인 복지권 수급의 대상자로서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이며, 보육시설 우선 입소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 제공에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아이돌보미 사업의 지원에 기준으로도 유효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따라서 국가의 비용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자녀돌봄지원법 (안)은 이러한 기준을 인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서는 금융정보의 이용이 요구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 선정을 위하여 법 제23조의 2와 시행령 제36조의 2에서 금융정보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2008년 12월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이 금융정보의 제공 조항을 마련하였으므로 자녀돌봄지원법 (안)에서도 관련 조항이 요구될 것으로 본다.

## 8. 장애인복지법

### 1) 장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으로,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총9장 8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총칙, 기본정책의 강구, 복지 조치, 자립생활의 지원,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전문인력 및 보칙과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법 시행령은 총 46조, 시행규칙은 총 68조로 구성된다.

이 법의 총칙에는 기본이념과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차별금지, 장애의 예방과 장애인의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선언적인 의미의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른 장들에서는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의 복지사업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 2) 자녀돌봄지원법(안)과의 관련성

장애인복지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받게 한 경우 수당의 전부를 수당을 받은 자 또는 수당을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수당의 부당수급과 관련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향후 시행될 가정 내 개별양육지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부 지원의 부당수급 문제는 관련 조문을 만들어야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내용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저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시책과 모자의 보건을 증진하는 시책 및 자녀의 출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는 것, 나아가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2) 자녀돌봄지원법(안)과의 관련성 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책과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가하고 있다. 이는 자녀돌봄지원법(안)에서도 추구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가정 내 개별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규정하는 이러한 사항을 구현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들은 아동의 복지뿐 아니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내 개별양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녀돌봄지원법(안)에서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 10. 직업안정법

### 1) 직업안정법의 주요내용

직업안정법은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신고와 유료소개사업자의 등록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공익단체는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이들 비영리 법인 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18조에 의하여 일부 법인, 단체는 신고를 하지 않고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 소개,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장애급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가 이해 해당한다.

#### (2)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방문택아 사업체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는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2조에 의하면 직업소개는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법 제19조에서는 국내 유료직업소

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사업자는 법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정해진 기준에 맞는 직업상담원을 1인 두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고 33㎡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자는 법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임원 2인 역시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2) 자녀돌봄지원법(안)과의 관계

직업안정법이 자녀돌봄지원법과의 관계는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 시장을 동법(안)이 적용되는 범위로 설정하려면 개별 양육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관의 최소 요건으로 적어도 유료 직업소개 사업 등록시 요구되는 규모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의 시장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연계 기관의 인적 물적 조건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1. 사회적기업육성법

## 1)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내용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2호).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1조). 여기서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등이 해당 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3조).

영리기업과 구별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 등을 그 특징으로 하므로 사회적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제1항).

## 2) 자녀돌봄지원법(안)과의 관계

가정 내 개별양육을 지원하는 방식의 하나는 현재 YMCA 등 민간 비영리 기관에서 주축이 되어 제공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주축이 되어 실시된 바 있는 가정보육사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가정 내 개별양육 지원 서비스 제도를 정착하는 것은 일면 이용 가능한 시간대의 한계와 아동 연령에 따른 보육의 사각지대를 극복하는 아동의 복지와 가족복지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정 내 개별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면적 특성이 모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돌봄지원법(안)에서도 가정 내 개별양육 서비스 연계 사업의 주체는 민간 비영리 단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운영과 내부적 조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 12. 고용보험법

### 1) 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

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따라서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용보험법 제8조 1문).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10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경우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그 구체적인 대상은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한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에서 의미하는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따라서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가사서비스업은 그 구체적인 예에 해당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 1항 제3호). 그러나 이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 2) 자녀돌봄지원법(안)과의 관계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 내 개별 양육 지원은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면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면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양육에 종사자들이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인하여 근로자로 정의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용의 안정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가사서비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동의 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정 내 개별 양육 종사자를 연계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의 임의 가입을 하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정 내 개별 양육을 담당하는 자가 고용보험의 임의 가입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가정 내 개별 양육을 담당하는 자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사업장’이란 본사·공장지점 등 그러한 작업이 수행되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사업의 목적, 허가유무, 업종 등에 관계 업이 적용된다. 따라서 영리적 사업은 물론 동업자 단테, 정당, 사회사업단테, 종교단테, 교육·연구기관 등 비영리 또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법(안)은 아이돌보미를 연계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등록하여 사업자로 인정받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구비된 다음으로 임의가입의 형식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

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가구내 고용활동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동법 제5조 제1호),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재해보상 내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이나 성격에 비추어 규명할 수 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왔다. 즉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요소로 하는 개념이다. 업무수행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기인성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 즉 업무수행과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 2) 자녀돌봄지원법(안) 과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가구내 고용활동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정 내 개별 양육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가구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의무는 아닌 가구내 고용의 경우에도 사업의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4항).

가정 내 개별 양육 지원을 위한 아이돌보미는 가구내 고용에 해당하지만 업무에서 발생이 가능한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의무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할 수 있다. 특히 가구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소보원이 집계한 안전사고는 특히 가정 내에서 안전사고의 발생이 높은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유형은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접수된 위해정보는 17,639건으로 2005년에 비해 42.12%나 증가했다. 이중 통계분석 유효건수인 14,836건을 분석한 결과 식료품과 기호품이 19.86%인 총 2,974건으로 위해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토지, 건물 및 설비가 15.8%인 2,338건, 스포츠, 레저, 취미, 놀이용품이 14.1%인 2,098건, 차량 및 승용물에

의한 사고가 11.1%인 1,641건, 보건·위생용품이 7.1%인 1,058건의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가구 내 고용이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가구 내 고용을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의 배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내 안전사고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가정 내 개별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소속 사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할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제125조 제1항 내지 제2항 본문). 그러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함께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정 내 개별 양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자로 법적 지위를 정립하는 것은 여전히 사업장의 규모, 업무수행의 특성, 및 보수제공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명백하지 않으나,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의무가입 사업장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리어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유형에 유사한 방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14. 국민건강보험법

### 1)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1항),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만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2항).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 가입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 2) 자녀돌봄지원법(안)과의 관계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정 내 양육지원 담당자인 아이돌보미에게도 중요한 항목이다. 특히 아동의 양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건강상태는 아동의 질병에의 노출과 감염 등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는 경우 이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15. 국민연금법

### 1) 국민연금법의 주요내용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1조).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

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한다 (국민연금법 제6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 가입의 방식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별된다 (국민연금법 제7조). 국민연금법에서 의미하는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의미하며(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당연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의하면 당연적용 사업장은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의하면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자, 4.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는 「국민연금법」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및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별정우체국 직원, ㉣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자 및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 된다 (국민연금법 제9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항).

## 2) 자녀돌봄지원법(안)과의 관련성

가정 내 개별 양육 지원을 도입하는 목적은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로서 여성의 유희 인력을 활용하고 여성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과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아이돌보미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기관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사업장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기관이 아이돌보미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로 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 베이비시터의 경우도 연계기관은 단지 중개적 역할만 할 뿐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설령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연금가입의무가 당연히 부가되는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자녀돌봄지원법(안)에서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아이돌보미의 노동시간을 1개월 80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되 사업장별로 국민연금에 대한 임의 가입을 필수적인 것으로 표준계약에 포함시킨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자녀돌봄지원법(안)은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제 7 장

## 자녀돌봄지원법(안)

I . 자녀돌봄지원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	209
II . 자녀돌봄지원법(안) 제정의 방향	211
III . 자녀돌봄지원법(안)의 내용	212
IV . 자녀돌봄지원법 시행의 효과	219

## I. 자녀돌봄지원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부모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원칙을 인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아동권리협약 제18조 제1항). 이러한 아동 양육과 발전에 대한 책임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당사국이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아동권리협약 제18조 제2항 내지 3항). 또한 동 협약은 체약국으로 하여금 부모의 권리 및 의무를 고려하면서 자의 복지에 필요한 보호 및 케어(care)를 확보 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사법상, 행정상의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한다(자녀돌봄지원법(안) 제3조 제2항).

자녀돌봄지원법은 아동권리협약의 이와 같은 이념을 반영하여 아동의 행복과 부모의 다양한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양육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 체계는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 중심의 아동 양육체계는 대상 아동이 1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저조하며 부모 스스로가 보육시설에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맡기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여성노동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로 저녁시간부터 밤 시간에 노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국가가 마련하여야 하는 아동양육은 좀 더 이용자 중심으로 세분화 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정내 개별 양육에 대하여 제공하는 양육 서비스를 표준화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사용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보장하며 (아동권리협약 제18조 제2항 내지 3항), 이를 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50%를 기준으로 소폭의 변화만을 거듭할 뿐 그 이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 유휴 인력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활용도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일과 가정을 양립이 가능한 구조로 사회를 재구성 하는데 가정 내 개별 양육에 대한 지원과 같은 돌봄노동시장에 대한 법적 정비는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된다. 가정 내 개별 양육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돌봄 서비스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일정수준 이상의 돌봄 인력과 양육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부모와 가족은 아동의 질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므로, 부모역할 지원과 자녀를 기르기 좋은 지역 사회를 조성함으로써 현재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양육지원 사업으로는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양육 지원 서비스이다. 현재 이 사업은 법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녀돌봄지원법 (안)은 아이돌보미 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자녀돌봄지원법 (안) 제5조).

## II. 자녀돌봄지원법(안) 제정의 방향

본 보고서 가정 내 양육에 대한 법안 제시는 그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서비스 제공 인력이므로, 양육제공자의 질적 수준이 균등하도록 인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즉, 아이돌보미를 교육하여 자격을 부여하며,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사후관리하는 등의 사항들이 모두 필요하다. 현재는 자격 기준이 없고 공식적인 자격부여 기관도 없다. 영리 회사도 인력의 질 관리에 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육시간이 턱없이 짧고 표준화된 교재도 없다. 또한 가정 내 양육제공자는 양성, 파견 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파견 후 부모와 도우미에 대한 사후관리가 성공의 가장 결정적 요인이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조건들도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아동과 아이돌보미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도우미를 위한 활동지침을 마련하고 아동을 위한 도우미와 부모의 지침을 마련하여 도우미와 부모가 지키도록 하여 도우미와 아동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양육도우미의 근로자로서의 보호는 현재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단기적으로도 최소한의 보호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양육도우미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직업으로서의 장점과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정부 지원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부모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가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과 부모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사업 대상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는 취업모와 미 취업모가 혼재되어 있고, 이용 유형도 양육시설과 대체관계와 보완 관계를 다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정내양육의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양육지원연계기관 등록 대상을 비영리 법인 단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사업자에게 자녀양육지원 기관 등록을 허용하게 될 경우 아이돌보미 사업자 위탁 선정에서 완전 배제하기 불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정 내 양육 영역에 영리 개인이 포함될 경우에 두 가지가 우려된다. 첫째는 정부의 지원과는 무관하게 양육서비스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어 부모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둘째는 현재 시설보육과 같이 자녀 양육지원 사업의 공공성 유지에 애로가 발생하고 정부의 비용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자녀양육 지원 사업이 민간 영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보육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정부가 아이돌보미 서비스 가격 통제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에 의한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하여 정부의 지도 감독이나 이용자 지원이 없다는 비판은 여전할 것이지만, 비판보다는 우려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 시설보육의 경우 재정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모 부담이 여전한 것은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와 비영리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가정 내 양육제공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위탁체 또는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서로간의 교류나 협력은 미약하다. 무엇보다도 육아지원서비스 수준의 균질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 및 사업의 민간 기관 위탁관련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Ⅲ. 자녀돌봄지원법(안)의 내용

#### 1. 돌봄의 영역 규정

자녀돌봄지원법(안)은 가정에서 만 12세 이하의 중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에 대한 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정 내 개별 양육 지원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는 아동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부모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서 양육을

지원하는 하는 것으로 한다. 이 점에서 양육담당자의 거주지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양육과는 구별된다.

만 12세 이하의 중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연령별로 다양한 유형의 양육지원이 포함된다. 0세부터의 영유아 단계에서는 아이를 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주로 0~3세 아이를 맡아서 우유 먹이기, 기저귀 갈기, 이유식 챙기기, 병원(보건소) 함께 가기, 일광욕 시키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의 경우 전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데려오기, 방과 후 숙제 봐주기, 식사 챙기기, 동화책 읽어주기, 준비물 챙기기, 학부모 회의 대신 가기, 병원, 문화센터 및 인형극 함께 가기 등 생활관리 대행자로서 부모 역할을 대신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아이돌보미의 임무는 첫째, 부모의 양육공백 시 자녀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한다. 그러나 단지 양육공백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부모의 육아역량강화를 위한 상담 및 조언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이돌보미는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하여야 할 것이다. 돌봄 대상 아동의 위급 상황의 발생시에는 부모의 지휘 감독에 의한 기준으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2. 돌봄 인력 자격 인증

가정 내 개별 양육은 돌봄 대상 아동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서비스로 대상아동에 대한 일대일의 직접서비스이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개별 양육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를 믿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기초적인 자격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을 돌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에도 아이돌보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이돌보미를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의 일정한 자격기준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임무, 책임 등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등 공인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자격인증의 필수조건으로 포함될 것이다.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인증을 받은 아이돌보미의 경우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 과정에 참여가 없어 인증을 받지 못한 아이돌보미와 구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인증을 받은 아이돌보미의 경우에도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아이돌보미 인증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이돌보미의 업무가 대인서비스라는 점, 특히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돌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회 교육이 항구적인 자격인증으로 이어지는 것 보다는 변화하는 육아와 교육환경에 적응하고 이에 적합한 양육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에 시간적 제한을 두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법제화함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양육 서비스를 표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와 같이 서비스를 표준화 함으로써 돌봄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전체에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교과과정 체계화 및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아이돌보미는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인적 서비스 제공자이다. 특히 아동의 성장기에 양육을 지원하는 중대한 역할이므로 아이돌보미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아이돌보미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이돌보미 종사를 희망하는 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민간 비영리 단체인 YMCA에서는 이론교육으로 오리엔테이션, 기초소양교육, MBTI를 통한 자기이해, 영유아 발달이해, 유아교육의 이해, 아동의 문제유형과 성격, 베이비시터의 역할과 자세, 놀이의 이론, 풍선만들기/손유희/종이접기/인형만들기 등 또한 직업의교육, 영양관리, 의사소통 훈련,

영유아 응급처치, 영유아 마사지, 아기체조,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 실습교육 및 일지작성 등의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아이를 돌보기 위한 현장에서 실습 또한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일정 기간 마다 양육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여 일정한 수준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수교육은 일정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4. 사업 주체 관리체계 구축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양육 방식에 있어서 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에 기여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동시에 이 사업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현재 가정 내 개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 민간 비영리 단체인 YMCA의 아가야 사업, 및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 사업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다른 사업주체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 내 개별 양육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각각의 서비스 제공의 요건과 전달체계가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민간 영리 사업의 경우 규모면에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처우는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가정 내 개별 양육을 지원하는 근거법이 부재하므로 사실상 민간 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질을 사전·사후에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입법을 통하여 공공기관, 비영리 및 영리 사업자의 등록 조항을 두고 법으로 정한 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양육 활동 지원 및 서비스 질의 사전·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 제공은 일자리 창출에도 그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는 공공기관, 민간 비영리·영리 어느 분야에서 종사를 하든지 일정한 연계기관과 관련을 가지며 종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서비스 연계기관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일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이돌보미 종사자의 처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주체가 일정한 정도의 규모와 운영체계를 갖추고 활동하도록 하여 이들 서비스 연계 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보미에게 일정 수준의 처우를 통일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개별 양육 서비스 연계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양육 서비스 연계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한 아동의 양육에 관련되는 인적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아이돌보미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연계 사업에서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들 가정 내 개별 양육연계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 하여야 할 사항은 아동의 건강, 위생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에 아동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돌봄 인력 처우 개선(4대 보험 가입 등)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 지원을 법제화를 통하여 활성화 하여야 하는 또 다른 측면은 종사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이돌보미 종사자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4대 보험에 자동가입 대상으로 분류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서는 임의 가입을 가능하도록 시행령 등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이돌보미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

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연계 사업체에서 일정 시간 이상을 아이돌보미 업무에 종사하도록 이들의 업무를 구성함으로써 임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본다.

## 6. 아동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 제공을 법제화 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아동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것에 있다. 먼저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다음의 원칙들이 명확히 되어야 할 것이다.

- 1) 아동에 대하여 아이돌보미가 부담하게 되는 안전의무의 정도 :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공공 복지서비스 형태로서 또는 민간 비영리 또는 영리 단체를 통하여 개인이 지불하는 복지서비스로 지원이 된다. 그러나 어느 방식을 취하든 복지서비스를 급부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을 돌보는 것이 서비스 계약의 주된 급부 내용이기 는 하지만 아동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부수적인 의무로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돌보미가 아동 양육 지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안전 배려를 해야 하는지는 먼저 아동의 부모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시 협의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단의 합의한 바가 없는 경우 아이돌보미는 일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정도에 따라 아동에 대한 안전의무를 하여야 할 것이다.

- 2)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부모의 책무 :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부모는 가정내에서 이루어 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아동 상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아동 양육 서비스 연계 기관의 책임 : 양육지원기관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아동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



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7. 활동 점검 등 지도·감독 및 벌칙 조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원활한 돌봄 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 기관이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으로 활동 사항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규정하더라도, 서비스제공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후일 지정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이를 위반하여 서비스 제공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일정한 벌칙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서비스 기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 일정한 기한의 예정을 전제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때, 또는 서비스 제공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고도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서비스 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과태료 등이 부과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8. 비용 부담 및 정부 재정지원 범위, 세제지원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하여 아이돌보미가 연계되는 유형은 민간 비영리(영리) 이외에도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수행중인 복지서비스 사업으로서 아이돌보미제도가 공존하고 있다. 이 중 특히 복지서비스로서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

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 제공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도 지사등이 고시하여 정하되 이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비용도 가정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 9. 지도 및 감독

아이돌보미와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 평가 등 관리를 위한 수권 조항 마련하여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이용 부모의 신뢰감을 제고할 수 있다.

## IV. 자녀돌봄지원법 시행의 효과

### 1. 아이돌보미 사업의 안정적 운영

자녀돌봄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법령의 근거 없이 단지 여성가족부의 정책 사업으로 이루어지던 아이돌보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자리 잡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를 통하여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으로 통일적 수준의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제한된 접근이 아니라 좀 더 확대된 범위에서 서비스에의 접근가능성이 확장되어 이용이 편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이돌보미와의 관계 설정이 명확히 이루어 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을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본다.

## 2. 보육의 사각지대 극복

본 연구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시설 중심의 현행 보육은 명백히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 즉 0세아의 경우 시설보육을 희망하지 않는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생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저소득 여성들의 노동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야간에 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과후에서부터 야간에 이르기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나이를 지난 초등학생의 경우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가정에 개별적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령화 함으로써 표준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서비스를 개별 가정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특히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동시에 아동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가지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아동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공유함으로써 전체적인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에게도 이러한 서비스를 접근이 용이하게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3. 복지서비스계약 내용의 구체화로 분쟁의 대비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법령의 근거가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과 돌보미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아동의 상해에 대해서는 아동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해보험이 보장해 주는 범위가 좀 더 명확히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동안전사고의 상당부분이 물리적 사고 이외에도 식품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상해보험이 이를 보상범위로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법제정을 통하여 구

체적 사업 추진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의 소재 또한 명확히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이돌보미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이나,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가 민간에 위탁된 복지계약의 유형을 빌어 제공된다는 점에서 계약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법령화하는 작업은 필수적인 것이다. 복지서비스 제공계약은 우리 법제의 틀 속에서 매우 생소한 유형의 계약으로 그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와 한계가 아직도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기존의 계약 이론에 의해서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특히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계약에서 무엇이 급부이며 무엇이 주의의무인지에 대해 법 이론적으로 명확한 논의가 전무하며, 확립된 판례나 이론적 틀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별적 양육 서비스를 복지계약을 통하여 제공할 때 안전사고와 관련한 기준을 법령으로 명시화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아동 모두에게 심각한 후유장애를 유발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을 것이다. 「자녀돌봄지원법」의 제정을 통하여 이러한 예상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4. 돌봄 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장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하여 개별 가정에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면 아동의 복지를 구현하는 측면도 있으며 동시에 양육의 경험을 가진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돌봄노동 시장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들 돌봄노동자들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내근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적지위가 불안정하다.

따라서 이들이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관에서 이들을 어떻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표준계약서에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 양육의 국가사회지원을 통한 평등사회 구현

현재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3세 미만의 아동을 둔 근로자에게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1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3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3세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선택할 수는 있으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아동양육을 직접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0세아를 둔 근로자는 대부분 이들에 대한 양육을 시설보육에 의뢰하기 보다는 조부모나 친족 등 비공식양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명확한 것은 0세아에 대한 육아에서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의뢰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비공식 양육지원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0세아에 대한 양육은 근로자, 특히 여성근로자에게 노동시장에서의 퇴직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자녀돌봄지원법」을 제정하게 됨으로써 이들 개별양육 지원을 위한 안정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영유아에 대한 개별양육 서비스를 보편화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본다. 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지원 서비스가 확립됨에 따라서 근로자들(특히 여성근로자)에게 성별분업의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양성이 공존하는 노동시장과 양성이 함께 책임지는 양육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국내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07). 여아차별 및 폭력방지 관련 입법 과제 연구.
- 권용은·김미화·박민정·우현경·이세나(2006). 보육정보센터의 육아지원 역할과 방향. 육아지원연구,1(1),43-66.
- 권용은(2007). 한국보육정보센터의 육아지원 역할, 보육정보센터 세미나 자료집.
- 권혁진(1995).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경인지역에 위치한 국공립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김선자 외(2005).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방안 연구. 시정개발연구원.
- 김영명(2006). 일본 보육소 지역자녀양육센터 사업의 한국보육시설에의 적용 검토 및 시사점. 미래유아교육학회지,13(3),283-306.
- 김영명·서영숙(2007). 보육시설장의 교육요구에 기초한 현직교육 내용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권 3호.
- 김형준 외(2007). 가격규제 예외시설 허용범위 및 관리방안. 여성가족부.
- 노동부(2003). 주요선진국의 사업장 안전관리 일원화 제도 및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노동부(2005).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 조사.
- 노르웨이 아동평등부(2007). TheRightsofParentswithSmallChildren.
- 류왕효·권용은·김영명·이미란(2004). 보육정보센터 기능강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메디컬투데이. 2008.6.5일자. “아이 사망시 부모도, 어린이집도 ‘만신창이’-사보험 보장 안돼 ‘민사소송’ 빈번...’안전공제회’특별법 제정 시급”
- 문무경 편역(2007). 영국의 육아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 변용찬·서문희·이상현·임유경(1998).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에 따른 영유아보육제도 평가”.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국 보육재정팀(2008). 2008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지침. 복지타임즈. 2008.5.29일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설립’ 팔 걷고 나섰다-시설내 안전사고 매년 늘어...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 확립 시급”
- 서문희·백선희(2004).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대안 연구. 여성부, 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 편역(2007). 호주의 보육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신나리·유은영(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방안. 여성가족부.
-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2008). 미래지향적 보육정보센터의 역할 재정립. 전국보육정보센터 토론회 자료집.
- 서문희·김은설·장혜경·박수연(2008). 일하는 여성 보육강화 방안. 노동부.
- 서문희·박수연(2008).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 적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성영혜·김연진(2003).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동문사.
- 양연숙(2003).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지역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 영유아학회지 제35집.
- 여성가족부(2008). 보육사업안내.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각년도). 보육통계.
- 오정수·이혜원·정익중(2006).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서울:나눔의 집.
- 유구종(2003). 한국 영유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직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과제. 2003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 유한욱(2006).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유희정·서문희·김종해·최혜선(2006).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 육아 정책개발센터.
- 유희정·원명순·김애리·김홍희(2007). 보육시설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유희정·이정원·최진·안재진(2008). 육아지원바우처 도입과 정책과제.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미화·장명림·신나리·김문정·김현철(2006). 육아지원인력의 수급전망과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미화·임승렬·조형숙·유은영·송신영(2007). 육아지원인력 양성 교육과정 모형 개발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미화·김경희·김문정(2008). 육아지원인력의 재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옥 외(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업의 성과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재원(20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울:대영문화사.
- 이재원(2008). 수요자 중심의 보육료 지원 전달체계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이혜경·강창현·백선희·최은영(2004). 보육사업 전달체계 효율성 강화방안 연구. 여성부.
- 전병목·김종면(2005).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연구. 여성가족부
- 전주성·김진영(2006). 보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광호(2006).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45(1),117-138.
- 정민자 외(2006). 가정내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 연구. 여성부.
- 조병구·조운영·김정호(2007).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조은경·김은영 편역(2008).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5-미국의 육아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 지성애·김미경·유구중(2005). 영유아교사의 현직교육과정 운영. 유아교육학론집, 9(1),129-156.
- 최순자(2008). 일본의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에 관한 일 고찰.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2(2),79-93
- 최영신(2001). 지방자치단체 보육사업 전달체계 평가.21세기보육사업 선진화를 위한 보육제도 개선안. 보육발전위원회·기획단, 보건사회연구원.
- 최영신(2003). 일본의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3, 133-154.
- 핀란드 사회보건부(2006). Finland's Family Policy.
- 한국법제연구원(2007). “영국 2006년 보육법”. 최신외국법제정보, 2007-5, 25-32.
- 홍승아(2005).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프랑스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2005-2.

홍승아(2008). 일·가족 양육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여성정책 연구원.

#### <국외 자료>

東京世田谷區(2006). 保育サービスのごあんない.

日本保育研究所(2006). 保育白書.

中山徹,杉山降一, 保育行財政研究會(2003).

CastelF. G(2003). The World up 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 Friendly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pean Social Policy.13(3). London.

Hoyle. E.(1980). The role of the teacher. London :Routledge& Kogan Paul.

Katz(1984).The professional early childhood teacher. Young Children,39(5),3-10.

OECD(2006). Starting Strong II. Paris, France: OECD.

Ritzer(1997). Working: Conflicts and Changes, 1st ed., England Cliffs, N.J.: Rentice Hall.

#### <인터넷 사이트>

<http://nrckids.org>(미국 보육·유아교육에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가 자원 센터)

<http://www.accorservices.co.uk>(아코르서비스기업)

<http://www.comlaw.gov.au>(호주 연방법)

<http://www.dewre.gov.au>(호주 교육노동부)

<http://www.goe.go.kr>(경기도 교육청)

<http://www.hmrc.gov.uk>(영국 예산 및 조세 당국)

<http://www.kwe.go.kr>(강원도 교육청)

<http://www.law.cornell.edu/uscode>(코넬대학교 로스쿨 UScode)

<http://www.leginfo.ca.gov/calaw.html>(캘리포니아주 법전)

<http://www.mhlw.go.jp>(일본 후생성)

<http://www.naccp.org>(전 미국 보육전문가 협회)

- <http://www.nafcc.org>(전 미국 가정보육협회)  
<http://www.nccanet.org>(전 미국 보육협회)  
<http://www.norway.org.uk>(노르웨이대사관)  
<http://www.opsi.gov.uk>(영국 공공분야 정보국)  
<http://www.regjeringen.no>(노르웨이 아동평등부)  
<http://www.schoolsafety.or.kr>(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http://www.stm.fi>(핀란드 사회보건부)  
<http://www.world.moleg.go.kr>(법제처-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ww.naash.go.jp>(일본 스포츠 진흥 센터 홈페이지)



## 부 록

<부록 1> 자녀돌봄지원법(안)	231
<부록 2> 자녀돌봄지원법 시행령	243
<부록 3> 자녀돌봄지원법 시행규칙	245

<부록 1>

## 자녀돌봄지원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녀”란 만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아동의 주거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돌봄 지원의 원칙) ①돌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②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모든 보호자는 자녀 돌봄의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자녀 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2장 아이돌보미

제5조(아이돌보미의 직무) ①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아이돌보미는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질병·사고 등으로 아동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③아이돌보미는 아동이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④아이돌보미는 아동이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⑤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아동복지법』 제2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35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9. 제3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아이돌보미는 제10조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여성가족부장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8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아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 법에 의한 아이돌보미가 아닌 자는 아이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수교육)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돌봄 서비스

제12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의 종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서비스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대상 아동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서비스기관 정보의 제출 등)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시설·인력 현황자료 등을 서비스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아동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 시설·인력 현황자료 등 안내하여야 할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서비스기관의 임무) ①서비스 기관은 제7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한다.

②서비스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이돌보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 연계 전·후 아동의 건강 및 위생 관리, 위해방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서비스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동에 대한 보상 등을 하기 위해 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표준계약서 작성) ①서비스기관은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표준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호자의 준수사항)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서비스기관에서 정하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서비스기관의 폐업 등 신고) ①서비스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접수한 경우 인근지역에 대체 서비스기관이 없는 경우 등 불편이 우려되는 때 서비스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서비스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
6. 소속 아이돌보미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



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서비스기관 관리·평가)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서비스기관이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서비스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평가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제20조(공동육아나눔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비용

제21조(비용의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 자녀의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정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돌봄 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돌봄 서비스 이용권)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이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비용 지원의 신청) ①보호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비용 지원 신청자"라 한다)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조사·질문)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지원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26조(비용지원 업무의 전자화) ①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다.

제27조(세제 지원) 아동의 보호자가 제12조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28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6장 지도 및 감독

제30조(지도 및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원활한 돌봄 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1조(질문 및 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비밀누설금지) 서비스기관 및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아이돌보미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청문)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의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한 경우
  - 가. 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다. 서비스 제공 중 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제35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 받은 경우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제7장 보칙

제3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장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 휴·폐업 시 신고하지 않은 자,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4.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돌보미에 대한 경과조치)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이 법에 따른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lt;부록 2&gt;

## 자녀돌봄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녀돌봄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격사유) 「자녀돌봄지원법」 제6조에 따른 정신적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신적 장애인을 의미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지적장애
2. 정신장애
3. 자폐성장애

제3조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보미의 양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아동양육과 관련한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의 기준 및 지정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에 의한다.

제4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법 제23조의 제2항 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②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법 제23조의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5조(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家口員)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여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부록 3&gt;

**자녀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녀돌봄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의 안전배려) ①「자녀돌봄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아동에게 질병·사고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②아이돌보미는 아동이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돌봄 아동의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을 사용한다.

③아이돌보미는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등을 배치한다.

④아이돌보미는 자신과 아동의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아이돌보미가 전염성 질환의 보균상태인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며 아이돌보미 업무를 대체인력에 연계하도록 한다.

⑥돌봄 아동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센터에 신고하도록 한다.

⑦돌봄 아동이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여 격리되어야 하는 경우 아이돌보미는 병원에 동행하거나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아이돌보미 자격증 수여) ①아이돌보미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교육과정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4조(자격증 교부 위임 및 수수료) ①「자녀돌봄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증 교부는 시·도 및 관련 법인 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자녀돌봄지원법」 제8조에 의하여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시 발급에 요구되는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5조(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①아이돌보미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전공 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의 성명 및 이력이 기재된 서류
2. 현장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현황

②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중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아동양육 및 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③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세부적인 지정절차, 교육과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교육사업의 정지 및 취소) 「자녀돌봄지원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교육의 실시) ①「자녀돌봄지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년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은 영유아 발달이해, 아동의 문제유형과 성격,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자세,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제8조(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아동양육 및 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서식에 따른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수교육 실시 위탁의 취소) 시·도지사는 이 법 제8조에 따른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녀돌봄지원법」 제28조에 따른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자녀돌봄지원법」 제28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제10조(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돌봄지원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돌봄서비스 연계 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돌봄지원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을 돌봄서비스 연계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복지, 가정 지원, 보육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제11조(서비스 지원기관 요건) ①돌봄서비스 지원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양육지원기관장 이외에 보육교사, 건강가정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 가족 및 사회복지 관련 자격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 기관 지정절차) ① 「자녀돌봄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경력사항
2. 관련 업무 실적 증명 서류
3. 사업계획서(사업수행 계획,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계획 포함)
4.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회칙·규약 등 사본(단체의 경우)
5. 기타 사업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선정심의회 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에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서비스기관은 「자녀돌봄지원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비스제공계획의 주된 내용 변경
2. 아이돌보미 확보 및 관리 변경

제13조(서비스 지원 기관의 기능) 돌봄 서비스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선정 및 교육
2.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연계
3. 아이돌보미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돌봄서비스 연계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서비스의 내용) ①서비스 내용과 이용자를 위한 정보는 홈페이지 등으로 고시한다.

②이용자는 서비스기관에서 요청하는 일정 서식과 자료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③아이돌보미와 관련한 정보는 회원 가입 시에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하여 관람 가능하고, 관리자에 의하여 연계한다.

④서비스에 관한 사후관리 등은 일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15조 (서비스기관의 아동안전의무) ①아이돌보미 연계 사업 서비스 기관은 아이돌보미와 아동을 연계할 때 부모로부터 아동의 건강상태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고 정리하여 아이돌보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서비스 기관은 아이돌보미가 년1회 건강진단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③아이돌보미는 아동의 정신 신체적 건강 및 위생, 학습활동 등의 내용을 자녀 양육일지 등을 통하여 부모와 상호작용하고, 일정 양식에 의하여 서비스기관에 전자문서로 등록한다.

④아동이 위험한 상태일 경우는 부모와 서비스기관에 즉각 연락하고 조치를 취한다.

제16조 (서비스 제공 기관의 평가) ①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등은 메일이나, 설문 등을 통하여 평가하거나, 평가기관 등을 통하여 매년 실시한다.

②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지도 감독 기관과 서비스 기관에는 공개하고,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 미흡 등의 평가 실적에 따라 상응하는 포상과 벌칙이 주어질 수 있다.

제17조(서비스기관 지정 취소 절차) ①여성가족부 장관은 「자녀돌봄지원법」 제18조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 사유의 중대함에 따라 3년 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②아이돌보미 서비스기관 지정이 취소를 위해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취소사유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기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취소를 공지 받은 서비스기관은 30일 이내에 취소사유에 해당 없음을 서면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④서비스기관 지정 취소에 이의가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 청문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는 아이돌보미의 복무규정, 서비스기관과 아이돌보미의 관계, 아동안전을 위한 서비스기관의 의무, 이용부모에 대한 서비스기관의 책무, 아이돌보미와 서비스기관의 책임 한도 및 기타 아이돌보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공동육아정보나눔터의 선정) 육아정보나눔터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제20조(서비스 비용 지원대상)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 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제21조 (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아동의 보호자가 「자녀돌봄지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아이돌보미 서비스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 기관의 장은 돌봄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서비스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돌봄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돌봄지원법」에 의한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돌봄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제23조(서비스 이용권 발급 및 관리 업무 위탁 등) ①「자녀돌봄지원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
2. 돌봄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돌봄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돌봄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돌봄지원법」 제23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위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 ①「자녀돌봄지원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녀돌봄지원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가구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돌봄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득·재산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확인 조사)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돌봄지원법」 제21조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

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조사의 기본 방향
  2. 조사·질문의 범위·내용·시기·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평가 기준 등) ①이 법 제16조에 의한 양육지원기관 평가는 매2년 마다 실시한다.

②「자녀돌봄지원법」 제16조에 의한 돌봄서비스연계기관 평가 지표에는 인력의 전문성,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실적,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 아이돌보미 일지 관리, 보호자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돌봄서비스지원 기관을 평가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자격정지 절차와 기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여성가족부 내부 지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Abstract

# A Study on Legislation of the Law about a In-Home Child Care System

In modern society people experience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because of the extension of the average span of human life, gender equality and a raising divorce rate etc.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brings a difficult about a child care. While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women took responsibility for a child care without extra payment, today it can not be expected as general life style, because approximately 50% of the married women enter the labor market. In such a condition child care can not be only women's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tries to support a child care in two ways. At first, a child care is able to support through the labor policy like a maternity leave for working people. At second, a child care can be support through children's education system. Because a maternity leave is assigned within limited time, children's education system is much more important for the supporting child care.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support children's education system in the way to increase privately financed children's education institutions and to supply education fee. As a result, privately financed children's education institutions are supplied extensively. However, by various research results, parents don't want to use privately financed children's education institutions, when the child is under 3 years old. The reason is that the children under 3 years old are not familiar with group life.

Furthermore, women's entering labor market causes child care problem in different ages. Specially, the children in an elementary school do not receive personal care after school, when the mother works in labor market. Practically many children are neglected after school without any care giver.

Today the personal child care systems provide in different way. At first, there is a child care service which is provided as social welfare service b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t second, a personal child care service is provided by YMCA as an art of the social corporation. At third, private baby sitter corporations supply a personal child care service. All these three types of personal child care services aim on the one hand to promote children welfare, on the other hand to give job to women who have experiences of fostering a child. On the premise about a child care, this research paper takes aim at constructing a personal child care system, namely In-Home Child Care System.

연구보고 2011-02

## 「자녀돌봄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

2010년 11월 20일 인쇄

2010년 11월 26일 발행

발행인 : **백 희 영**

발행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번지

프리미어 플레یس 빌딩

전화 / 02-2075-8714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

연구수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화**

전화 / 02-313-7593 (代)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119-01